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박정훈  
이원우 송영선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인 쇄 2004년 12월

발 행 2004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협동연구팀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51, 2645 (팩시밀리) 901-254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8,000원

© 통일연구원, 2004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전재경...[등저]. —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p. ; cm.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04-19)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276-4 93340

331.5-KDC4

306-DDC21

CIP20040023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본 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4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인문 사회연구회 소관 9개 국책연구기관과 5개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1. 문제 제기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개념은 다소 저항감이 있으나 “공동체”라는 개념은 친화적이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이 블록화를 지향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동북아 공동체의 형성은 동북아의 발전기틀을 다지는 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는 적지 않은 애로가 예상된다. 영토와 인구가 거대한 중국은 국제정치적 측면을 제외하고는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 대동아공영권을 주창하면서 아시아의 맹주를 꿈꾸었던 일본은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주변국가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 남북한 공동체의 형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폐쇄적인 국제관계를 유지해온 북한은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 주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과 적대관계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대만을 동북아 공동체에서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의 여부도 문제된다. 그러나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은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에서 여러 가지 난점이 예상됨에도 사회경제적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공동체의 형성이 필요하고 또 가능한가의 여부를 논하지 않고 동북아 3국(한·중·일)간에 “경제” 공동체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이 경제공동체를 떠받치는 기초로서 문화공동체라는 관념을 상정하고 그 가능성과 형성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물론 정치경제 공동체와 구분되는 문화공동체라는 개념과 범주를 상정할 경우에도 여전히 문제되는 바는 “문화” 개념의 다의성과 “공동체”의 범주 및 형성 방법이다. 나아가 문화의 한 영역으로서 범문화 그리고 다른 문화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범기능의 양면성이 문제된다.

## 2. 접근방법

한·중·일 3국간에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

축할 경우에 이원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문화공동체의 한 영역으로서 “법률문화” 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한가의 여부이다. 두 번째는 문화공동체 전반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적 장치가 필요한가의 여부이다. 전자의 접근을 위하여서는 법문화공동체 자체의 개념과 범주 및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후자의 접근을 위하여서는 “문화” 일반의 개념과 범주 중에서 법적 장치가 필요한 부문이 도출되고 제도정비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문화구조적 접근에서 문제되는 바는 이질적인 문화간의 갈등이다. 우리 주변에는 크게는 지역감정에서부터 작게는 부부싸움에 이르기까지 ‘문화갈등’ 현상이 곳곳에서 관찰된다. 산간도로를 횡단하는 야생동물들의 죽음도 종(種)간의 문화차이 때문이다. 그들은 인간들의 문화와 다른 생활양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명횡사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들에게 인간의 교통도덕을 가르칠 수도 강요할 수도 없다. 모든 개체의 문화는 그들만의 고유한 생존방식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사회에서 법질서의 동요와 혼란이 심함은 이질적인 법문화간의 갈등에 기인하는 바 크다.

광의의 문화론은 의식주 및 일과 놀이 등을 연구대상으로 삼지만 이러한 영역들은 장기간의 연구와 심층적인 분석을 요하며 그 다양성이 오히려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공동체 “형성론”에서 이를 다루기가 어렵다. 의식주와 노동과 같은 물질문화 영역이나 언어·풍속·역사 또는 놀이와 같은 무형문화 영역들은 문예·학술·교육·스포츠·방송 또는 문화산업과 같이 상호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정신문화 영역들의 발전을 통하여 그 정체성이 유지되고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법문화 공동체론 외에 여러 문화영역 중에서 교육·예술·스포츠·관광·문화산업 등 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한 부문에서의 법적 접근방안을 다룬다.

### 3. 유럽의 법적 통합과 그 시사점

오래 전부터 통합과정을 밟아 온 유럽연합(EU)과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수평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유럽연합은 문화공동체보다 경제공동체로서의 성격이 짙다. 동북아는 아직 유럽연합과 같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며 가까운 장래에 유럽연합 수준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전망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공동체로서의 유럽연합은 동북아 공동체의 형성에 적지 아니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동북아 국가들은 유럽연합과 같은 경제적 통합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종래 상호간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와 협력은 동질적 문화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에서 동북아 국가들은 “공동체”(EU) 형성이전의 유럽의 교류·협력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넓은 의미의 문화 전반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구축이지만, 유럽통합과정으로부터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은 우선 일차적으로 상호비교와 이식·수용·통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법문화’의 비교·통합에서부터 시작하는 방법이다. ‘법의 지배’ 원리와 법제도의 합리성에 관해서는 상당부분 인간이성의 보편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래 동북아국가에서의 법문화비교는 주로 법제도의 역사적·문화적 기반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제는 개별 법제도들을 대상으로 그 실제적 기능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방법론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모든 동북아국가들이 발전의 정도에서 차이는 있지만 서양법을 계수하여 상당기간 이를 시행하여 온 경험이 있으므로, 이제 그 실제적 기능을 비교함으로써 이를 둘러싸고 있는 법문화적 요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문화의 통합방법을 모색할 것이 요청된다.

#### 4. 국제법적 대응방안

“문화”라는 개념이 법률(문화) 자체를 포섭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은 그를 낳은 모태인 문화의 한 요소로서 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를 감쌀 수는 없다. 문화공동체의 형성은 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는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달성되기 어렵다.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에 있어 법과 제도는 간접적인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또한 법은 사회를 움직이는 시스템으로서 광의의 문화공동체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동북아 국가들이 문화공동체의 형성에 관하여 인식을 같이 하더라도 이를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법적 접근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현재 동북아 국가들 상호간에는 문화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는 약간의 국제규범들이 존재한다. 조직규범으로서 아시아개발은행설립협정, 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헌장, 아시아·태평양지역사회·문화센터설치협정 그리고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규범들은 그 적용범위가 동북아를 넘어선다.

물론 개별 국가들간의 쌍무협정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정부와 중화민국정부간의 문화협정이 그 예에 속한다. 한국과 일본간에는 산업 또는 경제에 관한 협약들만 다수 존재할 뿐 문화부문에 관한 공동의 규범은 없다. 동북아 국가간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직접 목적으로 삼는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이라도 우선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약 등의 제정이나 공동기금의 창설 등이 필요하다.

동북아 국가들간의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국제법적 접근은 쌍무협정에서부터 출발하겠지만 보다 진전된 형태로 “다자”간의 교류·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다자간의 시스템은 모든 문화영역을 동시에 아우르기보다는 부분적 문화영역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법적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공동체 실현이 가능한 영역은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가칭)특허공동체 형성이다. 지식재산권은 경제공동체론에서도 검토될 수 있으나 지식산업은 넓은 범주의 문화산업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문화공동체의 영역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 5. 국내법적 대응방안

법의 위계질서상 국내법은 국제법을 이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제법의 실효성은 이를 뒷받침하는 각국의 국내 법질서에 의하여 담보된다. 물론 우리 국내법은 동북아 권역내의 다른 나라에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법을 정비하더라도 상대방 국가들이 유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일방적인 노력에 그칠 수밖에 없지만, 국제법상의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국제규범이 정립되기 이전이라도 국내법의 정비가 아주 무의미한 일은 아니다.

현행 국내법 질서는 문화와 문화공동체 그리고 동북아 문화공동체와 친하지 아니하다. 문화 내지 문화공동체와 관련이 많은 교육·학술, 문화·예술, 문화산업, 청소년·체육, 관광·레저 등의 분야에서 현행 법령들은 국제교류·국제협력 및 교류·협력 일반에 관하여 다수의 근거규정들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조항들이 조직법상의 사무분장에 치중하고 있을 뿐,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이념이나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규정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문화산업 분야에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진출과 관련된 지원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영화진흥법은 금고의 용도에 “한국 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국제·외무 분야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은 국제교류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재정계획과 사업별 기금사용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들 기금이나 계획들이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와 문화공동체 그리고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서는 지도적인 이념과 각종 아이디어 그리고 실행방법 등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실정법 질서의 정비가 필요하다. 조직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인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수많은 계획과 재원들을 집중시키고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법이 필요하다. (가칭)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지원법과 같은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전체의 철학과 역량을 결집 시켜야 할 것이다. 이 기본법은 추진 조직과 기금 그리고 계획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들과의 접점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국내법적 접근은 국제법적 접근과 병행함이 이상적이겠으나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과 방법들에 대한 각국들의 이해가 달라 두 법 영역간의 간극이 불가피하다. 국제법적 접근 이전이라도 국내법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접근과정에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기능상의 차이이다. 국제법은 관계 국가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의 방법을 규정하고 공동체를 직접적으로 창설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국내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능적 차원에서 국내법은 공동체의 창설을 직접 규정하는 대신에 국제 교류와 협력에 종사하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NGO 등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의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국내법적 접근은 “문화의 매개자”들과 같은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양성하는 재단이나 기금을 조성하고 관계 프로그램들을 개발·운용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종래 여러 국내법령들에서 중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제교류 및 협력 관련 기금과 프로그램들을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쪽으로 집중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목 차

|  |           |
|--|-----------|
| 연구서설 .....                             | 3         |
| 1. 총 설 .....                           | 4         |
| 2. 각국의 노력 .....                        | 8         |
| <b>I. 공동체 형성의 법률문화적 기초 .....</b>       | <b>13</b> |
| 1. 총 설 .....                           | 15        |
| 2. 동북아의 법률문화 분석 .....                  | 18        |
| 3. 유럽연합의 법률문화 분석 .....                 | 26        |
| 4. 공동체 법제의 미래 .....                    | 37        |
| 5. 추진과제와 방법 .....                      | 41        |
| <b>II. 유럽 문화공동체의 형성과 그 법적 기초 .....</b> | <b>57</b> |
| 1. 유럽에 있어서 문화공동체의 의의 .....             | 59        |
| 2. 유럽의 문화공동체형성사 개관 .....               | 65        |
| 3. 유럽연합 문화관할의 법적 근거 .....              | 66        |
| 4. 유럽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직 및 기구 .....        | 75        |
| 5.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의 법적 기초 .....             | 78        |
| 6.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개별 영역별 노력 .....        | 81        |
| 7. 문화공동체로서 유럽연합의 전망 .....              | 83        |
| <b>III. 일본의 국제교류사업 .....</b>           | <b>85</b> |
| 1. 총 설 .....                           | 87        |
| 2. 조직·인력 .....                         | 93        |
| 3. 프로그램 .....                          | 103       |

|                                       |     |
|---------------------------------------|-----|
| <b>IV. 중국·대만의 문화교류사업</b> .....        | 111 |
| 1. 한국과 중국의 문화교류 .....                 | 113 |
| 2. 중국과 대만의 상호교류 .....                 | 114 |
| <b>V. 문화공동체의 확장 : 한·몽법률문화교류</b> ..... | 119 |
| 1. 한·몽 법제의 계보와 법률문화 .....             | 121 |
| 2. 한·몽 문화교류를 위한 법적 과제 .....           | 123 |
| <b>VI.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제적 접근</b> .....  | 127 |
| 1. 현행법제의 분석 .....                     | 129 |
| 2. 법제적 대응 .....                       | 153 |
| <b>참고문헌</b> .....                     | 157 |

# 연구서설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문헌과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대만, 일본 등의 아시아 2개국과 지역협력 및 공동체 구성의 선도자인 EU의 문화협력 현황 및 구체적인 문화협력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일본은 동북아 최고의 선진국가로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빠질 수 없는 당사자이며 문화부문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로서, 대만은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지역협력 및 문화협력에 특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국가로서, 마지막으로 EU는 세계유일의 지역공동체 형성 지역으로서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연구 대상 국가(군)들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범주를 설정하기 위한 일반이론을 살핀다.

# 1. 총 설

## 가.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성과 범위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어떤 국가들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물리적 지형을 고려할 때 넓게는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 몽골, 대만,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포함하는 많은 국가를 포함시킬 수도 있으며 좁게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만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또한 문화지형을 고려할 경우 문화적 동질성에 따라 한정된 국가만을 포함시킬 수도 있으며, 문화적 이질성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국가의 선택도 가능하다.

문제는 현재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건설 구성이 종래의 일상적인 국가간 문화협력 및 교류 행사 수준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할 때, 전영평 교수의 이론틀에 의하면,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성 국가의 선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동북아 문화공동체 국가를 동북아 주요 경제 교류권과 일치시키는 방안이며 둘째, 전략적 특성에 따른 문화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현재 동북아 경제교류 안이 상정하고 있는 주요 경제협력 대상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 러시아에 관한 입장은 모호함 - 인데 이러한 범주 선택의 기저에는 3국이 차지하는 경제규모가 세계의 5분의 1에 해당되며, 유럽연합의 4배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또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과 보조를 맞출 경우에, 전략상으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중추(hub)가 된다는 3국 협동 전략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은 동북아 경제 교류권과 동일한 국가군을 상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문화공동체 형성 작업은 동북아경제중심 구상의 전략적 선택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없다. 즉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통해서 공동체 참여 구성 국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21세기는 정보화 및 지식

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의 영역의 정보와 지식사회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국가-일본, 중국, 한국-들을 문화 허브로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sup>1</sup>

## 나. 문화개념

근대적인 문화 개념은 국민국가 형성기인 18세기의 후반부터 19세기에 거쳐, 국민이나 민족 또는 역사와 일체의 개념으로서 형성되어, 대부분 주권국가의 구조를 베끼고 있다고 말해도 좋기 때문이다. 즉 백여개라고 하는 문화의 정의에서 공통점을 추출해 보면, 특정한 집단의 독자적인 생활양식에 역점을 두긴, 또는 가치나 심볼 체계에 역점을 두건간에 문화란 특정한 영역내의 공통성과 다른 영역과의 이질성(배타성)을 전제로 하고, 경계내의 균질성과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 경계외와의 이질성과 커뮤니케이션의 불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었다. 이렇듯 “문화”란, 국민문화를 의미하고 국가명 다음에 문화를 붙인다. 중국문화, 한국문화, 일본문화, 러시아문화, 미국문화, 프랑스문화라고 하는 표현이 일반화되고 외국인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언설이 당연한 것처럼 널리 퍼진다. 문화공동체의 모델은 민족(국민) 국가이다. 일본인 학자 나시카와 나가오는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에 입각하여, “민족이란 문화의 담당자이고, 문화란 민족과 모습이라”는 정의를 내린 적이 있지만, 국민과 문명이란 국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쓰여진 문화, 문명, 민족, 국민 등의 말은 다른 과학 기술이나 철학의 용어와 마찬가지로 근대화에 즈음하여 19세기 중반, 주로 에도 막부 시대의 말기·메이지(明治)기의 일본에서, 유럽어에 대한 번역어로 만들어져, 한자권의 여러 나라에 역수입된 역사를 가지는 용어이다.<sup>2</sup>

<sup>1</sup> 전영평, “동북아문화공동체와 한국의 역할,” 인문사회연구회 주최 국제학술회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연구』(2004. 10. 25), pp. 96-98.

<sup>2</sup> 나시카와 나가오,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의 가능성,”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세계의 다양한 지역을 둘러보면 참고해야 할 점이 많지만, 단일모델이 없다고 하는 점은 분명하다.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가능성은, 그 지역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찾아 낼 수밖에 없다. 민족이나 국민성, 전통이나 국민문화로 귀착하는 고정적 배타적 문화개념이 아니라 이동과 교류를 축으로 하는 문화개념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역사학자나 문화인류학자는 이미 깨닫고 있는 일이겠지만, “문화”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발전한 곳은 고립된 깊은 산 속이기보다는, 이질적인 것들이 만나고 교류하는 “열려 있는” 장소였다. 또는 깊은 산 속이라 하더라도 여러 인간들이 생활하고 외부에서의 방문객들이 있었던 곳이다.<sup>3</sup>

고전적인 문화개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문화개념이 그 형성기에 들어온 자기중심적, 고립적, 배타적인 경향은 극복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단일 민족신화가 뿌리 깊은 일본이나 한국에서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이나 러시아에도 이것이 강하다고 한다면, 이 경향은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에 공통된, 세계의 제 지역 가운데에서 두드러지는 특색일지도 모른다.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의 가능성은 그것이 대미 관계 가운데에서 어떻게 주체적으로 스스로의 위치를 결정지를 것인지에 달려 있다.<sup>4</sup>

## 다. 전후관계와 식민지후

현 시점에서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경우, 이 문제는 지나쳐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1945년 8월 15일을 일본인은 패전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를 전후라고 부른다. 동북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이 승리이고 해방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전후가 아니라 그 이후도 전쟁이 계속되고, 게다가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이 상황의 차이와 의식의 단절은 크다.<sup>5</sup>

---

위한 정책 연구』, p. 147.

<sup>3</sup> 위의 글, pp. 147-148.

<sup>4</sup> 위의 글, p. 148.

<sup>5</sup> 위의 글, p. 150.

나시카와 나가오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식민지후(post colonial)라는 개념에 대하여 재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처음 포스트(post) 콜로니얼(colonial)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많은 식민지가 독립하고 국민국가 형성이 이루어진 역사적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쓰여졌지만, 현재는 식민지라고 하는 체제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식민주의적인 지배나 심성 또는 문화적 상황이 잔존하고, 형태를 바꾼 식민주의가 때로는 한층 강화되고 있는 사태를 가리키는 데 쓰여지게 되었다.<sup>6</sup>

## 라. 지구화와 문화중심

아울러 지구화(글로벌화)에 관한 성찰이 필요하다. 현재 또는 미래에 하나의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려면 글로벌화에 대한 고찰과 대응이 불가결하다. 이 복잡하고 복합적인 현상을 짧게 시간에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글로벌화가 제2의(또는 새로운) 식민주의가 되지 않기 위한 궁리나 대책이 필요하다.<sup>7</sup>

문화 소통을 다원적 과정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의 중심”이라는 관념이나 현상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앙 집권적 문화 소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문화 소통의 과정은 여러 갈래의 길로 흘러야 한다. 그렇게 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생긴 야망, 호기심, 창의성에 신뢰를 붙여넣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치적이며 관료적인 지원의 틀이 필요할지 모르나, 문화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사람들과 시민사회가 그것을 느끼고, 여러 갈래로 표현된 대상들을 쓸모 있고 흥미로운 그리고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기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sup>8</sup>

---

<sup>6</sup> 위의 글, p. 151.

<sup>7</sup> 위의 글, p. 152.

<sup>8</sup> 루드거 퀴하르트, “문화공동체 형성: 유럽-문화적 소통의 통일구축,”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연구』, p. 70.

## 2. 각국의 노력

### 가. 일본<sup>9</sup>

일본은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하여 일본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과 일본국민의 대외활동을 돕는다는 목표아래 다양한 문화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1984년 7월 정보문화국내의 2개 과를 개조해 “문화교류부”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각종 정부주도의 문화교류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입안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민간단체의 문화교류 활동을 돕고 있다. 이 문화교류부와 더불어 일본 문화교류사업의 실시기관인 「국제교류기금」(The Japan Foundation)<sup>10</sup>이 일본정부 문화정책의 핵심이라고 하겠다. 1972년 일본 외무성소관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국제교류기금은 일본에서 국제문화교류를 담당하는 첫 공적 전문기관으로서 학술, 일본연구에서 일본어 교육, 예술, 출판, 영상매체, 스포츠,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인적 교류를 기본으로 한 문화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학자·연구자를 중심으로 문학·저널리즘·예술·스포츠·생활문화 일반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세계 각지에 전문가 등을 파견하여 일본문화 소개나 지도·협력을 실시하는 인물 파견 사업, ②세계 각국 사람들이 일본이나 일본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학자·연구자, 예술가, 언론인 등 문화 상호교류를 담당하는 인사들을 초빙하여 일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도록 하는 인물 초빙 사업, ③세계 각국의 일본어 교육기관에 대한 전문가 파견, 일본어강좌 지원사업, 일본어 능력 시험 실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어 보급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어 교육 및 지원사업, ④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나 연구자를 대상으로 일본에서의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각국의 일본연구기관에

<sup>9</sup> 주한일본대사관 및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http://www.mofa.go.jp>) 참조

<sup>10</sup> 국제교류기금([http://www.jpf.or.kr/about\\_us/about\\_us\\_11\\_intro.jsp](http://www.jpf.or.kr/about_us/about_us_11_intro.jsp)).

강사 파견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해외 일본연구 지원사업, ⑤ 회화·조각·비디오아트의 미술분야에서도 일본의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동시에 일본에 소개될 기회가 적은 해외미술을 다루는 전시회를 주최하는 미술교류 지원사업, ⑥무용·음악·연극 등의 무대예술을 해외에 소개함과 동시에 일본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해외의 무대예술을 일본 국내에 소개하고 또한, 일본과 해외의 무대 관계자에 의한 공동 제작 추진 등을 하는 공연예술 교류사업, ⑦세계 각국의 출판사를 지원하여 외국어로 쓴 뛰어난 일본관계 도서의 출판을 촉진하고 또한 정기 간행물을 통해 문화교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출판교류사업, ⑧극영화·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영화와 TV프로그램 등의 영상매체를 통해 해외에 일본문화를 소개하고 일본에 외국문화를 소개하는 영상교류 사업 등이 있다.

일본 정부의 상시적인 문화협력활동은 ① 해외에 있어서의 일본어교육 및 일본연구의 지원활동 ② 예술 및 학술교류, 그리고 재외공관의 문화사업 등이 중심이 된 문화의 교류활동 ③ 매년 경쟁시험을 통하여 선발되는 국비유학생, 아시아와 유럽의 젊은 지도자를 일본의 대학원에서 교육시키도록 하는 영리더즈 초청프로그램, 어학지도 등을 행하는 외국인청년초청사업인 JET(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프로그램<sup>11</sup> 등으로 대변되는 인적교류 활동, ④ 개발도상국에 대한 ㉠ 문화재 및 문화유적의 보존과 활용, ㉡ 문화관계의 공연과 전시의 개최, ㉢교육 및 연구의 진흥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자금 등을 제공하는 문화무상협력 활동 및 유네스코 문화유산 보존 등 세계 유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수복을 돕는 문화의 협력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문화협력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은 대사관과 일본공보문화원 및 그 산하의 여러 단체 및 기관(예를 들어서 「일본음악센터」(서울 소재)를 통한 일본 대중음악의 소개 및 저변 확대) 등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상당한 수준의 정부주도형 문화협력이 이루어지고 있

<sup>11</sup> JET 프로그램(<http://www.jetaakorea.org/jetproram/index.html>).

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일미센터, 아시아센터 등을 설치하여 각 지역과의 문화협력을 특별히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이루어진 “2002 한일국민교류의 해”나 “2002 중국의 해”, “2002 일본의 해” 등을 지정하여 동북아의 친밀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기도 하는 등 지역적 협력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세계에 일본과 일본인, 일본문화를 알리고 이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 일본정부나 일본인 개개인의 다양한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인식의 큰 줄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특별히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 나. EU<sup>12</sup>

현재 유일하게 통합적인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EU는 초창기의 경제협력을 넘어서 정치, 경제, 안보, 문화에 이르는 다방면의 공동체 내부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EU 이외의 여러 국가들과 지역수준을 넘어서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로 경제위주의 교류와 안보를 중심으로 한 정치협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큰 권역별로(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아메리카 등)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류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들과는 원조를 미국과 같은 군사강대국과는 외교, 안보협력을 중동 등 분쟁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원조 및 외교, 안보협력을 병행하는 형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EU 이외의 지역 중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지역은 없으며 일본과 같은 유학생 초청 등의 인적 교류를 하거나 예술 활동 혹은 학술교류를 통한 문화협력의 형식이 중심이라기보다는 단일국가처럼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안보, 문화협력을 아우르는 총체적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모델이 될 수 있는 EU의 모습은 EU의 대외

---

<sup>12</sup> 유럽연합(EU)([http://www.europa.eu.int/index\\_en.htm](http://www.europa.eu.int/index_en.htm)); 대한민국주재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대표부(<http://www.delkor.cec.eu.int/>).

적 협력보다는 EU내부에서의 각 지역간의 통합과정에 있을 것이다.

EU는 현재 이탈리아나 동유럽 수 개국처럼 새롭게 EU의 회원국이 된 국가들과 프랑스나 독일 등과 같은 기존 회원국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문화협력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경제격차의 해소를 통해 회원국 수를 확대하여 비교적 부유하지 않은 유럽의 국가들이 새롭게 EU의 회원국이 되었을 때 기존의 EU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특별하게 EU 내에서 EU의 통합이나 공동체 강화를 위한 문화교류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이 관측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EU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화교류는 EU와 EU 이외의 지역과의 문화협력과 EU 알리기이다.

## 다. 대만<sup>13</sup>

현재까지 살펴본 대만의 문화교류에는 특별히 동북아를 겨냥하였다고 보여지는 형태의 문화교류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같은 대외문화홍보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만, 대만과 일본은 1972년 양국의 관심사를 특별히 전담하는 비정부 기구를 각각 설치하여(일본의 ICA(Interchange Association)/대만의 AEAR(Association of East Asian Relations))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은 이를 Association of East Asia Relations로 지칭하고 있다.<sup>14</sup>

이 외에 대만은 농업기술이나 어업기술연수 초청 등 각종 트레이닝 프로그램 실시하고 있어 주로 인적 교류를 통한 문화협력을 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up>13</sup> 대만 외무부 ([http://www.mofa.gov.tw/mofa91/web/english/index\\_en.php](http://www.mofa.gov.tw/mofa91/web/english/index_en.php)); 대만 행정원대륙위원회 (<http://www.mac.gov.tw>).

<sup>14</sup> <[http://www.mofa.gov.tw/mofa91/web/english/index\\_en.php](http://www.mofa.gov.tw/mofa91/web/english/index_en.php)>.



# I

## 공동체 형성의 법률문화적 기초



## 1. 총 설

### 가. 문제의 제기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개념은 다소 저항감이 있으나 “공동체”라는 개념은 친화적이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이 블록화를 지향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동북아 공동체의 형성은 동북아의 발전기틀을 다지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는 적지 아니한 애로가 예상된다. 영토와 인구가 거대한 중국은 국제정치적 측면을 제외하고는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 대동아공영권을 주창하면서 아시아의 맹주를 꿈꾸었던 일본은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주변국가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 남북한 공동체의 형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폐쇄적인 국제관계를 유지해온 북한은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 주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과 적대관계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대만을 동북아 공동체에서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의 여부도 문제된다. 그러나 동북아 공동체 건설은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에서 여러 가지 난점이 예상됨에도 사회경제적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나. 서구법제의 계수와 법질서의 동요

문명은 충동을 억제한다. 야만 상태에서 물려받은 본능을 억제하고 체계화시킨다.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낙인찍고 처벌한다. 문명이란 문자처럼 기술적이어서 어느 민족이나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문명은 또 고도로 합리적이다. 문명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현대 아시아의 법질서는 서로 족보가 다른 법들이 공존한다. 한국의 경우에, 헌법은 독일과 미국의 두 계보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과 사회법은 미국 쪽에 가깝다. 민법·민사소송법과 형법 그리고 회사법은 독일식이다. 해상·보험법은 다분히 영국식이다. 행

정법은 독일식의 기반에 미국과 프랑스식이 가미되었다.

근대 독일법과 프랑스법은 게르만 고대법보다 로마법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초기 미국법은 대부분의 영국법과 약간의 프랑스법을 모델로 삼았다. 고대 영국법은 독일법보다 더 게르만적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메이지 유신(1868년) 이후 근대화를 추구하면서 독일과 프랑스를 본따 근대법제를 확립하였던 일본은 식민통치기에 한국에 자국의 법제를 이식하였다. 해방후 한국에 주둔한 미군정 당국과 이승만 박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미국식 법제를 대폭 채용하였다. 요컨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현대 법제는 혼성물이다.

아시아의 여러 민족들은 게르만 민족이나 로마인들과 서로 피 한방울 섞이지 아니하였고 민족 교류도 없었는데 게르만법과 로마법을 행위규범의 근간으로 삼고 있음은 법이 보편을 지향하는 문명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일본 소설 『로마인의 이야기』가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다. 로마인이 우리에게 낯설지 아니함은 오래 전부터 이 땅에 ‘로마법의 정신’이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즉 법의 문명적 요소는 외래 성문법[繼受法]의 존재근거이다.

문명이 열매라면 문화는 풍토이다. 대다수 국가의 역사적 전통은 문명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의 양자를 포섭하고 있다. 전자는 ‘보편’을 후자는 ‘특수’를 지향한다. 법질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요소들은 당대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때로는 강조되기도 하고 때로는 변모되기도 한다. 각국은 고유한 법문화 속에 외래의 법문명을 수용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법제는 전통과 결별하고 외래 법제를 덩어리째 들여왔기 때문에 문명적 요소가 문화적 요소를 압도한다. 그러나 선진문명을 지향하는 외관상의 법질서와 달리 아시아인의 가슴 밑바닥에는 여전히 전통문화에 기반을 둔 법 감정이 꿈틀대고 있다.

현대의 경제법은 투기나 매점매석을 엄하게 규제하지만 한국의 ‘허생전’과 같은 고전은 이를 긍정한다. 현대 법제는 대통령에게도 일부일처를 요구하지만 봉건사회의 법제는 신분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다. 현대법은 경쟁

사회에 걸맞는 ‘상인’의 인간상을 예정하지만 전통법은 농부나 어부를 공동체 사회의 주역으로 설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시대 법률세계의 주인공들은 길 다르고 속 다른 이원적 규범체계에 포섭되어 있다. 가슴의 법과 머리의 법이 다르다. 때때로 갓을 쓰고 서양 춤을 추는 모습을 연출한다.

일부 국가를 제외한 아시아권 국가들의 법질서가 혼란을 거듭하는 듯이 보임은 외래의 법문명과 토착 법문화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충돌과정을 거쳐 법문명은 법문화로 전화되거나 포섭된다. 같은 국가내의 법문화 상호간에도 갈등이 발생한다. 문화 권역은 국가 영역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같은 권역에서도 계층간 위상에 따라 문화가 다르다.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축 이전에 법의 현상과 본질에 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다. 법률문화적 접근의 의의

현대의 위정자들은 흔히 “법질서가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하거나 “법대로 하겠다”고 다짐한다. 법집행 관리들은 때로 “정당한 법의 절차(適法節次)에 따랐으므로 정당하다”고 항변한다. 정치가들이나 공무원들의 법의식에 비하여 국민들의 그것은 형편없다는 말로 들린다. 아닌 게 아니라 - 진짜 누가 더 형편없는가는 별론으로 하고 - 법대로 하면 손해만 본다거나 심야에 교통신호를 지켜보야 내 목숨만 위협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할 경우에 - 옆 차는 끼어들고 뒤 차는 상황등을 번쩍거리 - 이 쪽만 바보로 취급당한다. 경쟁의 윤리와 익명의 편리함이 횡행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약삭바르게 그리고 적당히 살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다.

아시아 국가들의 법질서는 왜 낮은 수준에서 맴도는가? 원래 수준이 낮았을까 아니면 중도에 낮아졌을까? 아니면 “법질서 수준이 낮다”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오류는 아닌가? 법을 ‘문명’이라고 규정한다면 법질서의 “수준이 높다” 또는 “낮다”고 평할 수 있지만, 법을 ‘문화’라고 규정한

다면 ‘수준’ 타령은 불가하다. 문화는 가치판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뇌물을 주고 받는다면 그리고 뇌물과 선물을 구별하지 못하고 선물을 예의나 사랑의 징표로 이해한다면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뇌물죄를 처벌하는 실정법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현대 아시아권의 법현상에서 나타나는 혼란은 법률‘문화’ 구조라는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문화구조적 접근에서 문제되는 바는 이질적인 문화간의 갈등이다. 우리 주변에는 크게는 지역감정에서부터 작게는 부부싸움에 이르기까지 ‘문화 갈등’ 현상이 곳곳에서 관찰된다. 산간 도로를 횡단하던 야생동물들의 죽음도 종(種)간의 문화차이 때문이다. 야생동물들은 인간들의 문화와 다른 생활양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명에 횡사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들에게 인간의 교통도덕을 가르칠 수도 강요할 수도 없다. 모든 개체의 문화는 그들만의 고유한 생존방식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사회에서 법질서의 동요와 혼란이 심함은 이질적인 법문화간의 갈등에 기인하는 바 크다.

## 2. 동북아의 법률문화 분석

### 가. 유교가 법질서에 미친 영향

근대 이전 동북아의 법질서는 “유교”(儒敎)라는 공통의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범충신(范忠信)·정정(鄭定)·담學農의 견해에 의하면, 유교는 그야말로 ‘가정숭배교’(家庭崇拜敎)·‘가(家)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유교의 주요 내용이 바로 종법제적(宗法制的) 가정 원칙의 승화이고 총체이기 때문이며, 또 그것이 전통시대 중국의 일반적인 가정 형태인 종법제 가정을 위해 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유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식욕이나 남녀간의 사랑과 같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飮食男女]과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윤리’, ‘청소나 인사와 같이 어린아이 적부터 배워야 할 일상

생활의 예절’등에 관한 것이며, 그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아버이는 자애롭고 자식은 효성스러우며, 임금은 예(禮)를 지키고 신하는 충성하며, 위사람은 은혜롭고 아랫사람은 순종하는”[부자자효(父慈子孝), 군예신충(君禮臣忠), 부의부칭(夫義婦聽), 형우제공(兄友弟恭), 장혜유순(長惠幼順) : 『禮記』 『禮運』] 종법제 사회조직의 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유교의 교의와 실천은 전통시대 중국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인 아시아 국가들의 법관념에 깊고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sup>15</sup> 이른바 ‘예(禮)·이(理)·명분·의(義) 등과 같은 유가(儒家)의 학설은 끊임없이 법률 속으로 삼투되어 갔으며, 심지어는 사법 과정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인용되어 ‘법 위의 법’, ‘법 밖의 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한대(漢代)에 시작되어 당대(唐代)에서 완성된 법률의 유가화(儒家化) 과정 이전에 이미 유교적 관념들 중의 많은 부분이 직접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신봉하고 준수하는 법률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서양 학자들이 말하는 바 ‘자발적 법률’이다. 전통시대 중국인들은 통상 조정(朝廷)의 법률에 따라 어떤 사람의 언행의 불법여부나 죄악의 경중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들어 습관이 유교적 교의에 따라 이들을 판단했다. 교의를 위반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불법’이었다. “예[理]에 맞지 않으면 국법(國法)도 용납하지 않는다”거나, “예로써 규제할 수 없는 사람은 형(刑)의 적용을 받게 된다”거나, “법은 인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념이었다.

## 나. 한국: 조종지법(祖宗之法)의 존중

현대 한국의 법질서는 중세 게르만족의 대이동처럼 대부분 독일법과 미국법에 의하여 평정되었다. 또 종래의 법률관은 일본의 시각에 의하여 교정되었다. 해방 후부터 최근까지 다수의 법학자나 법률가들이 여전히 일본 저술에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서로 다른 족보[法系]에 속한 법의

<sup>15</sup> 范忠信·鄭定·답學農, 『中國法律文化探究』 (일조각: 1996), p. 10.

공존은 겉으로 평화스러웠으나 속으로는 여전히 이질적이었다. 많은 경우 외래법은 한국 고유의 정서를 품기 곤란하였다. 가정의례준칙이 그렇고 형법상 친고죄나 국가보안법이 그러하다. 법을 지키기 싫어서가 아니라 의식의 흐름과 어울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실정법을 벗어나는 탈법현상이 늘어난다.

문화는 어느 집안의 가풍처럼 특수한 것이다. 문화는 본래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특이한 미신이나 풍습 또는 관습을 지칭하기도 한다. 한국 문화의 뿌리는 상당 부분 생활무속에서 비롯한다. 종교적 다원론에 터 잡고 있다. 타인을 속박하지 아니하고 구속받기도 꺼리는 생활양식을 보인다. 문화는 그 민족의 내부에서는 자극적이지만 합리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오늘날의 신세대들이 왜 무릎 찢어진 청바지에 배꼽이 드러나는 티셔츠를 즐겨 입는가 그리고 온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쫄쫄이’ 패션을 선호하는가에 관하여 그럴듯한 설명이 어렵다.

법문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살아있는 법’(lebendes recht)으로 간주되는 관습법은 문화의 이러한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다 그러하듯이 한국인들의 토착규범도 자연스러운 공동체 생활의 산물이다. 갈등이나 분쟁의 예방과 해소를 둘러싼 한국인의 행위양식은 한국인 고유의 전통을 근간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이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법전이나 공문서들을 통하여 전수되기보다는 구전이나 습속을 통하여 체득된다. 전래의 법감정은 한국인의 유전정보 속에 은밀히 숨어 있다.

문화는 회귀한다. 한국 사회는 아득한 고대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샤머니즘의 정신적 습속이나 몽골 지방의 생활양식을 현재에도 공유하고 있다. 굿이 그렇고 돌무덤이나 바위그림이 그렇다. 문화전통은 한 때의 유산이 아니라 전 시대를 관통하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질서의 영역에서도 탈법을 막는 대안은 더욱 강력한 단속이 아니라 법문화에 주목하는 것이다. 미국식 햄버거와 피자 그리고 콜라에 길들여졌던 입이 한 세대만에 된장 찜에 보리밥을 찾고 식혜를 마시듯이, 외래 법문명에 식

상한 한국인들은 전통사회의 법질서와 법감정을 동경한다.

외래 법문명을 선호하는 위정자들은 전통 사회의 법문화를 서구의 법문명보다 열등하다고 단정하지만 전통 법문화는 오히려 현대 법문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보고이다. 예컨대, 한국인은 거래관계보다 인간 관계를 중시한다. 따라서 법에 맡기기를 싫어한다. “법대로 하자”는 말에 모멸감을 느낀다. 두레 습속에서 보듯이 공동체주의에 친숙하다. 할머니·할아버지 법[祖宗之法]을 존중한다. 향약이나 동법(洞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치정신이 강하다. 안방과 사랑채의 공간구성이 시사하는 바 사생활의 자유[프라이버시]가 확립되었다. 반촌(班村)이나 농어촌을 가릴 것 없이 여성들이 각자의 경제적 역할을 완수함으로써 일찍부터 여권(女權)이 확립되었다. 양반이나 벵이에서 드러나듯이 전통 공동체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뛰어났다. 학업을 마친 뒤 서당 훈장에게 드리는 ‘감사’ 예물에서 알 수 있듯이 선물은 예(禮)에 적합한 행동이었지만 교육은 거래관계가 아니었다.

## 다. 중국: 예(禮)와 인지상정(人之常情)

중국은 분지(盆地)와도 같이 천연적으로 다른 지역과 격리되어 하나의 인문지리적 단위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격리된 상황은 기원 1세기 초에 와서야 비로소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지만, 그것도 단지 몇몇 개인들이 온갖 고초를 겪으며 서쪽과 남쪽의 천연 장벽을 넘은 것일 따름이었다. 이와 같이 외부세계와 격리된 환경 속에서 독특한 문화가 생겨났는데, 이는 일종의 대륙형의 농업문화이며 혈연운리를 중시하는 종법(宗法)문화였다. 范忠信·鄭定·답學農의 연구에 의하면, 농작물 재배를 위주로 하는 생계유지 방식, 개별적 소농(小農)경작의 노동방식, 일부일처를 단위로 남녀가 각각 농사와 길쌈에 종사하는 소농 가정 형식, (통치 계급이 조세를 징수해 간 이후에 있어서의) ‘자급자족’적인 생산물 분배형식, 그리고 이러한 생계유지 방식과 노동방식 및 분배방식에 상응하는 의식 형태 및 상층

구조 — 즉 종법(宗法)관념, 가부장제, 가(家)와 국(國)의 일체관념, 천인 합일(天人合一)과 천인감응(天人感應)관념, 인(仁)·덕(德)의 관념, 예(禮)·의(義)의 관념…이런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바로 중국의 전통문화이다. 중국 전통문화의 일부분을 이루는 중국 법문화는 또한 아시아적이며 중국적인 선명한 특색을 아울러 갖고 있다.

생산방식과 물질적인 생활방식이라는 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은 일찍부터 명의상으로는 토지 국유[王有]이지만, 실제상으로는 토지 사유의 형태를 취해 왔으며, 개별적인 소농[自耕農과 佃農]이 전체 인구의 주요 구성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일가일호(一家一戶)의 소농경작 및 남녀가 각각 농사와 길쌈에 종사하는 형태가 주된 생산방식이었으며, 상업에 의지하지 않는 자급자족 형태가 물질적인 면에서의 주된 생활방식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들로 말미암아 전통시대 중국 대륙에서는, 상품 교환이나 생산 중에 일어나는 분규의 처리를 우선적인 주목적으로 하는 ‘사법’(私法)·‘시민법’ 혹은 ‘해상법’(海商法) 등이 발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또 납세와 요역을 제외하고는 민사 계약에 관련된 민사(民事)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관념이 발달하기도 매우 어려웠다. 모든 법률제도는 거의 전부가 소농(小農) 소토지(小土地) 사유제와 자급자족적 생산 생활 방식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소농적·종법적(宗法的) 흔적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 없었다. ‘정전제’(井田制)에서 ‘균전제(均田制)[班田制]’에 이르기까지, 또 홍수취안(共秀全)의 방식[天朝田畝制度]에 이르기까지, 전통시대 중국의 법관념은 소농(小農)생산방식[남녀가 각각 농사와 길쌈에 종사하며, 자급자족적]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기초로 한 것이었다.<sup>16</sup>

옛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인의 법관념은 복잡적이고 다원적이었다. 중국인들이 법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법 위의 법’[‘禮’·‘天理’], ‘법 중의 법’[法律條文], ‘법 밖의 법’[倫常의 情·人之常情] 등을 충칭하는 것이다. 엄격한 의미에서의 법[實定法]은 전통시대 중국인들의 마음속에서는 부차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사람

<sup>16</sup> 위의 책, p. 5

들은 실정법을 부득이한 산물로 여기고 있었다. 전통시대 중국인들의 마음 속에서 실정법이란 ‘예의’(禮義)나 ‘천리’(天理)가 불완전한 형태로 문자화 되고 조문화된 것이며, 윤상(倫常)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그리고 최후의 방어선이었다. 중국인들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이상적인 법률이란 ‘천리’와 ‘국법’과 ‘인정’이 삼위일체가 된 그런 형태를 말한다. 바로 이러한 삼위일체적인 관념이 전통시대 중국에 있어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법관념이었다.<sup>17</sup>

## 라. 일본: 탈법적 관행(慣行)

일본의 메이지[明治] 정부(1868~1912)는 유신(維新 1867) 후에 바로 지조(地租:토지세) 개정이라는 조치를 통하여, 봉건제도의 기초였던 토지 제도를 개정하여 근대적 토지소유권 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동산(動産)거래에 대한 봉건제 하의 구속을 해제하여, 상품의 자유유통을 촉진하였다. 그리하여, 메이지 29년의 「민법」 제2편(175조 이하)은, 이렇게 하여 국가제도의 평면에 도입된 근대적 소유권 제도에 체계적인 표현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법의 제도는 반드시 국민의 일상적인 의식 속에 들어가 정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근대 이전부터의 전래적인 소유권의 의식이 사람들의 행동을 광범위하게 결정하였다.<sup>18</sup>

일본에서는 타인의 재산관리자가 그 관리재산을 자신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 내지 이득하는 것은 ‘부수입’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수입’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죄’ 내지 ‘부도덕’의 요소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 기존에는 부수입자도 일반 사람들도, 그와 같은 부수입 행위를 「타인의 재산권의 침해」으로 강하게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직무에 따른 여분의 소득[부수입]’으로 인식하여 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른바, 사친[주부 등

<sup>17</sup> 위의 책, p. 10

<sup>18</sup> 川島武宜, 『日本人の法意識』(岩波新書, 1967), p. 71

이 살림을 절약하거나 하여 남편 모르게 은밀히 모은 돈도, 근대적 소유권의 개념에서 본다면, 관리재산의 부수입적 횡령에 지나지 않겠지만, '일본 고유의 미풍양속에 의하면 무엇인가 떳떳치 못함을 동반하고 관습상 시인 내지 관대 하게 바라보았던 '부수입'의 전형이다.<sup>19</sup>

이른바 부수입적 배임·횡령도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의 완전한 「권리」가 아닌, 발견해 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며, 게다가 발견하더라도 “그다지 나쁠 리 없다.” 요컨대, 거기에서는 당사자 간의 사실상의 힘 관계의 미묘한 변화가 그 자체 “조금씩 처리”되는 - 이른바 연속선에 있어서 - 규범의 내용을 변화시킨다.<sup>20</sup> 정치가나 관리들이 업자들로부터 받는 '떡값'은 동양적 이중규범의 전형이다. 횡령이나 절도 또는 알선수재가 분명한 음성적 부수입을 '리베이트'라고 부르면서 묵인하고 자랑한다. 음성적 촌지가 봉급보다 더 많은 봉급생활자들은 급료를 줄 필요가 없음에도 이중적 보수 체계를 인정함은 현대 아시아 사회가 외래 법문명과 전통 법문화의 이원적 법률관을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징표이다.

## 마. 소 결

### (1) 문화사상

EU가 통화통합에 이어 최근에는 정치통치의 실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발전한 것은 유럽에는 기독교라는 문화적 공통성이 있어서라던가 구 로마 제국의 판도라는 공통의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동북아시아의 문화적 공통성은 「한자」 문화권이라던가 「유교」 혹은 「불교」 문화권이라는 논의가 일본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한 구체적 문화사상에 「문화공동체」의 근거를 두는 것은 그리 잘하는 일이 아니다. 한자 문화권이라고 하여도 중국의 한자와 일본의 한자는 이 시점에서 상당히 달라졌고 한국에서는 한글이 주류이며 「동북아시아」라고 한다면 지리적·경

<sup>19</sup> 위의 책, p. 84

<sup>20</sup> 위의 책, p. 86

제적으로 러시아 연해부까지를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곳을 한자문화권이라고 볼 수 없다. 「유교」나 「불교」를 근거로 한다면 한국에 현재 많이 존재하고 일본에도 있는 기독교의 중요한 공동체가 배제되며 중국의 이슬람교도도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EU의 경우에도 기독교를 강조하면 유대인의 중요한 집단이 다시 차별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고 터키 가입문제를 구태여 들지 않아도 서구제국에 있는 이슬람계 이민사회를 자리매김할 수 없게 된다. 구 로마제국의 판도라고 하여도 이는 북구나 동구의 여러 나라가 배제된다. 결국 무언가 특정한 구체적인 문화사상을 「공동체」의 기반에 두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배제되는 것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화공동체」의 구상에는 찬성하기 어렵다.<sup>21</sup>

## (2) 역사인식

「한자」나 「유교」나 「불교」와 같은 특정한 문화사상, 더욱이 「겨울연가」(일본에서 인기 있는 한국의 텔레비전드라마)와 같은 유행현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문화」공동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EU연합은 먼저 「석탄철강공동체」로서 그리고 점차 경제통합에서 통화통합으로 진전되어 정치 통합을 추구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만 이러한 프로세스가 가능한 것은 수세기에 걸쳐 전쟁을 계속해온 프랑스와 독일이 20세기에 2회에 걸친 대전쟁을 통해 서로 전쟁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무의미함을 확신한 것, 특히 독일이 나치스 독일시대의 침략정책이나 학살행위의 오류를 인정하고 프랑스와 다른 국가간에 현대사에 관한 역사인식에서 일정한 공유를 가능하게 한 것이 그 근원에 있다. 독일이 나치스시대의 잘못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는 EU통합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동북아시아에서는 「야스쿠니」문제나 「역사교과서」문제에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근현대사에 대해 여전히 국가나 민족간의 역사인식에 단절이 존재한다. 이 단절은 제국일본의 아시아침략에 의해 만들어지고

<sup>21</sup> 다카하시 데즈야, “단절의 세기를 넘어: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를 위한 覺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연구』, pp. 218-219.

전후 일본의 무책임에 의하여 오늘날까지 잔존하는 것인데 한국(6·25)전쟁이나 중국의 내전, 문화대혁명에 유래한다. 이러한 단절을 넘어 화해와 상호 신뢰에 이르지 않고는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는 탄생하기 어렵다.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가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은 구체적인 문화사상을 공유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현대사상에 생긴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를 비롯한 고통에 넘치는 사건들의 기억을 가능한 한 공유하고, 가능한 한 공통의 역사인식을 형성하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야스쿠니」문제나 「역사교과서」문제를 비롯한 대소 여러 가지의 근현대사의 평가에 관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역사를 알고 가능한 한 공통의 역사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대화를 거듭함에 따라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의 가능성이 열린다.<sup>22</sup>

### 3. 유럽연합의 법률문화 분석

#### 가. 서 설

##### (1) ‘법적 공동체’ 및 ‘경제공동체’로서의 유럽공동체

유럽공동체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법적 공동체’(legal community; Rechtsgemeinschaft)의 성격을 갖는다.<sup>23</sup> 다시 말해, 유럽공동체는 통상

<sup>22</sup> 위의 글, p. 220.

<sup>23</sup> 유럽공동체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複數(European Communities; Europäische Gemeinschaften)로 일컬어져야 한다. 즉, 1951년 파리조약(1952년 발효)에 의해 결성된 유럽석탄철광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그리고 1957년 로마조약(1958년 발효)에 의해 결성된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가 그것이다. 그 중 유럽석탄철광공동체는 원래부터 50년의 존속기한을 두고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2002년 해체되었고, 유럽경제공동체는 1992년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에서 체결된 유럽공동체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1994년 발효)에 의해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로 개칭되었다. 따라서 현재 複數로 ‘유럽공동

의 국제법상의 국제기구와는 달리,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초국가적 기구(supra-national institution)로서, 회원국들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규칙과 결정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를 위해 입법기관인 이사회(Council)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 집행기관인 집행위원회(Commission) 및 재판기관인 유럽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이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자국의 헌법에서 이러한 유럽공동체에 각국의 주권을 일부 이양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럽공동체는 - 연방국가에서의 연방에 대비할 수 있을 만한 - 완벽한 법적 실체를 갖고 있는데, 그 관할이 주로 상품·노동력·용역·자본의 자유이동의 보장 및 通貨의 통일을 통한 ‘域內市場(internal market)’의 구축이라는 경제적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그 임무의 관점에서 보면 유럽공동체는 본질적으로 ‘경제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 (2) 유럽공동체 및 유럽연합의 ‘문화공동체’의 지향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마스트리히트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에 의하여 문화 영역도 유럽공동체의 임무에 포함되게 되었다. 동 조약 제3조 제1항(q)호에서 ‘회원국의 문화 발전’을 유럽공동체의 활동영역의 하나로 명시하고, 특히 제151조에서는 회원국 및 지역의 문화다양성의 유지, ‘유럽 민족들의 문화 및 역사의 전파 및 인식의 개선, 유럽과 관련된 문화유산의 유지 및 보존, 비상업적 문화교류, 예술적 문화적 창조 등을 유럽공동체의 임무로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원국의 문화적 다양성의 보존이 유럽공동체의 첫 번째 임무

---

체(European Communities)라고 하면 유럽경제공동체의 후신인 - 좁은 의미의 - 「유럽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를 포괄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는 單數로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라고 부르는데, 이는 위 좁은 의미의 유럽공동체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유럽원자력공동체는 그 권한범위가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기관인 이사회·집행위원회·유럽의회·유럽법원이 유럽공동체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통합되어 있으므로, 통상 위 좁은 의미의 유럽공동체만이 관심대상이 되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이에 한정하기로 한다.

로 강조되고 있지만, 바로 이어 두 번째로 ‘유럽 민족들의 문화와 역사’라는 문구에서 표현되다시피 유럽공동체는 ‘유럽의 문화’를 공유하는 하나의 ‘문화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92년 유럽공동체 설립조약과 함께 체결된 유럽연합조약에 의해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결성되었는데, 이는 포괄적인 ‘정치공동체’로서 보다 긴밀한 유럽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즉, 유럽연합은 유럽공동체와 달리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못하는 국제법상의 국제기구이지만, 그 임무는 첫째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과 둘째 ‘경찰·형사사법협력’(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PJCC)과 더불어 셋째 유럽공동체의 설치·운영이다. 다시 말해, 유럽연합은 유럽공동체를 포함하는, 그러나 그것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외교·사법을 포괄하는 정치적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법적 통합을 지향하는 유럽연합은 그 전제로서 ‘문화적 통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3) 일차적 목표로서의 ‘법문화공동체’

이상과 같이 유럽공동체 내지 유럽연합이 법·경제공동체로서 출발하여 문화·정치공동체로까지 발전하여 앞으로 완전한 유럽통합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단계는 ‘법문화’(legal culture; Rechtskultur)의 통일이다. 이는 한편으로 법적 공동체로서의 유럽공동체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전제 조건임과 동시에 앞으로 문화적·정치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문화공동체’의 구축은 유럽통합의 일차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문화공동체의 구축을 위해 유럽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론은 ‘비교법’(comparative law)과 ‘비교법문화’(comparative legal cultures)이다.

## 다. 비교법과 유럽통합

### (1) 비교법의 개념

‘비교법’은 ‘상이한 법체계의 차이점, 유사성,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를 의미한다.<sup>24</sup> 법질서 전체의 특징을 비교대상으로 삼는 ‘거시비교(巨視比較)’(macrocomparison)와 개개의 법적 문제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미시비교(微視比較)’(micorcomparison)로 나눌 수 있다. 거시비교는 法源, 입법의 유형, 법률의 해석방법, 판례의 효력, 학설의 위상, 판결의 방식, 법률가 양성제도 등 법질서 전체적 구조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문화’라는 요소가 첨가되면 ‘法文化論’(legal culture theory)으로 발전한다. 법에 대한 법률가 및 일반대중의 의식도 법문화론의 주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비교법은 법사학(法史學)·법사회학(法社會學)·법철학(法哲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한편으로 법의 역사적 발전과정, 사회적 기능 및 이념적 기초는 비교법의 주요한 연구방법을 이루고, 다른 한편으로 비교법의 연구 결과 판명된 법질서의 차이점은 다시 역사적·사회학적·철학적 관점에서 그 원인과 의미가 검토된다. 다시 말해, 비교법은 법사학·법사회학·법철학으로부터 방법론을 제공받고 또한 이들에게 연구 주제를 제공한다.

### (2) 비교법의 기능

비교법의 일차적 기능은 자국(自國) 실정법의 정확한 인식이다. 다른 법질서의 법규들과 비교함으로써 비로소 자국의 실정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국법의 장점과 문제점이 파악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된다. 또한 다른 나라의 법질서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자기

<sup>24</sup> Merriam Webster's Dictionary of Law, "The Study of the Differences, Similarities and Interrelationships of Different Systems of Law" (1996), p. 89.

나라의 실정법의 체계와 개념과 논리를 떠나야 하는데, 이로써 한편으로 실정법의 근저에 있는 법원리 내지 법이념을 발견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법규의 사회적 기능, 역사적 배경과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여건을 고찰하게 한다. 이것이 본 연구의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은 실무적으로 법원의 판례형성과 의회의 입법으로 연결된다.

### (3) 비교법의 방법론

비교법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은 기능적 방법론(functional method)이다. 즉, 법규의 개념·체계·논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규가 실제로 갖는 기능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는 20세기 전반 비교법의 大家이었던 Ernst Rabel (1874-1955)<sup>25</sup>에 의해 주창되어 그 제자인 Zweigert/Kötz에 의해 확립된 것으로서,<sup>26</sup> 서로 다른 법체계에서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능’뿐이라고 한다. 특정 법체계에서 고유한 개념이나 법형식은 완전히捨象되고 그 실제적 기능끼리 직접 비교됨으로써 그에 관한 사회적 여건, 법의 이념과 역사가 파악되어지고, 그리하여 개념법학 내지 법학의 형식주의가 극복된다. 이는 비교법이 20세기에 법학에 기여한 가장 큰 공적으로 평가된다.<sup>27</sup>

이러한 기능적 방법론은 ‘유사성의 추정’(praesumptio similitudinis)을 방법론적 전제로 삼아, 서로 다른 법질서 사이에 공통점이 확인될 때까지 기능적 추상화(functional abstraction)를 계속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론은 보편주의를 근거로 한다. 기능적 추상화는 성문법규의 영역을 넘어 불문법규에 의한 기능까지, 나아가 법규범의 영역을 넘어 도덕규범, 종교규범 등 다른 사회규범에 의한 기능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은

<sup>25</sup> Ernst Rabel, *The Conflict of Law: A Comparative Study*, 4 vols (Chicago, 1945).

<sup>26</sup> Zweigert/Kötz, *Einführung in die Rechtsvergleichung auf dem Gebiete des Privatrechts*, 3.Aufl. (Tübingen, 1996)(영어번역본: *Introduction to Comparative Law*. 3.ed., Oxford 1998), p. 31 이하 참조.

<sup>27</sup> Glendon, Gordon and Carozza, *Comparative Legal Traditions*. 2.ed., (1999), p. 9.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게 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교법은 공동 연구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 (4) 비교법의 유럽통합에 대한 기여

위와 같은 비교법의 기능적 방법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으로 이민한 독일의 유대계 학자 Rudolf Schlesinger, Max Rheinstein 등이 미국에서의 생존을 위해 미국의 커먼·로와 유럽대륙의 시민법의 공통점을 강조하고자 사용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sup>28</sup> 여하튼 기능적 방법론을 통해 그 개념적 차이를 넘어 커먼·로와 대륙법의 원리적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은 1973년 영국이 유럽공동체에 가입한 이후 유럽통합을 가속하게 된 주요한 법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판례는 1976년 유럽법원의 Millis 판결이다. 그에 의하면, 회원국 사이에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 여부를 개념적으로 비교해서는 아니 되고, 그 실제적인 문제, 즉, 재판관할의 특수성, 적용법리의 특수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sup>29</sup> 또한 유럽법원은 회원국들의 (헌법을 포함하여) 법규와 판례들을 비교하여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이유제시원칙 등을 ‘유럽법의 일반원리’로 정립하고 있다.

### 다. 유럽의 법문화

#### (1) 법문화의 개념

상술한 비교법의 기능적 방법론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법문화’(legal culture)이다. 즉, 기능적 방법론은 일방적으로 법질서 사이의 공

<sup>28</sup> 특히 Vivian Grosswald Curran, “Dealing in Difference: Comparative Law’s Potential for Broadening Legal Perspectives,”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46 (1998), pp. 657-668.

<sup>29</sup> Jürgen Schwarze, *Europäisches Verwaltungsrecht - Entstehung und Entwicklung im Rahm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Band I, (Baden-Baden 1988), p. 81 참조.

통점을 발견하기 위해 법의 ‘실제적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에 대하여, 법은 문화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sup>30</sup>

학자에 따라 법문화를 ‘이념’(ideology) 또는 ‘행태’(practice) 또는 ‘제도’(institution)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 첫 번째 입장은 법에 대한 법률가·일반인의 종합적인 의식 내지 태도가 법문화를 이룬다는 것이고, 두 번째 입장은 법률가와 일반인이 법질서의 구성원으로서 실제로 취하는 행동양식이 법문화의 본질이라고 한다. 전자의 주관적인 관점과 후자의 객관적 관점을 종합한 것이 세 번째의 ‘제도’로서의 법문화 개념으로서, 이것이 현재 유럽의 법문화를 파악하는 주류적 입장이다.<sup>31</sup>

## (2) 법문화의 비교방법론

‘법문화’가 주로 법질서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론적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지만, 특히 유럽통합 과정에서 법문화의 요소들을 분해하여 각각의 동일성과 차이점을 확인·비교하는 ‘비교법문화’(comparative legal cultures)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탈리아의 비교법 학자인 Rudolfo Sacco (1923-현재)가 음운론(音韻論)에 착안하여 개발한 법음소(法音素)(legal formant)이론이다.<sup>32</sup> 하나의 음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음소들이 합쳐지듯이, 일정한 법문화를 이루는 데에는 다수의 법음소 내지 법의 구성요소들이 합쳐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음소에는 제정법, 판례와 학설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권력분

<sup>30</sup> 유럽의 법문화에 관한 대표적인 문헌으로 Gessner, Hoeland and Varga (ed.), *European Legal Culture* (Aldershot, 1996) 참조.

<sup>31</sup> Roger Cotterrell, “The Concept of Legal Culture,” David Nelken (ed.), *Comparing Legal Cultures* (1997), pp. 13-31; Lawrence M. Friedman, *The Concept of Legal Culture: A Reply*, David Nelken (ed.), ebd., pp. 33-39 참조.

<sup>32</sup> Rodolfo Sacco, “Legal Formant: A Dynamic Approach to Comparative Law,”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39 (1991), pp.1-34, 343-402; 독일어판, *Einführung in die Rechtsvergleichung* (Baden-Baden 2001).

립의 형태, 소송의 절차와 구조, 법률가의 양성 및 사회적 위상 등 법적 여건들도 포함하고,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존엄성, 정의, 공공적 결정의 정당성에 관한 규범적·정치적·철학적 견해와 이데올로기 및 종교적 의식까지 포함된다. 또한 법적 추론 과정에서 표면에 드러나지 않으나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암묵적 유형’(cryptotype)의 범음소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범음소들을 추출하여 비교함으로써 그 동일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게 된다.

### (3) 법문화의 이식·수용

비교법문화론의 중요한 논쟁점의 하나는 법문화의 이식(transplant)가능성이다. 이는 종래 커먼·로와 대륙법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었고, 오늘날에는 과거 사회주의체제이었던 동유럽국가들이 대거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한편으로 법문화의 주요 행동주체는 법률가로서, 법제도에 대한 법률가의 인식을 바꾸게 되면 법문화도 다른 나라에 쉽게 이식될 수 있다는 극단적 긍정론부터 법문화는 문화적·사회적 맥락에 구속되어 있으므로 다른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나라에는 결코 동일한 법문화가 수용될 수 없다는 극단적 부정론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다.<sup>33</sup> 이 중 가장 설득력을 갖는 관점은 다양한 문화현상 중 ‘법문화’는 상당부분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영역이므로 그 합의 도출이 가능한 부분에 관해서는 비록 중장기적인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식·수용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sup>34</sup>

<sup>33</sup> Alan Watson, *Legal Transplants: an Approach to Comparative Law*, 2.ed. (London, 1993). David Nelken, Comparatists and transferability, in: Legrand/Munday (ed.), *Comparative Legal Studies: Traditions and Transitions* (2003), pp. 437-466; Vivian Grosswald Curran, “Cultural Immersion, Difference and Categories in U.S Comparative Law,”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46 (1998), pp. 44-92 참조.

<sup>34</sup> Nelken, Feest (ed.), *Adapting Legal Cultures* (London 2001); James Q. Whitman, “The Neo-Romantic turn,” Legrand, Munday (ed.), *Comparative Legal Studies: Traditions and Transitions* (2003), pp. 312-344 등 참조.

## 라. 유럽공동체에서의 법문화의 통합

### (1) 공법 영역

유럽공동체법의 제1차법(조약법) 및 제2차법(집행위원회제정법)은 대부분 실체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집행을 위한 절차는 각 회원국에게 맡겨져 있다. 각 회원국의 행정절차와 행정소송절차가 상이하므로 동일한 실체법이 회원국에 따라 집행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유럽법원은 일찍이 실효성원칙(effet d'utile)과 집행의 동일성원칙에 의거하여 모든 회원국들의 법질서를 비교하여 그 중에 유럽공동체법을 가장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유럽공동체 내에서 공통된 집행방법으로 요구하여 왔다.

원래 유럽에서 비교법과 비교법문화는 私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유럽공동체 내지 유럽연합의 발전과 더불어 공법 영역에서의 필요성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sup>35</sup> 이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상술한 바와 같이 유럽법원이 유럽공동체의 불문(不文)의 법원리들을 정립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의 헌법과 헌법적 가치들을 비교하는 것이었고, 둘째, 유럽연합의 기본권 장전(章典) 내지 헌법전(憲法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헌법 내지 헌법문화를 비교하는 것이었다.<sup>36</sup>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2004년 10월 29일 로마에서 ‘유럽연합의 헌법조약’(Constitutional Treaty for

<sup>35</sup> 이에 관한 대표적인 문헌으로 Christian Starck, *Rechtsvergleichung im öffentlichen Recht*, *JZ* (1997), pp. 1021-1030; Karl-Peter Sommermann, *Die Bedeutung der Rechtsvergleichung für die Fortentwicklung des Staats- und Verwaltungsrechts in Europa* (1999), pp. 1017-1029; Andrew Harding, “Comparative Public Law: A Neglected Discipline?” Ian Edge (ed.), *Comparative Law in Global Perspective* (2000), pp. 101-120; Edward J. Eberle, *Comparative Public Law: A Time That Has Arrived*, in: *Festschrift für Bernhard Großfeld*(Heidelberg 1999), pp. 175-188 참조.

<sup>36</sup> 헌법 영역에 관한 문헌으로 Christian Starck (Hg.), *Constitutionalism, Universalism and Democracy - A Comparative Analysis* (Baden-Baden, 1999); James T. McHugh, *Comparative Constitutional Traditions* (New York, 2002) Rainer Wahl, “Verfassungsvergleichung als Kulturvergleichung,” *Festschrift für Helmut Quaritsch* (Berlin, 2000), pp. 163-182 등 참조.

European Union)이 체결됨으로써 드디어 ‘유럽헌법’(European Convention)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셋째는 상술한 바와 같이 유럽공동체법의 집행에 관련된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종래에는 체계적 차이가 너무 커서 도저히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 영국·프랑스·독일의 행정법 제도들이 비교법의 기능적 방법론과 비교법문화의 법음소(法音素) 이론 등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sup>37</sup>

## (2) 사법 영역

사법 영역은 아직 유럽공동체법이 직접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지만, ‘긴밀한 협력’(closer co-operation)의 증진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유럽사법(私法)의 통일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기할 것은 Rudolf Schlesinger의 제안에 따라<sup>38</sup> 진행되고 있는 ‘유럽사법(私法)의 공통핵’(Common Core of European Private Law) 프로젝트이다.<sup>39</sup> 이는 Schlesinger가 주창한 비교법의 기능적 방법론과 집단적(팀워크적) 연구 방법을 취하고 있다. 즉, 일정한 주제에 관하여 수십 개의 사례들을 선정하고 각 회원국의 법규·판례·학설에서 그 사례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연구 수집하여 이를 쟁점별로 비교분석한 다음 그 공통원리를 추출하고 있

<sup>37</sup> 행정절차에 관한 문헌으로 Georgios Trantas, *Akteneinsicht und Geheimhaltung im Verwaltungsrecht: Eine vergleichende Untersuchung zum deutschen und französischen Verwaltungsverfahrensrecht* (Berlin, 1998); Till Müller-Ibold, *Die Begründungspflicht im europäischen Gemeinschaftsrecht und im deutschen Recht.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Frankfurt a.M. 1990) 등이 있고, 행정소송에 관한 대표적인 문헌으로 Claus Dieter Classen, *Die Europäisier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Eine vergleichende Untersuchung zum deutschen, französischen und europäischen Verwaltungsprozessrecht* (Tübingen, 1996) 등 참조.

<sup>38</sup> Schlesinger, “The Common Core of Legal Systems. An Emerging Subjects of Comparative Study,” Yntema/Sijthoff (ed.), *XXth Century Comparative and Conflict Law*(1961), pp. 65-79, jetzt abgedruckt Zweigert, Puttfarcken (hg.), *Rechtsvergleichung Darmstadt* (1978), pp. 249-269.

<sup>39</sup> 이에 관해 Bussani, Mattei (ed.), “The Common Core of European Private Law. Essays on the Project,”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참조.

다. 여기에 Rudolfo Sacco의 법음소 이론이 주요한 방법론을 이루고 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유럽계약법에서의 선의(善意 good faith), 합의의 강제집행가능성, 순수한 경제적 손실 및 엄격책임의 한계 등 4개의 주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결과가 매년 발표되고 있다.<sup>40</sup>

## 마.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대한 시사점

### (1) 일차적 목표로서의 ‘법문화’공동체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넓은 의미의 문화 전반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구축이지만, 유럽통합과정으로부터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은 우선 일차적으로 상호비교와 이식·수용·통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법문화’의 비교·통합에서부터 시작하는 방법이다. ‘법의 지배’ 원리와 법제도의 합리성에 관해서는 상당부분 인간이성의 보편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 기능적 법비교 - 법문화요소의 비교

종래 동북아국가에서의 법문화비교는 주로 법제도의 역사적·문화적 기반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제는 개별 법제도들을 대상으로 그 실제적 기능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방법론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모든 동북아 국가들이 - 발전의 정도에서 차이는 있지만 - 서양법을 계수하여 상당 기간 이를 시행하여 온 경험이 있으므로, 이제 그 실제적 기능을 비교함으로써 이를 둘러싸고 있는 법문화적 요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문화의 통합의 방법을 모색할 것이 요청된다.

---

<sup>40</sup> Zimmermann/Whittaker (ed.), *Good Faith in European Contract Law* (2000); James Gordley (ed.), *The Enforceability of Promises in European Contract Law* (2001); Bussani/Palmer (ed.), *Pure Economic Loss in Europe* (2002); Werro/Palmer (ed.), *The Boundaries of Strict Liability in European Tort Law* (2003).

### (3) 서양법에 대한 다원적 법비교

동북아국가에서 법문화의 비교·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서양법에의 종속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일·프랑스·영국·미국 등 특정 서양국가의 법제도와 법문화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럽통합과 세계화 과정에서 다원적인 비교법 방법론을 택하고 있는 것처럼, 동북아국가에서도 그동안 계수하여 시행되어 온 서양의 법제도들을 분석하여 각 원산지 국가의 영향요소들을 추출하여 비교하여야만, 동북아국가 상호간의 법문화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

### (4) 동북아 법문화의 종합적 비교작업과 법률가들의 교류

우리가 유럽 법문화의 통합으로부터 시사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법의 공통핵’의 발견과 ‘법문화의 제(諸)요소’의 비교분석이다. 다양한 국가들의 다방면의 법률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공동연구팀을 조직하여, 공동의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관한 사례들을 상정하여 그에 관한 자국의 법제도와 법문화를 보고하고 이를 비교평가 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이를 통하여 각국 법률가들의 교류와 상호이해도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 4. 공동체 법제의 미래

### 가. 개방의 법질서

우세한 외래 법문명의 틈바구니에서 전통 법문화를 복구하고 아시아의 고유정서에 적합한 법질서를 정립함은 가능하지만 지난하다. 이미 아시아 각국은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 세계질서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역사적 과제는 식민통치의 유산을 청산하고 남북분단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세계화 체제는 우리의 염원과 반대의

길을 강요할 수도 있다. 미국 사회학자 월러스타인이 ‘자유주의 이후’에서 광범위하게 분석한 신자유주의는 개방화·지방화·자율화를 표방하지만 은연중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강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 선진 공업국들은 자국의 물류를 확대하고 자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호한다. 환경주의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오래전에 사라졌던 패권주의의 그늘이 제3세계 시장을 엿보고 있다.

세계 정치질서와 경제질서는 법질서를 규정짓는 주요변수이다. 패권주의의 부활을 경계하고 신자유주의의 함정을 피하면서 자국의 여건에 알맞는 규범체계를 건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선진 법문명에 대한 환상과 믿음을 지양하여야 한다. 멋있었던 옷도 유행이 지나면 어색해 보이듯이 아무리 잘된 법도 시대가 지나면 낡아진다. 그러므로 법질서의 인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또 외래 법문명 자체도 여러 세대가 경과하면 토착 법문화에 편입된다. 근대법제 도입후 1세기를 거처온 아시아의 법경험은 이미 이러한 변용과정으로 접어들었다.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집단간 종교적 관용은 문화소통의 기초이다. 유럽인들은 오늘날 이슬람이 유럽연합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종교 집단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해 왔다.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종교적 경계선을 가로질러 문화적 소통을 쌓아가야 할 문제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그 접근의 문제가 결국 어떤 식으로 해결될 것이든 말이다. 어쩌면 이슬람과의 관계 문제보다는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닐지 모르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유럽연합이 동남부 유럽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유럽인들이 상이한 사회적, 경제적 윤리를 간직한 라틴 민족과 기독교 정교 간의 차이를 다시 발견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슬람과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단지 신학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정치문화의 진화에 관계된 문제이다. 공동체의 기치 아래 성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통일의 모습을 변형시켜 놓게 될 다양성의 새로운 요소들을 재발견하여 포용하여야 할 것이다.<sup>41</sup>

<sup>41</sup> 루드거 퀴하르트, “문화공동체 형성,” p. 67.

아시아의 법문화는 다른 권역의 국가들 못지않게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느님’이나 ‘신령님’으로 표상되는 토착신앙을 바탕으로 불교, 유교 그리고 기독교가 차례로 문화질서 속에 편입되었다. 다원적 종교전통은 법문화의 풍부함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전통의 현대화에 힘 쓴다면 21세기 아시아의 법문화는 행위규범의 이중성을 벗어나 독자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취할 것이다. 예컨대, 법과 도덕의 일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전통은 ‘신의성실’과 ‘사정변경’의 원칙으로 되살아날 것이다. 프라이버시 존중을 핵심으로 하였던 부부유별(夫婦有別) 등의 삼강오륜은 ‘햇빛에 드러나는 명분과 달빛에 물들이는 실리’ 간의 괴리를 극복하고 모호하였던 공적 생활관계와 사적 생활관계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할 것이다.

## 나. 실정법 질서의 동질화

동북아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공동체의 질서가 시스템화 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 법제와 개별 지침(directive)들에 기초한 유럽 각국의 국내법 체계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동북아 공동체는 그 형성과 교류를 위한 공동의 법제와 그 국내법화를 요건으로 한다. 물론 동북아 국가들의 법 시스템이 한결 같지 아니하여 공동체 법제의 도입에 여러 가지 난항이 예상된다. 아시아의 근대화 과정과 함께 시작된 동북아 국가들에서의 근대법제의 계수와 정착은 서로 다른 역사와 경로를 거쳐 발전하였기 때문에 법률용어와 개념등에 있어 공통의 기반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동북아 국가들 간의 정치·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질적 법제의 동질화가 필수적이다. 공동체의 관계를 규율하는 체계와 질서로서의 법은 공동체의 정신과 결속을 담보한다. 공동체의 영역이 넓을수록 그리고 통합을 지향할수록 법제의 동질화가 절실하다.

## 다. 독자적 법률문화의 존중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적” 접근은 공동체 형성의 단서에 해당한다. 정치적 지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국가들이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기 위하여서는 문화적 동질성 내지 연대성에 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적 접근은 각국의 전통과 언어·민속·예술 그리고 관습 등의 영역을 포함한다. 질서문화를 표상하는 법률문화는 보편을 지향하는 문명 체계인 실정 법제의 저변을 형성하면서 때로 실정법 질서를 수정보완 한다. 실정법의 제정과 해석만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살아있는 법질서”로서의 법률문화는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 경제적 시장질서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한다. 법전과 조문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의 법감정을 지배하는 각국 법률문화의 특수성과 역사성 및 차별성에 관한 체계적 이해와 원용은 공동체 형성과 운용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 라. 문화교류의 의의와 법적 지원

“문화”(文化)는 흔히 “문예”(文藝)와 동의어로 이해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간의 문화교류도 문학과 예술 그리고 스포츠의 교류가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인문학(人文學)에서 말하는 문화는 이러한 범주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보편성을 지니고 널리 통용되는 과학기술 문명과 정치·경제적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삶의 양식들은 모두 문화(culture)의 영역으로 포섭된다. 어느 한 국가나 집단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표상하는 과거와 현재의 삶과 사유를 기록하고 표현한 유물과 유적, 전통과 풍습, 조형물과 저작물 그리고 일체의 인식체계는 모두 그 국가나 집단의 고유한 문화에 해당한다. 문화교류는 인적·물적 교류의 양자를 포함한다. 한국과 몽골 간의 문화교류는 이렇게 광범위한 개념과 범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구조적 접근에서 문제되는 바는 이질적인 문화간의 갈등이다. 우리

주변에는 크게는 지역감정에서부터 작게는 부부싸움에 이르기까지 ‘문화갈등’ 현상이 곳곳에서 관찰된다. 모든 집단이나 개체의 문화는 그들만의 고유한 생존방식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사회에서 법질서의 동요와 혼란이 격심함은 이질적인 법문화간의 갈등에 기인하는 바 크다. 일부 국가를 제외한 아시아권 국가들의 법질서가 혼란을 거듭하는 듯이 보임은 외래의 법문명과 토착 법문화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충돌과정을 거쳐 법문명은 법문화로 전화되거나 포섭된다. 같은 국가내의 법문화 상호간에도 갈등이 발생한다. 문화 권역은 국가 영역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같은 권역에서도 계층간 위상에 따라 문화가 다르다.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축 이전에 법의 현상과 본질 즉 법률문화에 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5. 추진과제와 방법

아직은 막연하지만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서는 물질 기반으로서의 정치경제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정신적 기반으로서의 사회문화적 장벽의 제거와 교류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동북아 협력체계를 위한 법적 노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경주되어야 한다.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동북아 국가간 국제 실정법 시스템[국가연합 형태를 포함]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각국 법률문화의 역사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요청된다.

### 가. 현상진단

문화공동체 수립을 위하여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문화 2000” 프로그램은 동북아 문화공동체 프로그램의 개발에 참고가 된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문화 관련 프로그램인 “라파엘”(Raphael), “칼레이도스코프”(Kaleidoscope), “아리안”(Ariane) 프로그램 등을 계승·발전시켜 통합한

것으로서 문화적 대화 촉진, 역사적 지식 축적, 유럽문화의 창조 및 전파, 예술가들과 작품들의 교류 촉진, 유럽적 문화 유적의 발굴 및 보존, 새로운 문화적 표현방식의 창조, 그리고 문화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관한 연구들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와 더불어 예술가, 문화사업자, 문화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국적 협력을 모색한다.<sup>42</sup>

보다 정치적인 원칙들에 관한 성찰을 공동체의 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공정한 일일 것이다. 제국주의 및 종족 우월주의에 대한 거부, 전체주의 및 국수주의에 대한 거부, 모든 파트너 또는 이웃의 패권국가적 성향에 대한 경각심, 법치의 중요성, 인권의 존중, 자유 및 결속에 대한 존중, 초자연적 통합 및 전 세계의 다른 파트너들과의 다면적 고정에 대한 믿음 등과 같은 항목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칙들은 일부 동남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북부 코카서스 지역에서 지금까지도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유럽 전역의 “회고의 공동체”에 입각한 것들이다.<sup>43</sup>

어떤 의미에서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는 이미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44</sup> 예를 들면 첫째, 많은 대중을 향수자로 하는 영화·드라마·음악분야이다. 중국영화가 일본에서 널리 상영되고, 일본에서 유행하는 음악이 한국에서도 유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TV드라마가 일본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여 그 출연배우가 동경의 대상이 되는 현상은 근년 들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로 식(食)문화를 들 수 있다. 3국의 도시를 방문해보면 다른 두 나라의 요리를 제공하는 식당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나아가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중국의 요리 또는 그 영향을 받은 요리가 거리의 레스토랑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만들고, 이를 즐기게 된 것이다. “그들은 우리들이 먹지 않는 기묘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 편견의 전형

<sup>42</sup> 김명섭, “국가적 프로젝트로서의 국제적 문화공동체: 유럽적 경험의 함의를 중심으로,” 『평화와 변영의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연구』, pp. 182-183.

<sup>43</sup> 루드거 퀴하르트, “문화공동체 형성,” pp. 71-72.

<sup>44</sup> 와타나베 히로시,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가능성을 검진하다,” 『평화와 변영의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연구』, p. 29.

이다. 그러한 편견이 성립하는 기초가 현실적으로 붕괴된 것이다.

세 번째로 스포츠분야를 들 수 있다. 스포츠 즉, 공통의 규칙에 따라 신체와 두뇌를 이용하여 진지하게 경쟁하는 놀이의 대부분이 3국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3국은 국제대회에서 때때로 호적수가 되어 공통의 규칙을 확인해가며 서로를 의식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했던 월드컵은 서로가 대항약을 하여 커다란 성공을 거둔 대회로 아직도 새로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2008년에 개최되는 북경올림픽은 다시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에 어디 말을 표준어로 할 것인가가 문제되듯이 문화공동체에서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언어가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유럽연합은 공식적으로 모든 유럽인들이 자기 모국어 외에도 두 개의 외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선언한다.<sup>45</sup> 동북아 3개 국가(한·중·일)는 한자문화권으로서 문자로서는 한자를 공유하지만, 중국 간자체의 등장으로 한자의 기능이 퇴조하고 있다. 국제회의에서 이들 3개국은 각자의 역사적 경험 등으로 인하여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북아 권역의 국민들이 공용어를 정할 수 없는 처지라면 이웃 국가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문화공동체의 형성에 필수적이다. 일본과 중국은 이런 점에서 서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에 대한 장기대책이 절실하다.

이른바 “한류” 열풍은 이를 단순한 유행의 한 가지 현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다. 이를 계기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동북아 지역을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다각적인 문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대중문화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동아시아 역내 영화와 대중음악과 같은 문예콘텐츠의 공동개발 및 제작, 유통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국가간 문화산업의 교류와 협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주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sup>46</sup>

<sup>45</sup> 루드거 퀴하르트, “문화공동체 형성,” p. 72.

<sup>46</sup> 김명섭, “국가간 프로젝트로서의 국제적 문화공동체,” p. 191.

## 나. 실정법 질서의 정비

일본은 150년간의 근대화 경험을 기반으로 탈근대화를 지향한다. 중국은 사회주의적 전통을 포기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확대시키고 있다. 한국은 구한말 이래 서구의 근대법제를 계수하였지만 선진법제와 한국법제의 기반이 상이하였고 토착화를 위한 노력이 불충분하였다. 20세기 후반 산업여건의 변화와 문화의 변동 그리고 국제경제질서의 재편 등은 현대 아시아 국가들의 법제의 발전에 여러 가지 과제들을 던진다. 이른바 “법의 홍수” 속에서 법집행 전반에 관한 기초 데이터가 부족하고 법의 실효성이 여전히 문제된다.

동북아 국가들은 각자 자국의 준법질서를 정착시키고 법집행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법제정비 이전에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가능성의 모색도 가능하다. 동북아 문화공동체에 관련된 국가들이 이미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 즉, 유네스코와 같은 기존의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서로의 협력대역을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sup>47</sup>

아시아권의 블록화와 관련하여서는 장기적으로 동북아 국가들의 “연합” 가능성에 관한 성찰이 요구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중국의 뿌리 깊은 “중화사상” 그리고 일본의 “패권주의” 내지 아시아 침략 경험은 동북아 국가들의 연대 또는 연합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동북아 전략은 중심주의 내지 패권주의라는 이미지를 풍기지 않으면서 호혜와 동반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동북아 국가간의 교류와 협력의 시스템화는 법제화를 의미한다. 동북아 협력체계의 법제화는 그 협력관계의 친소·광협 여하를 떠나 각국 법제간의 공통의 접점[同質性]을 통하여 추진될 수 있다.

### □ 장기적 연구방향

#### ○ 연구범위

---

<sup>47</sup> 위의 글, p. 189.

- 구한말 서구법제의 수용과 근대법질서
-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근대 법제의 개혁
- 일본의 근대화 모델이 아시아 법제에 미친 영향
- 중국의 전통법제와 근대법제의 관계
- 아시아의 식민지배와 근대법제
- 미군정 질서와 아시아의 현대법제
- 아시아에서 서구 법문명의 계수 및 정착
- 아시아 토착 관습법의 법원과 기능

○ 연구방법

- 선행 기초자료의 분석 및 참고문헌의 연구(법사학적 방법론)
- 법집행 비용의 적정화 방안강구(법정책학적 방법)
- 성문법 및 불문법의 법원 고찰 및 기능 분석(법사회학적 방법)
- 현지조사·관계자면담·참여관찰(법인류학적 방법)
- 법의 실효성과 국가 자원관리의 상관관계(BC) 분석(법경제학적 방법)
- 유럽연합(EU) 법제의 배경 및 구조의 연구(비교법학적 연구)

□ 정책과제

- 국가간 교류협력틀의 확대
  - 평화협력 체계의 모색
  - 관세 및 무역 장벽의 완화
  - 출입국 절차의 개선
  - 공통의 지불·결제 수단의 강구
- 민간 교류협력의 활성화
  - 최혜국민대우
  - 기술이전·정보교류
  - 노동력교환
  - 관광의 연계·협력

- 재외동포의 법적지위 개선
  - 재중국 조선족의 처우
  -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
  - 재외 영주권자의 자유와 권리

## 다. 동북아 법률문화의 이해와 활용

동북아 법질서의 문명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 대한 병행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서구식 일방적 근대화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문명충돌과 문화갈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 근대 문명으로서의 서구 법제도가 아시아의 법질서와 전통 법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탐구하고 서구화 과정에서 지배세력들이 아시아 관습법을 어떻게 이용하고 조처하였는가를 살피는 한편 경제발전과 문화변동 이후 아시아 관습법 내지 법률문화가 서구식 실정법과 어떠한 연관관계를 형성하면서 재생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야 한다.

한편 동북아 법률문화 내지 아시아 법률문화에 대한 이해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요소는 공산주의 혁명의 경험이다. 한국조차도, 1948년의 제헌헌법과 그 이후의 근대식 법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리들을 계승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은 한국 및 일본의 자본주의적 법제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 왔다. 아시아권에서 20세기 후반 “공산주의” 이념의 쇠퇴와 법제의 급격한 변천은 동북아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한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항쟁 그리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및 사회적 법치국가질서에 대한 객관적 성찰 없이는 동북아 법률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곤란하고 이러한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는 공동체의 형성 또한 지체될 것이다.

- 장기적 연구방향
  - 연구범위

- 관습법 조사 및 연구의 현황 파악
- 전통지식의 가치와 관습법의 활용방안
- 성문법과 관습법의 교차 현상
- 법률문화의 미래와 관습법의 위상
- 낭만적 복고주의와 전통법제의 현대적 변용의 차별화
- 한국 선비정신이 전통 법률문화에 미친 영향의 분석
- 아시아 공산주의 혁명의 성쇠에 따른 법률문화의 변천
- 사전분석
  - 일제시대의 법인류학적 조사자료 : 조선·중국·몽골
  - 한국법제연구원 조사자료 : 한국의 관습법·법의식
  -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조사자료 : 동남아시아
  - 중국 정부연구기관 조사자료 : 중국·인접국가·조선족
  - 각국의 대학 및 연구소 조사자료 : 일본·인도네시아
- 조사연구방법
  - 문헌조사 : 법사(法史)자료의 수집·분석
  - 개괄조사 : 국가 단위 총괄적 접근
  - 표본조사 : 아시아권 조선족 집단
  - 국제협력 : 현지 전문가 활용
  - 종합분석 : 현지조사지양·기존연구종합
- 국제협력
  - 중국 북경사회과학연구소·연변대학·상해사회과학연구소
  - 일본 입교대학·애지현대학 등
  - 몽골 자연환경연구소시움
  -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대학 아시아연구소
- 정책과제
  - 문화적 동질성의 확보와 다양성의 존중
    - 각국 법제상 유교문화의 발전

- 서구 외래법제의 수용과 변용
- 토착 관습법의 현상과 기능
- 국내 법집행의 기반 및 실태의 이해
  - 국가별 사회구성체에 대한 연구
  - 국민 법의식 및 법감정의 조사·분석
  - 각국 법집행의 구조와 실태

## 라. 연차별 시범사업 계획

법제화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교류·협력은 일관성 내지 지속 가능성이 결여되기 쉽기 때문에 한국법제연구원을 중심으로 2년 정도의 시범 연구사업을 거쳐 실정법질서와 법률문화적 접근을 통한 동북아 교류·협력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향후 법제분야에서의 장기적인 접근방안을 추진하고 구체적 정책과제들을 이행할 수 있는 종합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사법 부문의 공조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다. 물론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형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책형성에는 시민참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의 시민사회가 동북아시민포럼을 창립하고 그 선언문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며 동북아 전체의 『평화공동체』를 구축하는 일, 글로벌 경제가 가져오는 기회와 위험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동북아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일, 그리고 침략과 저항, 반목과 오해의 역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 일은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필수 요건”임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은 물론 평화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구상이 문화공동체 구상과 연결되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다.<sup>48</sup>

흔히 오해하듯이, “문화공동체를 형성한다”고 하여 단순히 옛날 전통으

<sup>48</sup> 전영평, “동북아문화공동체와 한국의 역할,” p. 99.

로 되돌아가자는 논리를 펼 수는 없다. 구미 모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동북아 권역에서 발생하는 공통의 문제를 솔직하게 의논해 가며 새로운 공통성을 만들어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온난화·사막화·오염 등의 환경문제나 인구문제, 자원문제만이 아니다. 철학적·사상적 공통문제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기독교의 전통이 없는 지역에서는 서양화한 비서양 세계에서 생기는 일의 의미에 대하여 철학적 성찰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민주정(民主政)이나 자유나 인권에 대하여 동북아시아의 경험으로부터 보다 깊이 있는 고찰을 이룩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지향하는 사회상에 대하여 대화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한 매체로 영어가 채택될 수도 있으나 동북아시아 사람들이 상호간에 서로의 언어를 배워, 지역내의 커뮤니케이션을 다원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sup>49</sup>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을 현실 세계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이 국가적 의제로 선정되어야 한다. 즉 참여 정부의 동북아시대위원회가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을 국가적 사업으로 선택하고 이를 경제적 사안과 동등한 위상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은 자국의 중심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자기 국가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는 공동체 사상이기 때문에 한, 중, 일 3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조속히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문화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 학자, 기업인, 언론인, 시민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민간 차원에서의 창의적 아이디어 수렴과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정부의 역할을 동북아문화공동체 실천을 위한 정책적 기획, 재원 마련, 제도의 형성이 될 것이다. 또한 민간의 문화 교류와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동북아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동북아 문화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정부 차원의 동북아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전략적 추진체계를 작성하고 전

<sup>49</sup> 와타나베 히로시,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가능성을 검진한다,” p. 34.

략적 과제 도출의 기준 혹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정부 부서별 문화공동체 관련 국가의제를 발굴하고, 문화 관련 정책의 분야별 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sup>50</sup>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 계획은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 계획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제와 밀접하고도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현재 경제사회연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중심국가건설을 위한 세부 정책 분야는 1)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 2) 동북아 항만 허브화 전략, 3) 동북아 금융중심지화 전략, 4) 동북아 에너지협력 전략, 5) 동북아 정보통신허브화 전략, 6) 동북아 교통망 구축 전략, 7) 동북아 자유무역허브화 전략, 8) 동북아 산업협력 전략, 9) 동북아 산업협력 전략, 10) 동북아 농업협력 전략, 11) 동북아 지역협력 전략, 12) 동북아 노동협력 전략, 13) 동북아 R&D 허브구축 방안, 14)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 15)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전략 등이 있다.<sup>51</sup>

#### □ 상호이해 교육프로그램의 강화와 공동의 교육기관 설립

유럽연합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추이는 문화에 대한 간접적 이해 및 그에 관한 영역 교육의 추이이다. 과거에는 교육에 대한 유럽연합의 관여라는 생각조차 금기시되었다.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은 교육의 구조 및 내용에 관한 자치를 각 국가 권리의 성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세계화를 위한 전략을 공동여 준비하고 있던 2000년 국가 수반들의 리스본 유럽사회 회의에서, 유럽연합은 역시 교육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있었다. 교육의 구조 및 질의 개선은 유럽사회와 경제를 세계화의 도전과 기회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되었다.<sup>52</sup>

유럽연합은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목표 추구의 새로운 구조로서 “열린 조정” 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개별 회원국들이 엄정히

<sup>50</sup> 전영평, “동북아문화공동체와 한국의 역할,” pp. 106-107.

<sup>51</sup> 위의 글, p. 108.

<sup>52</sup> 루드거 쿨하르트, “문화공동체 형성,” p. 66.

부과되는 규정들보다 지배의 터치가 훨씬 부드러운 유럽연합의 목표들을 준수하기를 꺼리는 자세를 막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열린 조정”에 입각하여 교육 분야에서의 표준을 세워왔다. 유럽위원회의 관련 위원장[유럽연합의 교육문화 장관에 해당]은 그 때 이래 관심의 초점이 되어왔다. 전체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교육의 질에 대한 비교가 시작되었다. 이로 인하여 교육 개혁이 확산되어 갈 것이며 세계화 시대에 유럽연합의 교육 구조의 경쟁력을 점차 더욱 강화해 주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문화 소통의 통일이라는 개념을 강화해 주게 될 것이다.<sup>53</sup>

동북아지역과 관련한 국제이해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동북아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속의 동북아’, ‘일본의 이해’, ‘중국의 이해’, ‘동남아 화교공동체에 대한 이해’, ‘러시아 카레이스키에 대한 이해’, ‘국내 외국인들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교과목을 개발하여 미래 세대에게 동북아의 지표와 현황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동북아 장학재단의 설립을 주도하여 한국 중심의 동북아 교육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sup>54</sup>

#### □ 동북아 고등학술원

각국의 원로저명학자들이 휴양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동북아고등학술원을 설립하여, 동북아의 문화적 표준을 공동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선이 후난(先易後難)의 방침에 입각하여 이 학술원에서는 우선적으로 학문분야 별로 한자권 국가들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될 신생 서구어의 한자번역어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sup>55</sup>

#### □ 해외동포의 활용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해외동포를 활용하여 보다

<sup>53</sup> 위의 글, p. 67

<sup>54</sup> 김명섭, “국가간 프로젝트로서의 국제적 문화공동체,” p. 189.

<sup>55</sup> 위의 글, p. 190

다각적인 문화 교류와 확산을 유도할 수 있으며, 한국이 중심이 된 문화적 동질성과 지역적 정체성을 유도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유럽연합의 성공적인 추진과정에서 많은 유테인들이 기여하였던 모습과도 유사하다.<sup>56</sup>

#### □ 동북아 공동의 문화사업 확대

동북아 문화재단과 같이 동북아 국가들의 각종 문화사업을 지원하는 재단의 설립을 주도한다면,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한국이 교량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동북아 국가들간 혹은 동북아 지역외로 반출되어 있는 문화재들에 대한 공동관심을 반영하는 이탈 문화재 관련 DB사업과 더불어 상호 문화재에 대한 공동연구를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 국가와 시민사회, 시민단체와 전문가집단 등을 중심으로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의 사회·문화적 교류를 확충함은 물론 한국의 장점을 살려 보다 광역적인 문화교류와 연대사업에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적 접근방법을 강화함에 있어서 한국이 지닐 수 있는 또 다른 강점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포스트모던적 패러다임을 건설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윈-윈(Win-Win)의 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sup>57</sup>

#### □ 종 교

최초의 유럽 헌법의 초안 작성의 맥락에서, 헌법위원회와 유럽의 여러 대중 미디어들은 유럽의 정치적 장래에 종교가 지녀야 할 의미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것은 유럽에서 이 주제에 관하여 과거 오랜 기간 다루어진 것 가운데 가장 진지한 토의였으며, 유럽에서 전반적으로 세속화의 추이가 얼마나 강하게 진행되었는가에 상관없이, 냉소주의가 배제된 그리고 여러 유럽인들의 삶에 있어서 종교가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엿보인 토의였다. 결국, 유럽헌법은 오늘날의 유럽에서의 종교적 신

---

<sup>56</sup> 위의 글, p. 190.

<sup>57</sup> 위의 글, p. 192

조의 다양성과 신앙의 표현에 관한 강하면서도 통합적인 요소를 지닌 언급을 하지 않았다.<sup>58</sup>

#### □ TV · 스포츠

각국의 언어로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 사이에서 시청이 가능한 EURO NEWS TV 채널에 관한 경험을 음미해보는 것도 유용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 TV 프로그램의 시청자들은 가장 중요한 정치, 경제, 문화적 사건들에 관한 유럽연합식 개관에 접하게 된다. 또한 물론 유럽에서 문화 소통 강화의 수단으로서 가장 앞장을 서 온 스포츠에 관해서도 접하게 된다.<sup>59</sup>

#### □ 공동의 역사교과서

동북아 공동의 역사교과서는 매우 흥미있는 시도이다. 유럽 전역의 역사가들 및 지식인들은 유럽의 복잡다단한 역사를 각 국가의 역사 간에 항구적으로 지속되어 온 상호관계로 설명하려는 흥미로운, 아니 인상적이라고 까지 느껴지는 교과서들을 개발해왔다. 이들은 유럽 문명에서 공통성이 유대관계를 잇게 한 끈끈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유럽의 다양성, 그리고 국가 간의 적대적 관계 그리고 알력 관계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sup>60</sup>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제안들은 최근 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국제회의(2004.10)에서 각국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것들이다. 이러한 제안과 관련된 경험들을 기초로 그리고 연구서설에서 밝힌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범주를 전제로 하여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기반의 정비를 위한 “연차별 시범사업계획(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sup>58</sup> 루드거 퀴하르트, “문화공동체 형성,” p. 67.

<sup>59</sup> 위의 글, p. 68.

<sup>60</sup> 위의 글, pp. 68-69.

□ 제1차년도 사업계획(안)

○ 사업목표 : 동북아 협력의 제도적 기반구축

동북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적 단계로서 각국 법제의 동질적 요소와 이질적 요소들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공동의 모범 협약이나 계약을 마련하여 동북아 교류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구축

○ 사업내용

- 경제와 사회 분야의 법의식·관행 및 관습의 공동조사
  - 동화적 법제 형성의 기초로서 각국의 법 현실에 대한 실태의 파악
  - 각국 법의식·관행 및 관습상 공통분모와 특수요소들을 분석
  - 시장경제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민사·상사 분야부터 조사
- 민간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모범협약·계약의 마련
  - 역내 투자·무역·경제협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초 확보
  - 투자·무역·경제협력 등의 규범·서식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
  - 경제교류에 기여할 모델 협약 내지 계약(Model Code)의 정형화

○ 추진방법

- 조사연구의 범위·항목·실효성·방법 등을 기획·분석
- 협력국 (또는 기관 등)에 국가간 공동 조사·연구 시스템을 제안
- 해당분야에 관한 각국의 조사·연구의 현황 및 사례 등을 수집·발표

□ 제2차년도 사업계획(안)

○ 사업목표 : 법제분야의 인적 자원의 양성 및 교류

동북아 교류협력은 제도적 기틀을 다지고 이를 운용할 인적자원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국내 인적자원을 먼저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간 인적자원의 상호교류를 추진하여 제도정비 및 운

## 용의 근간으로 활용

### ○ 사업내용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국제교류 체계의 구축 및 활용
  - 학술진흥재단·공무원연수등 기존의 교류제도는 일방적 교류의 한계를 노정
  - 국가적 차원의 쌍방교류 제도의 구축을 통하여 지속적인 인적 교류를 활성화
  - 대학 또는 연구기관간의 협약을 통한 교류·협력·지원 체계의 정착 및 확대
- 관련 전문가의 양성 및 지원제도의 확대
  - 인력양성 국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중국]의 인적자원을 유치
  - 법제 분야에서 국제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적 지원제도를 모색
  - 공동학점·교환학생·교환교수·교환연구원 제도의 정립

### ○ 추진방법

- 법제분야에서의 국제협력에 필요한 인력수요의 파악 및 전망
- 연구 및 교류 협력 후보기관의 선정과 교섭 및 기본협정 등의 체결
- 장기계획에 의한 해외 인적자원의 수용과 국내 인적자원의 발굴 및 지원



# II

## 유럽 문화공동체의 형성과 그 법적 기초



## 1. 유럽에 있어서 문화공동체의 의의

### 가. 유럽 문화공동체 형성과정의 특징

유럽연합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장 모네(Jean Monnet)는 “만일 유럽이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문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Si l'Europe était à refaire, il faudrait commencer par la culture)”라고 말한 바 있다.<sup>61</sup>

오늘날 유럽연합은 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형성·발전된 것이며, 문화공동체라는 용어는 상대적으로 잘 사용되지 아니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유럽문화는 유럽경제공동체 형성 이전부터 존재했었으며, 유럽에서 문화공동체는 민족국가보다 더 오래된 개념이기도 하다. 오히려 민족국가에 의해 한정된 폐쇄적인 민족(국가) 문화(nationale Kultur)라는 말이 생겨난 것은 민족국가형성 이후이며 유럽역사상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 이후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강조된 것은 경제통합이다. 유럽연합이 하나의 국가건설을 지향하고, 그 통합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중심이 경제공동체에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럽통일의 기초로서 문화는 유럽공동체조약이나 정책에서 부수적으로 취급될 뿐이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발효 이전까지 유럽연합은 문화에 대하여 명시적인 어떠한 법적 기초도 가직 있지 않았다. 유럽경제공동체 조약의 일부규율이 문화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논의될 뿐이었다.

그러나 유럽공동체운동의 초기에서부터 공동체형성은 경제 및 정치 영역에서만 진행되어서는 아니 되며, 문화적 영역에서도 통합 내지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고, 또한 꾸준히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즉 유럽연합은

<sup>61</sup> Behrens, *Kultur in der Europäischen Union*, 1999, p. 1에서 재인용.

경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한 발전’을 지향했다는 것이다. 경제적 재건 못지않게 문화적 협력이 유럽 국가들에 의해 추구되었으며, 문화적 협력의 추구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현실화되었다.

유럽통합의 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유럽통합은 점차 문화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sup>62</sup> 유럽연합이 경제공동체 내지 통화공동체를 넘어서 정치적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발생했던 유럽의 위기는 결국 유럽시민들 의식 속에 문화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럽의 문화정책을 통해서 비로소 유럽의 공동성장에 대한 전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식이 유럽문화의 기초 위에 발전하게 될 때, 유럽사회의 수용성이 증대될 것이다.<sup>63</sup> 유럽연합이 명시적으로 문화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유럽통합에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유럽연합은 유럽시민을 통합과정에 끌어들이고 문화적 근원을 포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늘날 문화는 정치의 가장 강력한 형태 또는 통합된 유럽으로 가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힘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sup>64</sup>

유럽통합과정에서 문화통합이 경제통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면에 등장할 수 없었던 것은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본질 때문이었다. 문화영역은 경제정책의 경우에 비하여 개별국가 내지 지방, 지역의 관할권이 강하게 인정되었다. 따라서 경제는 통합의 대상이지만, 문화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각국의 문화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유럽의 문화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지향하고 있다. 여기서 유럽문화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초기에는 문화적 다양성, 내부적 수용태세 확립 등을 위한 교육 및 청소년 교류의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sup>62</sup> Ipsen, *GS für Geck*, pp. 339-340.

<sup>63</sup> Häberle, *Europäische Rechtskultur*, 1994, p. 72.

<sup>64</sup> Oppermann, “Die deutsche Länderkulturhoheit und EG-Aktivitäten in Bildung, Forschung und technologischer Entwicklung,” in Vogel/Oettinger (Hg.), *Föderalismus in der Bewährung*, 1992, pp. 73-75.

신뢰관계의 형성은 상호 커뮤니케이션, 상호소통의 전제 위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와 문화의 구분이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문화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류에 있어서 당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제재화로 볼 것인가 아니면 문화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경쟁법의 적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영화산업이었다.

따라서 유럽문화공동체 형성의 두 축은 교육과 영화부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문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유럽문화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었다면, 영화는 개별부문 가운데 통합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한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이들 두 영역이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유럽문화공동체 형성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좀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유럽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회원국 및 지역의 문화주권을 인정하면서, 회원국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럽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문화주권을 인정하면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조성하는 시스템의 구축과정 및 그 법적 기초를 검토하고, 사례연구로서 교육부문과 영화부문에서의 유럽통합과정을 문화공동체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유럽 연합이 동북아 문화교류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동북아지역 국가간 과거 역사에 대한 정서적 화해가 필요하고, 문화의 유산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보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동북아에서 정치, 문화적인 지배력을 발휘해 온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인식의 공유와 실천의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비전은 동북아의 평화적 공존과 번영이다.

## 나. 법개념으로서 “문화”

문화영역의 법적 기초를 규명함에 있어서 우선 문화의 개념이 정의되어야 한다. 문화라는 개념이 일반적 언어관용상 매우 상이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는 사회공동체 역사에 있어서 언제나 모든 생활 형식 및 인식형식의 구조로서 개인과 사회 사이의 관계가 적절하게 조절되도록 해준다.

문화라는 개념에 접근하는 다양한 착안점들이 존재한다. 의미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화철학적 내지 문화사회학적 설명은 이 글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 유럽법 차원이든 개별 회원국가법의 차원이든 법적 용역영역에서는 문화 또는 문화정책이라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sup>65</sup> 개별영역에 따라 핵심영역이 설명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문화의 개념요소들을 제공해줄 뿐이며, 엄격한 의미에서 법적 개념정의를 가능하게 해주지는 않는다.<sup>66</sup>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정책은 흔히 회색지대라고 일컬어진다. 문화영역에 있어서는 유럽연합과 개별 회원국의 관할권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으며, 따라서 권한의 중첩이 야기된다.<sup>67</sup>

유럽공동체조약으로부터는 문화의 개념정의를 도출할 수 없다. 유럽연합조약의 발효 이전까지 유럽공동체조약에서는 제36조(현 유럽공동체조약 제30조)에서 예외적으로 문화라는 개념을 한번 사용했을 뿐, 어디에서도 문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sup>68</sup>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삽입된 유럽공동체조약 제128조(현 유럽공동체조약 제151조)에서 처음으로 문화라

<sup>65</sup> Fiedler, “Impulse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im kulturellen Bereich,” in Magiera (Hg.), *Das Europa der Bürger in einer Gemeinschaft ohne Binnengrenzen*, 1990, pp. 147–153; Ress, *Kultur und Europäischer Binnenmarkt*, 1991, p. 25.

<sup>66</sup> Kersten, *Kultur-Kulturbegriff-Kulturdenkmalbegriff*, 1993, p. 138.

<sup>67</sup> Stauffenberg/Langenfeld, “Maastricht - ein Fortschritt für Europa?,” *ZRP* 1992, pp. 252–254.

<sup>68</sup>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다.

는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문화의 개념을 정의하지는 않았다. 이 규정은 문화다양성을 유지하고 문화발전을 위한 유럽공동체의 임무를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이를 위한 개개 영역을 열거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문화의 개념을 설명한다기보다는 문화개념을 이미 전제된 것으로 하여 대표적인 영역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규정은 유럽연합이 문화영역에서 어디까지 활동할 수 있는지 그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으며 문화와 관련하여 어떤 생활영역이 유럽연합의 관할에 속하는지도 규율하고 있다. 즉 위 규정은 유럽연합의 구체적인 활동영역을 명시함으로써 실용주의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유럽연합 차원에서 문화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포기되어 왔다. 1977년 집행위원회가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sup>69</sup> 위원회는 “문화영역”을 “사람과 기업이 결합된 사회경제적 구조로서, 문화적 재화 및 문화적 급부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문화적 재화”와 “문화적 급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 하고 있다. 유럽법상 광의의 문화개념은 회피되고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회원국의 반발을 유발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래에 변화가능성을 고려해서 모든 것을 미확정상태로 두기 위한 것이다.<sup>70</sup>

유럽법원(der Europäische Gerichtshof)은 조약상의 행위권한에 관한 판례를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문화영역에 적용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문화개념의 해명과 관련하여 어떤 지침을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문화영역을 개별 영역으로 분리하는 시도도 대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뿐 내용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71</sup> 그러나 이것이 개념 앞에 항복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문화적 움직임에

<sup>69</sup> “Die Aktion der Union im kulturellen Bereich,” Mitteilung der Kommission an den Rat v. 22. 11. 1977, *Bulleti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Beilage 6/77.

<sup>70</sup> Ress, *Kultur und Europäischer Binnenmarkt*, 1991, p. 26.

<sup>71</sup> Ress, *Kultur und Europäischer Binnenmarkt*, 1991, p. 26.

부응할 수 있는 개방성과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방성은 개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의식적인 자유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sup>72</sup>

요컨대 문화란 유럽연합법상 불확정법 개념의 하나이며,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해명되지 않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sup>73</sup> 앞으로 유럽공동체조약 151조(구 유럽공동체조약 제128조)의 적용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유럽법상 문화의 개념이 구체화될 것이다.<sup>74</sup>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유럽통합이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주는 시사점은 문화공동체형성을 위한 노력이 초기부터 적극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럽통합이 석탄철강공동체로 출발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른 유럽에서 당시 군수물자로서 가장 중요했던 석탄과 철강을 공동관리 하는데서 통합의 단초를 연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경우에는 문화통합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도 문화라는 개념을 당장 정의하고 시작하기보다는 문화의 개념 자체는 개방된 열린 개념으로 파악하고,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동북아의 통합을 가로막는 개별 문제영역, 예컨대 역사문제에 대한 연구와 교육 등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sup>72</sup> Behrens, *Kultur in der Europäischen Union*, 1999, pp. 9-10.

<sup>73</sup> Hochbaum, *BayVBl.* 1997, pp. 641-642.

<sup>74</sup> Behrens, *Kultur in der Europäischen Union*, 1999, p. 11.

## 2. 유럽의 문화공동체 형성사 개관

유럽공동체의 문화공동체 형성정책은 오늘날 유럽공동체법에 직접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특히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유럽 공동체의 활동이 모든 회원국들의 문화를 꽃 피우는 데 기여한다’고 규정한 것은 유럽공동체가 문화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공동체는 1992년 마스트리히트 이전까지는 문화에 관한 관할권이 없었고, 사실상의 활동을 통해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졌다.

1969년 이래로 많은 정상간 회담과 공동체 회합에서 공동체 차원의 문화분야 지원 필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1969년의 헤이그 정상회담, 1979년의 코펜하겐 이사회, 그리고 1972년 파리 이사회 등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이 적극 거론된 바 있다.

1983년에 이르러서야 슈트라스부르크 유럽이사회는 문화발전을 담은 선언을 채택하고, 공동체 회원국간 문화적 협력을 논의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단일유럽의정서를 통해 1992년 단일시장의 출범과 함께 문화 분야도 국경 없는 자유로운 개방을 취하게 된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각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수행되면서 ‘유럽문화’라는 유럽 공동의 문화가 생산되었다. 만화경사업(예술 총 지원), 아리안 사업(번역), 레오나르도 다빈치 사업(직업연수), 소크라테스 사업(교육교류) 등이 그것이다. 2000년 이후에는 ‘문화 2000 프로그램’이라는 종합적인 사업 프로그램이 입안되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체결은 공동체 차원의 문화정책을 취하는 중요한 계기로, 조약에서 명기한 “유럽시민간 보다 밀접한 관계” 라는 명문화된 목적과 함께 문화 분야의 독특한 정체성과 중요성이 새로이 인지된다.

### 3. 유럽연합 문화관할의 법적 근거

#### 가.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 이전

설립조약들에서 문화를 규율대상영역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유럽경제공동체는 문화영역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과 정도로 고려하고 있었다. 유럽경제공동체는 유럽법에 영향을 미치는 한도에서는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다양한 수단들을 사용하여 문화영역을 함께 고려하였다.

##### (1) 유럽공동체조약상 문화에 대한 명시적 관할권의 부존재

세 개의 공동체설립조약들은 일차적으로 경제를 규율대상으로 하였다. 유럽경제공동체라는 명칭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나 유럽원자력공동체도 결국 일정한 경제활동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이들 조약에서 문화는 독자적인 가치나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바로 문화야말로 모든 경제사회적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당시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 적용범위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경제영역에서의 통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 두 조문은 목적조항으로서 유럽경제공동체의 기관들에게 구속력있는 규범이며 행위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유럽경제공동체의 활동은 유럽공동체 기관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었다. 유럽경제공동체의 관할권도, 오늘날의 유럽연합의 관할권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제한된 권능(compétence d’attribution)’의 원칙에 의해 지배되었다. 국가의 권능이 포괄적인 것과는 달리 유럽연합의 권능은 제한된 행위형식에 구속되어 있으며, 이러한 열거주의원칙(Enumerationsprinzip)으로 인해 유럽연합의 기관은 입법적 행정적으로 포괄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sup>75</sup>

유럽공동체조약상 개별수권규정들은 동조약 제1조에 따라 경제공동체라는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하였다.<sup>75</sup> 이러한 한계로 인해 문화영역은 구 유럽공동체조약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이르러 비로소 유럽공동체조약 제3조 제p호에서 유럽연합의 활동이 회원국에 있어서 문화생활의 전개를 포괄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한편 구유럽경제공동체조약에서는 문화영역에 대하여 아무런 예외적 규율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즉 문화는 위 조약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묵시적으로 문화관련규정을 두었다고 해석할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체계적인 이유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되었다.

## (2)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전 유럽의 문화관련 활동 및 정책

유럽공동체법상 제1차법, 즉 설립조약들에서 문화영역을 규율하기에 앞서서 다른 국제기구들에서 문화 내지 문화정책과 관련된 법적 또는 정책적 문건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다만 이들 문건에서 문화라는 개념을 언제나 사용한 것은 아니다. 1949. 5. 5. 유럽이사회(Europarat) 정관에서는 문화적 측면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1950. 11. 4. 유럽인권협약(EMRK) 전문과 1961. 10. 18. 유럽사회헌장(ESC)의 전문에는 유럽문화에 관한 법적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1954. 12. 19. 유럽이사회 유럽문화협약에서는 이미 “유럽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활동”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종래 유럽공동체가 본래 가지고 있던 문화와 관련한 정책목표는 1961년 독일 본에서 열렸던 정상회담의 폐막선언에서 잘 나타난다. “6개국의 공동 협력은 본래적 의미의 정치적 틀을 넘어서야 한다. 공동협력은 특히 교육, 문화 그리고 연구의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이들 영역에서의 협력을

<sup>75</sup> Niedobitek, *Kultur und Europäisches Gemeinschaftsrecht*, 1992, pp. 190-192.

<sup>76</sup> Bleckmann, “Chancen und Gefahren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JZ* 1990, pp. 301-303, 305.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장관들의 정기적인 회합이 이루어질 것이다.”<sup>77</sup>

1974년 유럽의회는 처음으로 유럽경제공동체가 유럽문화의 진흥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유럽의회는 이때부터 문화사무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적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점차 증대시켰으며 문화진흥을 위한 새로운 제안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게 되었다.

유럽법상 문화영역의 발전은 몇 개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제1단계는 1977년부터 1982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1977년 11월 22일 위원회(집행위원회)가 “문화영역에서 유럽공동체의 활동(Die Aktion der Gemeinschaft im kulturellen Bereich)”에 대한 기본입장표명을 한 사건을 제1단계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양한 문화적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법적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제2단계는 1982년부터 1986년 사이의 기간을 말한다. 1982. 10. 12. 위원회는 이사회와 유럽의회에 대하여 “문화영역에서 유럽공동체활동의 강화(Verstärkung der Gemeinschaftsaktion im Bereich Kultur)”라는 제하의 의견표명을 하게 되는데, 이를 시점으로 제2단계가 시작한다. 이 시기에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체계화되지는 않았지만, 산발적으로 유럽문화진흥을 위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유럽법상 문화개념의 발전은 제도적으로도 확립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미 1973년 이래로 위원회 내에 문화사무를 관할하는 부서가 존재하였지만, 1984년 이후에는 문화장관이사회(Kulturministerrat)가 설치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1988년부터는 회원국과 위원회의 대표로 구성된 문화위원회(Ausschuß für Kulturfragen)가 설치되었다.

제3단계인 1987년부터 1992년 사이에는 유럽차원에서 다양하고 폭넓고 또한 구체적인 형태로 문화프로그램이 이루어지게 된다. 위원회는 1987년 12월 보다 폭넓은 문화정책을 위한 기본프로그램(Rahmenprogramm)을

---

<sup>77</sup> Häberle, *JöR* 1983, pp. 9-11.

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제출하였으며,<sup>78</sup> 상당정도의 재원도 마련하였다. 1988년 이사회는 이에 기초해서 문화영역 가운데 우선적 진흥을 요하는 네 가지 부문을 확정하였다.

1992년에는 곧 시행될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맞추어 “유럽공동체의 새로운 문화컨셉”이 수립되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전까지 문화영역에서 유럽통합의 역사를 살펴보면, 문화관련 프로그램 내지 활동들이 안정적인 방향이나 체계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문화적 차원에서 유럽통합이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유럽연합조약에 의해 유럽공동체조약 제128조(현 151조) 문화조항이 도입되면서이다.

### (3) 평 가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전 유럽경제공동체조약상 문화관련 관할규정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유럽공동체 조약체제로 전환되면서 유럽공동체조약 제3조 제p호에서 비로소 유럽연합의 활동이 회원국에 있어서 문화생활의 전개를 포괄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차원에서 유럽공동체에 문화적 차원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유럽연합조약은 1964년 헤이그 정상회담에서 시작되어, 1972년 파리 정상회담을 거쳐, 특히 1973년 코펜하겐 정상회담의 “유럽의 정체성에 관한 선언”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일련의 발전과정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유럽법은 개별국가의 국내법과 달리 지속적인 발전과정에 있는 동태적 개방적 법체계이다. 따라서 제1차법인 설립조약들이 경제활동만을 대상으로 하며 문화적 문제들은 관심밖에 있다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경없는 TV”라는 보고서는 이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통상 이해되는 것과는 달리,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은 경제활동

<sup>78</sup> 유럽공동체의 문화영역 활동을 위한 새로운 자극

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그밖의 활동도 그것이 대가와 연결되어 있는 한 모두 규율대상으로 포함한다. 경제와 문화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다. 경제가 인프라를 제공한다면, 그 내용은 문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유럽의 경우 교육이었다. 문화나 교육의 영역은 유럽법원에 따르면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 규율대상은 아니었다.<sup>79</sup> 그러나 일부 규정들이 교육영역에서 효력이 있게 되었다. Forcheri사건에서 유럽법원은 교육에의 진입문제는 협의의 교육정책과는 달리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지 아니 한다고 하였다.<sup>80</sup> 즉 유럽경제공동체는 이러한 사안에서 자신의 권한을 제한받지 아니 하고 행사할 수 있었다. 비록 문화에 대한 명문의 관할규정은 없었지만 문화관련 활동은 점차 확대되어, 문화와 관련된 모든 회원국의 활동들이 규율대상으로 포함되었고, 경제공동체는 점진적으로 문화영역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유럽법원은 1989년 5월 30일 문화관련 사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이른바 에라스무스(Erasmus)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 판결에서 유럽법원은 기본적으로 종래 자신의 판결입장에 따르면서도 직업교육의 개념을 그 본질상 교육 전체에 확장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sup>81</sup> 이를 통해 유럽법원은 유럽법의 관할을 현저히 확대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유럽경제공동체의 문화정책적 활동은 유럽연합조약의 발효 전에 이미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포괄하였다. 이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밀도 있는 문화정책이 집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영역에서 유럽법의 발전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이 채택하였던 이른바 기능적 관할권(functional powers) 때문이

<sup>79</sup> Rs. 152/82 “Forcheri”, Urteil v. 13.7.1983, Slg. 1983, 2323; Rs. 293/83 “Gravier”, Urteil v. 13.2.1985, Slg. 1985, 593.

<sup>80</sup> Rs. 152/82 “Forcheri”, Urteil v. 13.7.1983, Slg. 1983, 2323.

<sup>81</sup> Rs. 242/87, Slg. 1989, 1425 f.

었다.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은 실제적인 관할규정이 아니라 기능적 관할규정을 두고 있었다. 농업, 교통, 환경보호, 사회정책, 연구, 기술정책 등 개별 영역에 대한 관할규정을 두기는 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유럽통합이라는 목표들을 설정하고 이른바 기본적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이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기본적 자유는 개별 영역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매개로 하여 유럽공동체에 부여되지 않은 영역에 대하여까지 관할권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특정 영역에 있어서 회원국이 유럽에 대하여 가지고 차단막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럽공동체는 자신의 관할권을 명시적으로 확대시키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영역은 순수한 경제논리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는 점에서 특성이 있지만, 문화적 활동도 경제적 요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럽경제공동체의 권한이 문화영역에서도 행사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능적 관할권을 매개로 유럽법의 적용영역을 구체적으로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유럽법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유럽법원은 설립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동태적 해석론’에 의거하여 이른바 “사법에 의한 통합(Integration by jurisprudence)”을 추진하였다.<sup>82</sup> 구유럽공동체조약 제 164조(현 제220조)는 “유럽법원은 조약의 해석과 그 적용에 있어서 법의 준수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법의 준수라는 법원의 임무를 조약의 적용에 있어서까지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동태적 해석의 근거가 되었다. 이른바 효과적 집행(effet utile)의 원칙<sup>83</sup>에 따라 목적론적 해석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재판실무를 통해 유럽법은 그 흠결을 보충하여 현저히 확대발전하게 되었다.

<sup>82</sup> Dörr, “Der deutsche Föderalismus und die entstehende Medienordnung,” EWS 1991, S. 266.

<sup>83</sup> Rs. 20/59, Slg. 1960, 680, 708.

## 나.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 이후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은 문화정책에 대한 특별한 사항을 명기치 않고 있었다. 단지 조약 서문에 문화는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공동체내 시민간 연대와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만 언급되어있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한 유럽연합조약 제3조 제p호(현 제3조 제1항 제q호)와 제9장 제128조(현 제12장 제151조)를 통해 문화라는 개념이 유럽공동체조약의 내용으로 명시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유럽차원에서 문화적 활동이 비로소 법적으로 명확한 틀에 따라 규율되게 되었다.

우선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문화를 유럽연합의 목표로 지향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조약의 전문에 의하면 회원국은 회원국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회원국 국민들 사이의 연대를 공공히 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조약 제3조 제p호(현 제3조 제1항 제q호)에서는 공동체 차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회원국의 문화적 발전을 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유럽연합조약에서는 그 이전에 비하여 문화영역의 가치가 현저히 상승되었다. 문화영역을 제3조에 규정함으로써 유럽공동체는 회원국의 문화고유권을 축소시키고 문화에 대한 자신의 관할권을 확대시킬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sup>84</sup>

유럽연합조약 제3조 제p호(현 제3조 제1항 제q호)에 규정된 목표와 이에 따른 유럽공동체의 활동은 제9장 제128조(현 제12장 제151조)에 의하여 구체화되었다. 유럽연합조약이 독립된 장과 조문으로 문화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유럽법에 있어서 문화가 가지는 독자성 내지 그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이 도입된 제128조는 문화영역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포괄적 관할권을 부여하지 않고, 보충적 관할권을 부여하였으며, 따라서 회원국가의 고유한 권한이 박탈된 것은 아니다. 유럽의 문화정책은 개별 회원국가의

---

<sup>84</sup> Klein/Haratsch, "Neuere Entwicklungen des Rechts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DÖV 1993, pp. 785-786, 794.

의 문화정책과 병존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동조 제2항에서 유럽민족의 역사 및 문화의 전파 및 인식의 개선, 유럽과 관련된 문화유산의 유지 및 보존, 비상업적 문화교류, 예술적 문화적 창조 등 광범위한 활동영역을 유럽공동체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은 문화적 활동에 있어서 독자적인 고유영역을 부여받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공동의 문화유산이라든가 문화발전에 기여함에 있어서 지원 뿐 아니라 보충한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만 이러한 문화관할권은 동조 제5항에 의하여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한다는 조항에 의하여 절차상 제약을 받게 된다.

제128조 제4항에 의한 이른바 문화친화성조항은 다른 정책영역에서도 문화적 측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제128조의 수평적 차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유럽공동체의 모든 권한행사에 있어서 지침인 동시에 개개 규정이나 조치의 해석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규범구조로 인하여 문화적 측면이 다른 정책영역으로 전이되어 집행될 가능성이 있게 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제5항에 의한 절차적 제한을 우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유럽공동체의 문화관련 조치들은 거의 대부분 의결, 성명, 협의, 통지 등 법과 정책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형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유럽공동체의 법적 의사표시인 구유럽공동체조약 제189조(현 제249조) 소정의 형식에 의하는 경우가 매우 예외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회색시대의 작용형식은 구유럽공동체조약 제189조(현 제249조) 소정의 법적 구속력을 발하지 못한다. 이처럼 결정형식이 이른바 “혼합적 형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화영역의 특성인바, 이러한 형식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와 이사회내의 회원국대표 공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담긴 문화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 1) 제3조 제p호(현 제3조 제1항 제q호) : 공동체 차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회원국의 문화적 발전을 꾀한다.

- 2) 제36조(현 제30조) : 제30조 및 제34조(현 제28조 및 제29조)가 회원국간에 있어서 양(쿼터)에 의한 수출입제한을 금지하고 있으나, 예술적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 3) 제92조 제3항 제d호(현 제87조 제3항 제d호) : 문화조성 및 문화적 유산의 보존을 위한 보조금은 그것이 공동체 공동의 이익을 해칠 정도로 경쟁조건을 해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 4) 제126조(현 제149조) : 유럽공동체는 회원국의 협력을 촉진하고, 문화적 다양성 및 교육체계의 형성, 교육내용 등에 대한 회원국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지원, 보완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교육에 기여한다.
- 5) 제9장 제128조(현 제12장 제151조) ① 유럽공동체는 회원국 및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유지하고 공동의 문화유산을 강조하면서 회원국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② 유럽공동체는 회원국 사이의 협력을 조성하고, 다음 영역에서 회원국의 활동을 지원, 보조한다.
- 유럽민족의 역사 및 문화의 전파 및 인식의 개선
  - 유럽과 관련된 문화유산의 유지 및 보존
  - 비상업적 문화교류
  - 예술적 문화적 창조
- ③ 유럽공동체와 회원국은 제3국 및 문화관련 국제기구, 특히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와의 협력을 촉진한다.
- ④ 유럽공동체는 조약에 근거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문화적 측면, 특히 문화적 다양성의 보존 및 촉진을 고려하여야 한다.

## 4. 유럽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직 및 기구

### 가. 유럽연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로 유럽연합은 명문규정에 의하여 유럽 문화정책에 관한 관할권을 부여받았으며, 이에 근거하여 오늘날 유럽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나. 유럽연합 이외의 공적기구

#### (1) 유네스코

유네스코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로서 “국제연합헌장이 세계의 제 인민에 대하여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의 차별 없이 확인하고 있는 정의, 법의 지배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조장하기 위하여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하여 제 국민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네스코는 위의 목적을 위하여 지역단위의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유럽에서는 1963년 이래 발칸반도의 유네스코 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유럽문화교류활동을 수행하였고, 1966년부터는 동서문화의 교류에 중점을 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유럽의 지역협력사업은 세계평화를 위한 유럽의 평화로운 발전 및 이해, 유럽문화공동체에서 문화 상호교류를 통한 상호발전, 세계발전을 위한 유럽민족의 공동책임 등 세 가지 목표를 그 동인으로 하였다.

#### (2) 유럽이사회

유럽통일운동의 조정을 위한 국제위원회에 의해 1948년 5월 7-10일 개최된 헤이그 회의에서 문화적 공동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1949. 5. 5. 회원국 공동의 유산인 이상과 원칙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

여 회원국 상호간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회원국의 경제적 사회적 진보를 촉진할 것을 목표로 유럽이사회가 결성되었다.

## 다. 민간기구

유럽에는 각국간의 문화협력을 위한 여러 민간기구들이 있다. 이들은 특정 분야에서 문화협력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는 유럽문화공동체의 유지 및 조성을 일반적인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기구들만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 (1) 유럽문화센터 (Centre Européen de la Culture)

1948년 헤이그 유럽회의에서 각국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유럽문화센터의 창설이 요구되었다. 1949년 로잔에서 개최된 유럽문화회의에서 제네바에 유럽문화센터 (Centre Européen de la Culture : CEC)를 설치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1950년부터 동센터가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유럽문화센터는 그 정관에 따라 다음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 ① 유럽민족들 사이에 유럽민족들의 자유의 기초를 이루는 하나의 문명에 대한 연대의식과 귀속의식을 조성한다.
- ②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며, 특히 교육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인다.
- ③ 유럽문화의 대표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협력의 수단이자 연구 및 운동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
- ④ 유럽 이외 지역의 유사한 기구들과 교류한다.

### (2) 유럽문화재단

1954년 문화영역, 특히 교육 영역에서 유럽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목적으로 사법인으로 형성되었다. 처음에는 스위스에 설치되었으나, 이사장인 네델란드의 베른하르트 왕자의 재정지원으로 1956년 암스테르담으로 옮기게 되었다. 유럽문화재단은 유럽이사회(Europarat, Council of Europe)의 문화기금과 함께 협력 및 분업에 합의하였으며,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였다.

## 라. 평 가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전 유럽연합이 체계적인 문화정책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유럽에서는 다양한 공적 또는 민간기구를 통하여 가능한 분야에서 점진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통합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문화교류와 공동의 문화활동을 통해 점차 문화적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것이 유럽연합을 경제공동체에서 문화공동체의 성격을 전제로 한 정치공동체로 발전시키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도 하나의 구체적인 공동체 형성 이전까지 다양한 주체에 의한 다원적인 문화정책의 수행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5.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의 법적 기초

### 가. 문화영역에서 기본적 자유

기본적 자유 가운데 문화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상품이동의 자유, 서비스이동의 자유 그리고 영업소개설의 자유이다. 이들 기본적 자유로 인하여 문화적 성격을 가진 사안들이 유럽차원에서 경제적 요소를 가진 것으로 고려되었으며, 이는 유럽법원의 여러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었다. 유럽 문화정책의 주요내용은 대부분 기본적 자유의 논리적 적용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되었다.

유럽공동체조약 제30조(현 제28조)와 관련하여 유럽법원은 문화관련사안에 대하여 규율대상에 기초한 해석론을 전개한다. 이에 따르면 생산품관련 규율들만이 차별적 규율로서 제30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예술적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제36조(현 제30조)상의 예외는 문화영역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은닉된 관할권과 문화재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회원국의 결정권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즉 역내시장의 실현으로 국경통제가 소멸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를 위한 국내규율의 대체물로서 유럽차원의 효과적인 조치가 요구되었다. 문화재의 수출에 관한 유럽공동체규정(Regulation, Verordnung) 제3911/92호 및 그 반환에 관한 유럽경제공동체 지침 제93/7호는 통일적인 수출규제를 위한 것이다.

저작권법은 이중적 성격, 즉 경제적 성격과 문화적 성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유럽법원은 저작권법 영역에서 제36조(현 제30조)를 적용한다. 이 조문의 취지는 용역관련법 및 경쟁법에서도 적용되며, 저작권자는 광범위한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국내법에서 유래하는 배타적 권리와 자유로운 상품이동 사이에서 형량을 한 것이다.

용역이동의 자유는 문화적 용역에서도 적용된다. 대표적인 예가 방송이다. 방송은 문화적 요소와 함께 경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문화관련 영역

에서 용역이동의 자유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예외에 있어서는 특히 일반이의 내지 공익이 강조된다. 일반이의 내지 공익은 회원국의 관점에서 규정되고 유럽법에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방송영역에서 일반이의는 유럽인권선언 제10조에 규정된 원칙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문화적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역내 국가 사이의 방송에 대하여는 유럽경제공동체 지침 제89/552호인 이른바 “국경 없는 방송” 지침이 제정되었는바, 이 지침은 문화영역에서 유럽의 관점을 현저히 강화한 것으로서 특히 이른바 “할당제”와 관련해서 그러하였다. 이에 따르면 일정비율 이상의 프로그램을 유럽산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럽문화의 보호와 함께 유럽국가 사이의 문화교류를 달성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국가의 문화관할권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이해되었고, 이에 따라 독일의 여러 주에 의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되었다.<sup>85</sup>

## 나. 차별금지원칙

유럽공동체조약 제6조(현 제12조)에 의한 일반적인 차별금지원칙은 특히 문화진흥이나 저작권법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회원국의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예컨대 회원국에 있어서 영화진흥에 관한 법률들은 특히 문제가 되어왔다. 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쳐 개별회원국의 영화진흥제도에 대하여 그것이 차별적 규율이라는 이유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관계자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엄격하게 거부하였다. 왜냐하면 다른 회원국의 국민들이 진흥정책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개별회원국의 영화진흥법을 보면, 직접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적 진흥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스튜디오에서 제작되었을 것, 제작자가 국내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 국어로 제작되었을 것 등을 보조금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진흥조치가 비례원칙에 부합하게 합리

<sup>85</sup> Behrens, *Kultur in der Europäischen Union* (1999), pp. 196-200.

적 차별의 범위 내에 있는 한, 허용된다고 본다.

일반적인 차별금지원칙이 적용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영역이 저작권법 분야이다. 유럽법원은 1993. 10. 20. “필 콜린스” 사건과 “파트리카” 사건에서 외국예술인이 외국에서 한 공연녹음이 독일인의 그것에 비하여 저작권법상 덜 보호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시하였다. 이 결정에서 유럽법원은 저작권법 영역에서 제6조 차별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승인하였다. 저작권과 저작권유사권리들은 상품이동의 자유와 용역이동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럽공동체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일반적인 차별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sup>86</sup>

#### 다. 문화영역에서 시장기능

유럽공동체조약은 문화영역에서 시장 메카니즘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5조 이하(현 제81조 이하)를 둠으로써 문화적 조치가 경쟁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문화적 목표가 비례원칙에 반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이는 도서재판 매가격유지제도에서 잘 나타났다. 경쟁법은 방송사와 같은 독점기업에 적용된다. 이들 독점기업의 활동은 제90조(현 제86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럽공동체조약 제92-94조(현 제87-89조)에는 국가보조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조금은 시장경제지향적 국가에서 흔히 사용되는 경제정책 수단이다. 유럽연합의 보조금관련제도는 회원국의 간섭에 의하여 공동시장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조금제도의 철폐는 그 자체가 조약의 목적이 아니며, 공정경쟁과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

<sup>86</sup> EuGH, Rs. C-92/92 u. C-326/92, “Phil Collins” u. “Patrica, Urteil” v. 20.10.1993, *EuZW* 1993, 712, Rn. 27.

## 6.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개별 영역별 노력

### 가. 교육

유럽에서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문화영역에서 각국이 민족문화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제한과 편견을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 선결과제였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된 영역은 교육이었다. 교육체제도 민족국가형성기를 통해 각국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수업에서 나타나는 민족국가에 의한 편견들이 철폐되고 유럽인이라는 의식이 형성되어야 문화영역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식되었다. 또한 문화영역에서 인적 교류, 사상의 교류, 문화재의 이동이 자유로이 보장되어야 하였고, 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 나. 문화교류 및 지원 프로그램

#### (1) 문화유산: RAOHAEL Programme

이는 특별히 공동체내의 문화유적의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유럽을 상징하는 고유 유적 및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복원 및 보존을 행한다. 또한 이를 위한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 (2) 예술지원 : KALEIDOSCOPE Programme

예술계에 대한 지원은 특별히 창의적 예술발전과 상호교류를 위해 중요한 사안으로 다양한 문화분야를 모두 포함하여 미디어, 공연예술, 응용예술 등이 망라되어 있다.

#### (3) 출판: ARIANE Programme

특별히 문학작품의 번역과 출판물의 유통은 공동체 차원의 문화정책에

있어 실질적 지원이 미치는 분야이다. 이는 문화의 확산과 문화유산의 계승을 위해 중요한 사업으로 단순히 출판물에 머물지 않고 관련 미디어 상품에 대한 지원도 행한다.

#### (4) 유럽의 상징

1985년과 1990년에 회원국 문화장관들은 회원국 시민간 밀접한 협력을 목표로 “유럽문화도시 (European city of culture)” 행사와 1990년에는 “유럽문화의 달 (European Cultural Month)” 행사를 각각 개최하였다.

1985년에는 유럽음악의 해를 맞아 “EC청년오케스트라 (EC Youth Orchestra)”를 구성하였다.

유럽차원의 각종 시상으로 유럽문학상 (EC's Europalia literary prize), 르네엘리자베트상 (Reine Elisabeth prize), 건축가대상 (Architecture prize) 그리고 유럽번역상 (European prize for the best literary translations) 등이 제정되었다.

#### (5) 미디어

이미 공동체 지침(directive)을 통해 국경을 넘은 TV 프로그램에 대한 자유화 조치(television without frontiers)가 행해졌으며, 방송, 미디어 분야의 발전을 위한 MEDIA programme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 7. 문화공동체로서 유럽연합의 전망

### 가. 유럽연합조약상 문화관할권 도입의 영향

유럽차원에 있어서 보충성원칙은 유럽연합의 결정권한이 독점화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다. 보충성원칙이나 유럽공동체조약 제 128조(현 제151조)로부터 문화에 관한 유럽연합의 포괄적 관할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 이들 규정은 보충적 관할규정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하여 유럽공동체조약에 새로이 도입된 규정들은 문화관할권을 명시하고, 광범위한 영역을 유럽의 활동영역으로 열거하였다는 점에서, 일응 유럽의 문화관할권을 현저히 확대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들 규정은 유럽차원에서 종래 설립법의 직접 근거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적 조치를 취했던 기존 실무관행을 발전된 형태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유럽연합조약이 유럽차원에서 문화에 관한 근본적인 변경을 가져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와 관련한 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었고, 종래 행해지던 문화활동들이 지속적인 성격을 취득하게 되었으면, 문화영역이 유럽연합의 승인된 활동영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 나. 전 망

유럽문화는 다원성에 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다원성은 다양성 속의 통일을 그 핵심징표로 하고 있다. 유럽법에 문화에 관한 새로운 관할권이 규정되었다는 것은 유럽연합이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에게 부여된 수단들을 사용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자신의 고유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그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명시적 관할규정을 가지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을 필요로 하였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유럽연합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힘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유럽의 미래는 경제적 요소 뿐 아니라 문화적 요소의 통합 여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문화는 유럽연합의 장래 발전에 있어서 유럽통합의 기초로서 경제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경제와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다고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sup>87</sup>

이러한 유럽연합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가 동북아시아 정치경제질서의 형성에서 담당하여야 할 역할을 기능할 수 있게 된다. 경제공동체든 정치공동체든 실질적인 통합을 이룩하여 평화와 공존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정당성에 대한 구성원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승인은 공동체구성원의 문화적 공감대가 토대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면, 따라서 동북아 공동체의 형성에 있어서 문화적 통합은 긴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

<sup>87</sup> Behrens, *Kultur in der Europäischen Union* (1999), p. 313.

# III

## 일본의 국제교류사업



## 1. 총 설

일본국은 그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권역 내지 아시아 권역 전반에 걸쳐 오래 전부터 교류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외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연구소)들은 문화의 매개자이다. 일본은 과거 대동아공영권 구상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동북아를 넘는 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국은 주변국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이러한 경향을 국가정책 내지 법제화로 표면화시키지 아니한다. 일본은 철저한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통하여 아시아에서의 거점을 확보하고자 한다.<sup>88</sup>

### 가. 일본의 문화교류 이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나 문화간 교류는 상호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한 신뢰구축으로 우호관계를 증진시킨다. 문화교류를 통해 다양한 일본의 모습을 세계에 알리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충분히 이해시킴으로써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활동하는 일본인들의 세계인들과의 교류를 돕는다.

## 2. 일본의 문화교류 활동 원칙

문화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정부차원의 활동을 다방면을 통해 진행하고 민간단체의 국제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일본의 아시아 현지진출 기업들은 문화침병으로서 기능한다.

---

<sup>88</sup> 이하 일본의 동북아권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개요는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및 일본외무성 홈페이지(<http://www.mofa.go.jp>)중 일본의 국제교류 및 협력 부문 발취 및 재구성

## 나. 문화의 교류의 개념

### (1) 예술교류

국제교류기금사업과의 제휴를 실시하고 대형문화사업, 공연사업 또는 전시사업 등의 분야에 있어서 국제교류기금과 제휴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 (2) 재외공관에서의 문화사업

재외공관 스스로 기획한 비교적 규모가 작은 문화사업을 실시한다. 사업 내용은 영화상영회, 꽃꽂이 전시회, 일본어 작문 콩쿨, 무도실연회, 화도(華道), 향도(香道)나 다도의 시범 등, 각각의 재외공관의 아이디어에 따라 매년 다양화한다.

## 다. 지적교류, 학술교류

현대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지구규모의 과제해결을 위하여, 일본도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있고, 동시에 연구자간의 교류를 심화하기 위하여 심포지엄, 세미나 등에서의 참가하고 협력한다.

## 라. 문화의 협력의 개념

### (1) 문화무상협력

개발도상국에 대한 (1) 문화재 및 문화유적의 보존과 활용, (2) 문화관계의 공연과 전시의 개최, (3) 교육 및 연구의 진흥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자금 등을 제공한다. 문화무상협력, 풀뿌리문화 무상협력, 문화유산무상협력의 3가지가 있다.

## (2) 문화유산의 보존

유네스코 문화유산 보존 일본 신탁기금,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일본신탁기금을 운영하고, 세계유산조약에 관한 사업 등을 실시한다.

## (3) 유형문화유산의 보존·수복 개요

일본은 1989년 세계적인 문화유산보존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기 위해, 유네스코(UN 교육과학문화기관)에 「문화유산보존 일본신탁기금」을 설립하였다. 이 신탁기금은, 중요한 역사적 건축물이나 고고학적 유적 등의 유형문화유산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말까지 합계 3,799.8만 US달러를 지원하여, 총 15개국에 있는 8개 유적에 대해 보존·수복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신탁기금은 세계의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또한 붕괴 위기에 처해 있어 긴급한 보존·수복이 필요한 유적을 대상으로 하며, 문화유산의 보존·수복 작업과 이에 필요한 사전조사와 연구 등을 실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일본은 보존·수복을 위한 구체적인 공사 실시와 전문가 파견, 그리고 필요에 의해 기재를 공여하는 등 지속적인 보존수복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들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문화유산을 보유한 국민자신의 손으로 직접 문화유산을 지켜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현지 전문가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 각 사업의 문화유산보존에 관계된 연수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 (4) 앙코르와트 유적의 보존협력

캄보디아의 밀림에서 있는 수많은 장엄한 유적군, 그리고 찬란한 부조와 조각으로 알려진 앙코르 유적이 존재한다. 관광명소로서도 이름 높은 이 유적은 현재,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앙코르·와트로 대표되는 앙코르 유적은, 세계유산 리스트에 등록되어있을 뿐 아니라, 「위험에 처해 있는 세계유산」으로서도 선언되어 있어, 보존·수복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앙코르와트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이전부터 국

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져 왔으며 일본도, 앙코르 유적 구제를 위한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일본국 정부 앙코르 유적구제 팀(JSA)」에 의한 보존수복사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을 행하고 있다.

## (5) 세계유산

일본은 1992년 세계유산조약을 체결한 이래 이 조약을 실시하는데 있어 다양한 공헌을 해오고 있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는 세계유산 위원회의 멤버, 특히 95년부터는 부의장국을 맡았고 1998년에는 마츠우라 전 주불대사를 의장으로 하여 교토에서 제22회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교토의 회의에서는 「고도 나라의 문화재」를 포함한 30건(자연유산 3건, 문화유산 27건)의 세계유산 일람표 기재가 결정됨. 또한, 의장국 일본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유럽 편중이라 일컬어졌던 세계유산 가치관을,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으로 눈을 돌려 보다 글로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행동계획이 채택되었고, 세계유산 보존상황의 심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정기 보고제도의 수속이 결정되는 등, 세계유산 제도를 보다 균형 잡힌 것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세계유산기금에 대한 지원면에서도 일본의 공헌은 매우 커서 조약체결국 중 일본은 미국과 함께 제1위의 지원국이다. 2000년에 일본이 지원한 680,459달러는, 그 해의 세계유산기금의 예산총액 5,000,000달러의 13.6%에 해당한다.

## (6)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진흥

### (가) 개 요

일본은 무형문화재 보존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구하는 유네스코의 요청에 의해 1993년 유네스코에 「무형문화재 보존진흥 일본신탁기금」을 설립하였다. 이 신탁기금은, 무용이나 음악 등의 전통예술, 도예, 칠기, 나염 등의 전통공예, 구두전승 및 소수언어 등의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나) 활동

일본은 이 신탁기금에 대해 2000년말까지 237.2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이제까지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전통기예의 보존·계승에 관한 워크숍, 구두전승의 기록보존 등 13건의 프로젝트를 실시하였고, 또한 2001년 현재 12건의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다. 보존 대상이 될 만한 무형문화재에는 소수민족에 전해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일본은 UN기관인 유네스코를 통해, 또한 관계각국 정부의 의향을 존중하면서, 협력하고 있다.

## (다) 기타 기금

무형문화재의 보존·진흥에 관련된 협력으로서 신탁기금과는 별도로, 국제교류기금 아시아센터가, 아시아 지역의 음악, 무용, 언어 등의 무형문화재의 기록보존(무형문화재의 영상기록화 프로젝트, 역사적 문서보존 프로젝트 등)을 하고 있다. 또한, 동 센터는, 유형·무형문화재의 보존, 기록을 하고 있는 아시아 역내의 연구기관, 박물관 조성 등에 협력하고 있으며, 1999년도에는 베트남·후에 예술대학의 「베트남 아악의 부흥」 프로젝트를 비롯해, 총 35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조성협력을 하고 있다.

### (7) 국제기관과의 협력(유네스코·국제연합대학)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의 행재정개혁지원(行財政改革支援) 또는 각종 프로그램의 실시를 지원하는 한편, 국제연합대학의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 (8) 문화에 관한 무상협력

#### (가) 개요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사회 발전과 함께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 유지·진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많은 국가가 경제뿐 아니라

문화의 측면도 포함하여 국가 만들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문화에 관한 무상협력은 이러한 각국의 노력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일본과 이들 국가의 상호이해 및 우호친선을 심화하기 위해 정부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창설되었다.

## (나) 유형

문화에 관한 무상협력은 「문화 무상협력」, 「일반대중문화 무상」, 「문화유산 무상」 등 세 가지 부문이 있다.

### - 문화 무상

문화 무상은 각종 문화·교육활동에 사용되는 기재의 구입자금 및 기재의 수송·설치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1건당 5000만엔 한도로 증여한다는 것으로, 1975년 제도 창설 이래 2001년까지 126개국·지역에 총 1,124건, 금액으로 461억 9,830만엔에 이르는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

### - 일반대중문화 무상

일반대중문화 무상은 지방공공단체, NGO등 개발도상국의 소위 일반대중 레벨에 직접 원조하는 것으로 보다 세밀한 원조 실시를 목표로 한 것이며, 2000년 도입된 이래, 2001년도까지 32개국에 합계 37건, 총 1억 7816만엔에 이르는 원조를 실시해오고 있다.

### - 문화유산 무상

문화유산 무상은, 문화 무상협력으로는 대응할 수 없었던 문화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시설건설(출토품 보관시설이나 사이트·뮤지엄의 건설 등)이나 정비(문화유산에 대한 액세스 도로의 정비 등)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2000년도부터 도입하여, 2001년도까지 4개국에 총 4건, 8억 5580만엔의 원조를 실시해 왔다. 이들 부문에 의해 개발도상국에 증여된 기재, 시설 등은 그 나라의 문화재·문화유산 보존·교육활동 진흥 등에 기여하는 동시에 일본과 이들 나라의 문화교류 촉진에 공헌하고 있다.

## 2. 조직 · 인력

### 가. 조직

#### (1) 문화교류부

(가) 문화교류부란 선진제국에 비교해서 눈에 띄게 뒤진 국제문화교류의 비약적인 활성화와 진전을 목적으로, 1984년 7월 “A정보문화국내의 2개과”를 개조해 탄생하였다.

(나) 문화교류부는 문화 분야의 외교활동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일본의 문화외교의 방향성을 정하는 동시에 문화교류사업의 실시기관인 국제교류기금과 제휴하여 일본문화를 해외로 알리는 선봉역할을 담당. 각종 문화교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다) 문화교류부의 구체적 업무

##### ① 문화교류정책의 기획 · 입안과 조정

국가별, 지역별 문화교류정책의 기획 · 입안, 다른 나라와의 문화협정 등의 교섭 및 체결, 문화교류에 관계된 국제회의(국간의 문화융합위원회, 정부간협약)등을 개최하였다.

##### ② 국제교류기금에 대한 지도 · 감독

일본 정부의 문화교류부는 국제교류기금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기금내의 인사, 예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결산 그 이외의 인가를 담당한다.

##### ③ 각종 사업에의 협력

문화관계회의, 심포지엄 등의 개최에 대한 후원 및 협력, 국제문화교류행사(문화제, 예술제, 음악제 등)의 후원 또는 협력, 일본만국박람회기념기금의 해외사업실시에 관한 협력, 지방공공단체나 민간단체에 의한 문화교

류에의 정보제공 등이 행해진다.

## (2) 국제교류기금(The Japan Foundation)

### (가) 개 요

일본국제교류기금은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 상호이해와 국제 우호친선의 촉진을 목적으로 1972년 일본 외무성소관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일본에서 국제문화교류를 담당하는 첫 공적 전문기관으로서 학술, 일본 연구에서 일본어 교육, 예술, 출판, 영상매체, 스포츠,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기본으로 한 문화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트러스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일본국제교류 기금의 운영은 정부 및 민간 출자금에 따른 운용이익, ODA예산을 포함한 정부 보조금 및 민간 기부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 (나) 사업내용

#### ① 사람들(People)

- 인물 파견 : 학자·연구자를 중심으로 문학·저널리즘·예술·스포츠·생활문화 일반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세계 각지에 전문가 등을 파견하여 일본문화 소개나 지도·협력을 실시한다.
  - 파견 펠로십
  - 국제회의 참석자 파견
  - 문화협력파견
  - 문화유산 보존 전문가 파견
  - 스포츠 전문가 파견
  - 지역·시민단체 교류 유럽파견
  - 일본문화 소개 파견
- 인물 초빙 : 세계 각국 사람들이 일본이나 일본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학자·연구자, 예술가, 언론인 등 문화 상호교류

를 담당하는 인사들을 초빙하여 일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도록 함.

- 문화인 초빙
- 국제회의 등 참석자 초빙
- 초빙 펠로십
- 중·고교 교사 그룹 초빙
- 지도자·전문가 그룹 초빙
- 시민단체 교류 그룹 초빙
- 외국문화 소개 그룹 초빙

## ② 학습(Learning)

- 해외의 일본어 교육지원 : 세계 각국의 일본어 교육기관에 대한  
전문가 파견, 일본어강좌 지원사업, 일본어 능력시험 실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어 보급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일본어교육 전문가 파견
  - 해외 일본어 교육기관 지원
  - 해외 일본어센터
  - 일본어 능력시험
  - 대 중국(中國) 특별사업
  - 초빙 일본어 연수
  - 일본어 교재의 개발·조성·기증
  - 일본어 교육 정보자료 제공
- 해외의 일본연구 지원 :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나 연구자를  
대상으로 일본에서의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각국의 일본연  
구기관에 강사 파견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일본 연구기관에의 객원교수 파견
  - 일본연구 인원 확충 지원사업
  - 일본연구 조사·회의 등 지원사업

- 일본연구 강사 등 펠로십
- 일본연구 장려 장학금
- 도서기증
- 정보 서비스

### ③ 예술(Arts)

- 미술교류 : 회화·조각·비디오 아트의 미술분야에서도 일본의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동시에 일본에 소개될 기회가 적은 해외미술을 다루는 전시회를 주최·지원
  - 국제전
  - 해외전
  - 국내전
- 무대예술교류 : 무용·음악·연극 등의 무대예술을 해외에 소개함과 동시에 일본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해외의 무대예술을 일본 국내에 소개하고 있음. 또한, 일본과 해외의 무대 관계자에 의한 공동제작도 추진.
  - 해외공연
  - 국내공연
  - 아시아 무대예술가 교류·연수사업

### ④ 매체(Media)

- 출판교류 : 세계 각국의 출판사를 지원하여 외국어로 쓴 뛰어난 일본관계 도서의 출판을 촉진하고 있음. 또한 정기 간행물을 통해 문화교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보도 제공
  - 출판지원
  - 번역지원
  - 도서전 참가
  - 정기 간행물 출판

- 영상교류 : 극영화·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영화와 TV프로그램 등의 영상매체를 통해 해외에 일본문화를 소개하고 일본에 외국 문화를 소개.
  - TV프로그램 교류 촉진
  - 극영화 및 일본문화 소개 영화의 배포, 제공
  - 해외에서의 일본영화 상영
  - 국내에서의 외국영화 상영
  - 영화(TV프로그램)제작 지원사업

#### ⑤ 지역(Region)

- 일미 센터 :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중요과제 해결에는 일미 양국이 전 세계인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일미 양국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를 지원
  - 글로벌 파트너십의 추진을 위한 지적교류
  - 지역·시민단체 차원에서의 상호이해 추진
  - 펠로십 사업
- 아시아 센터; 아시아 각국과 긴밀한 관계 구축 및 다양한 문화를 간직한 아시아 공통 가치관 육성을 목표로 상호이해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작업을 추진.
  - 아시아 지역의 지적교류 추진사업
  - 아시아 각국의 문화진흥 지원사업
  - 일본의 아시아 이해촉진사업
  - 아시아 시민단체교류 지원사업
- 일본·유럽 문화교류 강화사업 : 일본과 유럽의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고, 더욱 긴밀한 일본·유럽 관계의 구축 및 구 소련, 동유럽 각국의 민주화·개방화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사업
  - 지적교류의 추진

- 시민단체 교류의 추진
- 민주화·개방화 지원
- 일본어 보급·일본연구의 지원
- 예술교류 강화·확대
- 문화소개사업

## ⑥ 기 타

- 국제교류활동의 표창 : 학술·예술 등의 문화활동을 통한 상호이해와 국제우호친선 촉진에 대해 「국제교류기금상」 「국제교류 장려상」을, 또한 일본 국내의 각 지역에 뿌리내린 국제교류 활동에 대해 「국제교류기금 지역교류 진흥상」을 수여
- 조사 및 연구 : 해외 여러 나라의 문화사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각종 조사를 실시하며 간행물을 통하여 이러한 정보를 발신
- 일본에서의 국제교류활동 진흥 : 국제문화교류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체, 민간단체와 공조하여 심포지엄이나 연락모임,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국제회의 개최를 지원
- 부속기관·지부·해외사무소의 활동 : 일본 국내에 일본어 국제센터, 간사이 국제센터(大阪府), 교토지부를 설치한 것 이외에도 해외 19개소에 일본문화회관, 일본문화센터 및 사무소를 두고 있음. 이들 해외 사무소에서는 현지 문화정보 수집, 조사·연구, 본부의 기획사업 실시, 현지 단체와의 협력에 의한 일본문화 소개사업 촉진을 중심으로 활동. 또한, 일본문화회관, 일본문화센터에서는 한층 더 나아가 강연회, 영화회, 전시회, 공연 등의 개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면서 일본어 강좌·도서관 운영 및 정기간행물도 발행

## 나. 인적 교류

### (1) 유학생교류

#### (가) 개요

일본으로의 유학정보제공, 유학생의 수용 및 파견에 관한 업무(국비유학생의 선발시험 등, 기유학생(元留學生)에의 after care(귀국유학생회의 지원 등)를 실시

#### (나) 「영·리더즈·프로그램(YLP)」

2001년 10월부터 아시아 각국, 중앙 유럽 등의 지도자로 활약이 기대되는 행정관, 경제인 등의 젊은 지도자를 일본의 대학원에 받아들여, 1년 정도로 학위를 수여하는 새로운 유학 프로그램 「영·리더즈·프로그램(YLP)」 창설

#### (다) 「일본유학 시험」

2001년도부터, 유학생 교류를 한층 추진시키고자 현행의 「사비 유학생 통일시험」과 「일본능력시험」을 통일하고, 해외에서도 일본 대학의 입학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유학생의 일본어 능력 및 일본유학의 적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일본유학시험」이 실시됨. 제1탄은 2001년 11월부터 방콕, 하노이,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마닐라, 부산, 싱가포르, 서울, 스리바야 등 9개 도시에서 시행시험이 실시

### (2) 청년의 교류

- JET 프로그램
- 글로벌·유스·익스체인지
- 아시아 유럽 영·리더즈·심포지엄
- 외무성 청년초빙사업

- JET프로그램(어학지도 등을 행하는 외국인청년초청 사업에 있어서, 참가자의 모집시험, 일본으로 오기 전 오리엔테이션의 실시, 기 참가자(元參加者)를 위한 동창회조직의 지원 등을 실시. 또한, 외무성청년초빙의 조정 및 실시, “세계청년의 배” “동남아시아 청년의 배” 사업에의 협력, 지방자치체 혹은 민간의 청소년 파견 및 수용계획에의 협력 등.

### (3) JET프로그램

#### (가) 개요

JET란,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의 약칭으로 외무성, 문부과학성, 총무성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여러 외국의 젊은이들을 일본에 초대하여, 일본 전국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외국어나 스포츠 등을 가르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를 위해 일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임.

JET청년은 일본전국 각지에 있는 학교나 행정조직 안에서 지역이나 주민과의 밀접한 활동을 통해 일본을 경험하고 모국에 돌아간 후에도 종래의 일본 연구자와는 한층 다른 시각을 가진 새로운 타입의 지일인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일본과 모국 간의 귀중한 다리가 되고 있음.

외무성에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선발 사무를 하는 동시에, 귀국한 전 JET청년들과 일본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동창회 조직」 지원활동을 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일본의 외국어 교육 충실과 지역 차원의 국제 교류 진전을 통해 일본과 다른 국가간의 상호 이해 증진과 일본의 국제화를 꾀하고자 1987년에 처음 시작되어 한국은 1993년부터 참가하고 있음 시작하지 14년째가 되는 2000년에는 39개 국가로부터 6,078명이 참가하여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음.

## (나) 모집직종

- 국제 교류원 CIR(Coordinator for International Relations)
- 어학 지도 조수 ALT(Assistant Language Teacher)
- 스포츠 국제 교류원 SEA(Sports Exchange Advisor)

## (4) Global Youth Exchange

### (가) 목 적

글로벌·유스·익스체인지 사업(GYE: Global Youth Exchange)은 1994년도부터 매년 외무성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21세기를 짚어질 세계 각국의 우수한 청년을 일본으로 초빙하여, 이들 외국 청년과 일본의 청년이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지구규모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임. 외국청년에게는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일본 청년에게는 국제적 시야를 넓히도록 하여 국제적인 상호이해의 심화를 그 목적으로 함.

### (나) 내 용

참가자만으로 그 해의 주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연 후, 이를 토대로 공개 심포지엄을 개최, 논의를 심화하며, 외국에서 온 참가자에게 일본의 다양한 면을 알리기 위한 지방시찰(일본문화 소개) 등을 실시. 개최지는 년도에 따라 상이함.

## (5) 아시아 유럽 영리더스 심포지엄

아시아 유럽 영·리더스·심포지엄(AEYLS)은 각계의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아시아와 유럽의 젊은 지도자들이 모여, 21세기의 새로운 양 지역 간 협력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사업. AEYLS는 1996년에 열린 아시아, 유럽회의(ASEM)에서 하시모토 류타로 전 수상이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프란츠·프라니츠키 전 수상과 함께 아시아와 유럽의 관계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ASEM을 지탱하는 하나의 방책으로 제창하였고 1997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것임. 참가자는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 새로운 타입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이 사업은 스위스의 공익재단 「월드·이코노믹·포럼(WEF)」이 매년 개최하며 국제적인 각계의 리더가 모이는 「현인회의」로 유명한 「다보스 회의」를 모델로 하고 있어, 별명 「미니 다보스 회의」라 불리고 있음.

## (6) 외무성청년초청사업

외무성은 매년 세계 각국·각 지역에서, 장래 지도적 지위에 오를 만한 청년들을 일본으로 초대함. 청년초빙에는 단기·장기 2종류가 있으며 전자는 1972년, 후자는 1992년에 개시되었음. 이 사업으로 일본에 초빙된 사람의 수는 1999년 단기가 641명, 장기가 15명, 총 656명에 이르고 있음.

- 단기 청년초빙사업

일본과 세계 각국과의 2국간 관계 발전의 기초가 되고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각국에서 장래에 각계의 지도적 위치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우수한 청년들을 그룹으로 약2주간 일본에 초청하여, 정부·민간 관계자와 일본 청년들과의 교류, 산업·문화시설 시찰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도록 하고 있음.

- 장기 청년초빙사업

민주화·개방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중국, 몽고,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로부터, 문화적 분야에서 장래를 짚어지고, 민주화를 지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청년들을 장기간(약 9개월간) 일본으로 초청하여, 각자의 관심에 맞는 문화적 분야에서 연수, 일본어의 습득, 각종 시찰, 청년과의 교류 등을 통하여, 폭 넓게 일본의 사정에 대한 견문을 얻게 하고 있음.

### (7) 문화인 등의 교류

- 연구자
- 예술가
- 교원 등

### (8) 스포츠 교류

국제경기대회나 국제스포츠(축구: 월드컵일한공동개최) 교류에 관한 협력, 올림픽개최에 입후보하고 있는 도시에 대한 초청활동의 지원 등을 실시

## 3. 프로그램

### 가. 「한·일 공동 미래프로젝트」

2002년 7월 1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한일 양국에서 전 세계를 향한 공동작업인 월드컵 축구대회 한일공동개최의 성공과 그 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한일공동 미래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함.

#### (1) 기본적 개념

월드컵 한일공동개최의 성공을 기념하고, 앞으로 양국간 교류를 더욱 추진한다는 목적에서 양국 정부가 필요한 지원. 월드컵을 기념하여 「청소년 교류」 및 「스포츠 교류」의 한일공동개최 안전을 지원대상하며, 특히 초중 학생의 스포츠 교류를 중점적으로 지원.

#### (2) 구체적인 지원내용

(가) 「청소년 교류」 지원

- ① 한·일간의 청소년교류 조성 추진(예)
  - 한일의 대학생에 의한 합숙형식의 교류회
  - 합창단 합동 콘서트 등

- ② 한·일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장려와 활성화

(나) 「스포츠 교류」 지원

한일간 어린이와 젊은이를 중심으로 축구 등의 스포츠 교류를 지원

(3) 프로젝트팀 구성

본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프로젝트팀을 결성[일본측 : 외무성, 문부과학성 등/ 한국측 :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등]

나. 2002 아시아지역과의 교류사업

(1) 2002년 ‘일본의 해’, ‘중국의 해’

(가) 개 요

- 2002년 일·중 국교정상화 30주년을 기념하여 ‘일본의 해’, ‘중국의 해’를 실시.
- 문화, 경제, 무역, 관광, 교육, 청소년교류 등의 분야에서 기념사업을 예정.
- 2000년 10월 주룽지(朱鎔基) 총리 방일 시 실시에 합의. 2001년 10월 고이즈미 총리와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회담에서도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일치.

(나) 체 제

- 2001년 11월 29일 일본측 실행위원회(위원장:이데이 소니 회장 겸

CEO) 제 1회 회의 및 일부 주요 멤버가 총리를 예방. 현재 실행위원회 사무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추진 중.

- 중국 측은 순자정(孫家正) 문화부장(문화대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행 위원회의 발족을 위해 문화부(문화성)가 창구가 되어 외교부, 국무원 신 문판공실을 중심으로 준비 중.

#### (다) 일본측 기념사업안

- 공연사업(일·중 공동 오페라 『찬치키』), 오케스트라 앙상블 가나자와에 의한 중국 공연, 록 콘서트 등)
- 전시사업(실크로드 문물전, 실크로드 국제 대신포지엄(대명궁 함원전 복원 완성 기념) 등)
- 교류사업(우호도시 중학생 탁구대회, 중국어·일본어교사 교류 등)
- 기타(일본의 TV 드라마 방영, 일본영화전, 만화전, 일본에서 기념우표 발행 등)

### (2) 일·한 국민교류의 해

#### (가) 경 위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 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일한 공동개최를 계기로 한 문화교류 등의 활성화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99년 오부치 총리(당시)와 김종필 국무총리(당시)가 ‘2002년 일한 국민교류의 해’에 대해 정식 합의.

#### (나) 1년 동안 다채로운 ‘2002년 일한 국민교류의 해 기념사업’

- ① 히라야마 이쿠오·김홍수 2인전
- ② 일한 국민교류의 해 개최 행사(1월, 서울(21일) 및 도쿄(28일))
- ③ 마스크 로드 프로젝트 ‘신기가쿠(眞伎樂)’ 서울 공연 (노무라 만노조가 연출한 대규모 공연)

- ④ 영화 『서울』(나가세 토모야 주연의 일한 합작 영화)
- ⑤ 예술교류
  - 전통문화(일한 궁중음악 공동연주회, 일본미술 명품전, 한국의 명보(名寶) 등)
  - 생활문화(일본생활문화전, 한국생활문화전)
  - 무대예술(6월 전후에 집중),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등
- ⑥ 조선통신사 재현사업(일한 시민교류 페스티벌 2002)
- ⑦ 산업문화 엑스포 ; Korea Super Expo 2002, 제 3회 Japan Festival in Korea
- ⑧ 청소년 교류, 지역 교류, 스포츠 교류 등
- ⑨ 그 밖에도 정부 관계기관 주최, 조성, 후원사업을 ‘2002년 일한 국민교류의 해 기념사업’으로 지정할 예정. 기업,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일한 교류사업 중 적당한 것에 대해서는 후원 명의를 부여하고 본 교류의 해 기념사업으로 자리 매김함. 풀뿌리 사업도 환영.

#### (다) 추진체제

일한 문화교류 준비실을 외무성 문화교류부 내에 설치. 관계 성청과의 협력·연계 하에 한국 측과 협의·조정. 또 일한 문화교류 연락실을 국제교류기금 내에 설치하고, 홈페이지 “일한교류통신” <http://www.jpf.go.jp/jkxx/> 을 통한 홍보, 일한 국민교류의 해 풀 뿌리 교류사업 지원 실시 등

#### (4) 일·한·중 국민교류의 해

##### (가) 경 위

2000년 11월 일·한·중 정상 조찬회에서 3국의 아이디어를 결집한 인적 교류·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일·한·중 국민교류의 해로 하는 데 합의. 2001년 11월 3정상 조찬회에서 확인.

## (나) 주요 기념사업(후보)

### ① 외무성 실시사업

- 일·한·중 영 리더스(Young leaders) 교류 프로그램
- 일·한·중 국내 강연 투어
- 2002년도 중국·한국의 일본유학 경험자 모임

### ② 기타 정부 실시사업

- 일중·일한 청년 친선교류사업(내각부)
- 동북아시아 지적 리더 대화사업(국제교류기금)

### ③ 민간단체 실시사업

- 제 4회 일·한·중 3국 포럼(일본 국제문제연구소)
- 오케스트라 아시아, 일·한·중 투어(일본 청소년문화센터)
- 마당놀이 『의적 홍길동전』일본 공연(상동)
- 제 9회 BeSeTo 연극제(장소: 중국)
- 도가(利賀) 아시아예술제(무대예술재단 연극인회의)
- 'DOGGY BAG' 아시아 투어

### ④ 지방자치단체 실시사업

- 동아시아(환 황해) 도시회의 (기타큐슈시)
- 학생교류 추진사업(아마구치현)
- 제 3회 3개 자매도시 친선체육대회(중국: 시안시, 한국: 경주시, 일본: 나라시) (나라시)
- 제 7회 미야자키 국제실내악 음악제(미야자키현)
  - ※ 기업,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일·한·중 교류사업 중 적당한 것에 대해서는 후원 명의를 부여하고 본 교류의 해 기념사업으로 인정.

#### (4) 2002년 일본·몽고 외교관계수립 30주년 기념행사

##### (가) 경 위

본 행사의 실시는 2001년 2월 앙호바야르 총리 방일 시 양국 정상 간에 합의

##### (나) 목 적

‘새 시대의 국민교류 출범’ — 종합적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상호 이해 심화와 공동 창조 — 라는 기본 테마에 입각하여 양국민의 상호 이해를 비약적으로 심화

##### (다) 체 제

일본·몽고 양측이 우호의원연맹 관계자, 민간 관련단체 등에 의한 실행 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준비 중

##### (라) 주요 사업

- 일본무용 공연, 몽고 민족음악 콘서트 등 외에 연속 TV소설 『스즈란 (은방울꽃)』의 방영 등도 예정
- 기타 일본에서 기념우표 발행, 몽고인 스포츠수의 일본 스포 소개 강연·시연 등의 스포츠 교류도 예정

#### (5) 일·인도, 일·파키스탄, 일·스리랑카, 일·방글라데시 국교수립 기념사업

##### (가) 경 위

2000년 8월 모리 총리(당시)의 서남아시아 각국 방문 시 동 총리(스리랑카는 노로타 총리특사)와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각국 정상 간에 2002년 국교수립 기념을 기회로 양국이 협력하여 국교수립 주년 기념사업을 실시하는 데 합의

## (나) 주요 사업

- ① 기념식전 및 기념 심포지엄
- ② 문화교류사업
  - 공연사업(일본 전통 북 와다이코 공연, 현대음악 공연, ‘기나 쇼키치 & 참플루즈’ 공연, 오키나와 가무극단 ‘차라’ 공연 등)
  - 전시사업(가상 도쇼다이(唐招提寺)展, 연·팽이展 등)
  - 영화제 등
- ③ 인물교류사업(서남아시아지역 특별 장학금, 서남아시아 청년초빙, 고교생 초빙, 석학 교류 등)

## (다) 추진체제

- 사업에 관한 민관 합동 조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일본상공회의소 등과 조정 중
- 사업의 기획·운영을 하는 사무국을 외무성 서남아시아과 내에 설치

## (6) 청소년 훈련

### (가) 한·일·중 영리더즈 교류 프로그램

#### ① 목 적

2000년 11월에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ASEAN(동남아시아 제국연합) + 3(한·일·중) 정상회의 때 개최되었던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모리 요시로 총리대신(당시)으로부터, 한·일·중 3국의 공동교류사업으로써 제안된 것으로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한국의 청년들이 일본의 경제·사회, 문화, 전통 등을 접함으로써 대일 이해가 깊어질 것을 기대

#### ② 개 요

외무성은 한·일·중 국민교류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써 중국, 한국에서 개최한 논문 콘테스트(중국어 및 한국어)를 통해 선발된 우수자 82명을, 2003년 1월 22일(수)부터 29일(수)까지 일본에 초청하여 일본의 청년

들과 함께 한·일·중 3국간에 청년교류를 가지는 동시에 교토·오사카 시찰, 파나소닉 센터, 및 샤프 마쿠하리 방문 등을 실시

#### (나) “한일청년 방일연수단” 사업

일본정부는 한일간의 학술, 문화교류 및 청소년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양 국민간의 상호이해와 신뢰관계를 도모할 목적으로, 한국 정부와 협조해 가면서 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이 주최하는 일한학술문화청소년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한일청소년 방일연수단을 2003년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8박 9일간 초청

#### (다) 한일 공동 이공계 학부유학생 사업

- 2002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새롭게 시작된 청소년 교류사업인 한일공동 이공계학부 유학생 사업은 한국의 기업·연구소 등에서 첨단기술의 고도화 촉진을 도모하며 차세대를 젊어지고 나갈 전도유망한 고등학교 졸업자를 일본의 이공계대학학부에 초대하여 한국의 최첨단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함과 동시에 한일간의 유학생 교류를 통해서 양국의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창설
- 연차적으로 유학생수를 늘려가 2010년에는 일본의 이공계대학 학부 재적생수 1000명을 목표로 함. 이 사업에 참가하는 유학생은 국비유학생으로서 장학금, 왕복항공료, 도일일시금, 연구여비(최종연차)를 지급받으며 학습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국비]는 한일 양국 정부에서 부담.

# IV

## 중국·대만의 문화교류사업



## 1. 한국과 중국의 문화교류

### 가. 한류현상과 문화산업

- 일반적으로 “한류”(韓流)란 중국 대륙에서 대중가요, TV드라마, 영화 등 한국의 대중문화가 큰 인기를 끄는 현상에 대해 중국인들이 붙인 명칭으로 알려져 있음
- 9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문화산업이 산업적 기반과 국내외시장에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하자 정부는 국가이미지 홍보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간여
- 2001년 8월 24일 문화관광부는 기존의 문화산업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출범

### 나. 한·중 문화교류

- 중국 정부는 국제문화교류를 확대하여 외국문화를 흡수하면서 역으로 자국 문화상품의 자생력을 강화시켜 외국문화에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문화산업의 발전을 독려
- 한국과 중국은 정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오랫동안 우호적인 문화교류를 지속해 온 전통을 지니고 있는 바, 꾸준한 협력관계를 지속해야 할 것임.
- 현재 도하개발아젠다의 서비스분야중 지적재산에 관한 부분도 활발히 논의 중으로 각국은 각각의 양허안을 마련하여 2005년도 1월 일괄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준비
- 향후 한류관련 문화개방 및 문화산업에 있어서도 관련 국제조약의 체결 및 자국의 법제에 따라 교류가 행하여 질 것으로 전망

## 2. 중국과 대만의 상호교류

### 가. 중국과 대만의 상호정책

#### (1) 중국의 대만정책

- 1979년 1월 중·미 국교정상화 이후 ‘대만해방’에서 ‘대만의 조국복귀’로 통일정책의 기조가 수정
- 1978년 3월의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은 “우리는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방정부로 받아들여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한다’고 규정하여 적대적 해방개념이 평화적 수용개념으로 변모되었음을 시사
- 1979년 1월 1일 전인대상무위원회는 ‘고대만동포서’를 채택하고 이른바 3통(통상·통우·통향), 4류(경제·체육·문화·과학기술의 교류)를 제안
- 1981년 9월 30일 ‘대만조국복귀 및 평화통일을 위한 9개 방안’ 발표 : 친척방문, 통상, 학술, 체육교류를 위한 편의제공 / 대만주민의 대륙왕래 및 이주허용
- 1984년 12월 19일 영국과 ‘홍콩반화협정’에 정식조인함으로써 홍콩문제 해결에서 자신감을 가진 중국은 ‘1국 2체제’방식의 대만적용을 강조하기 시작

#### (2) 대만의 대륙정책

- 1987년 11월 2일 대만인의 대륙친척방문을 공식허용하여 대대륙관계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을 꾀함
- 친척방문, 문화교류 또는 무역등의 민간차원의 교류를 목적으로 대륙을 방문

## 나. 중국과 대만의 법률관계

### (1)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관계 법제

- 1992년7월17일 대만지구와대륙지구주민관계법(양안관계법) 제정
  - 대만과 중국간의 각종 교류에 따르는 법률적 관계에 기초를 제공
  - 대만과 중국간의 관계를 공식적인 법제화 과정에 포함
  - ‘양안관계법’의 입법목적은 대만지구의 안전과 주민의 복지확보, 두 지구 주민의 왕래 규범화, 왕래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관계사건의 처리에 있음
- 대륙주민의 고용 : 합리적인 조건으로 대만지구에서 모집하였으나 그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때에는 대륙주민의 고용을 신청할 수 있음
- 정주 또는 거류 : 대만인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또는 다른 특수한 이유가 있는 대륙인은 대만에서의 정주를 신청할 수 있음(제16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과학기술, 문화적 고려에 기하여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륙인은 거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 2년이상 거류한 자는 정주 신청을 할 수 있음(제17조)
- 문화재 및 그밖의 물품의 처리 : 대륙지구의 문화재는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아 대만에 반입되어 공개진열, 전람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반출할 수 있음(제39조)
- 그 밖의 제한규정 : 대만지구, 대륙지구 및 그밖의 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또는 그 밖의 기구는 대륙지구의 교육기구를 위하여 대만지구에서 학생을 모집하거나 알선, 소개할 수 없음. 대륙지구의 출판물, 영화, 비디오프로그램 및 텔레비전프로그램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대만으로 반입하거나 대만에서 발간, 제작 또는 상영할 수 없음(제37조)
- 이상의 ‘양안관계법’은 중국과 대만의 교류를 규범화하는 기본법으로서 향후 교류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게 됨. 이후 중국측의 관련법률제정을 유도하는 시범적 법률로서 양측간의 교류관계를 법제화하는 시금석의 역할을 함

- 제64조는 “부부중 일방은 대만지구에, 다른 일방은 대륙지구에 있음으로써 동거가 불가능하여 일방이 1985년 6월 4일 이전에 중혼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며, 1985년 6월 5일 이후 1987년 11월 1일 이전에 중혼한 경우에는 후혼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또 “부부쌍방이 모두 중혼한 때에는 중혼한 날부터 원혼인관계는 소멸한다”고 함으로써 소위 역사적 원인으로 인한 중혼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기본적 규정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대만은 대륙관련중혼문제를 일반중혼사건과 구별, 특별사건으로 취급함으로써 관대한 처리를 하고 있고 아울러 당사자의 현재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대대륙 인적 왕래 개방이전의 혼인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입장을 견지

## (2)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

### (가) 중혼문제

분단이전에 성립된 혼인관계로 인한 중혼등의 혼인분규의 해결이 크게 문제시 된다. 대륙에 있다가 대만으로 간 자와 대륙에 있는 그 배우자간에 발생하는 혼인분규가 많다. 이혼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로 있는 경우도 있다. 대만인이 대륙의 원배우자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재혼한 배우자와 이혼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인민법원은 혼인법(1981. 1.1)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륙의 일방과 그 재혼한 배우자간의 부부감정의 파탄여부를 보아 그 이혼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한다.

쌍방이 분리된 후에 이혼수속을 밟지 아니한 채로 있으면서 일방 또는 쌍방이 대륙과 대만에서 재혼한 경우에 있어서는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중혼으로 보지 않는다.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는 한 인민법원은 이에 간여하지 않으며 그중 일방당사자가 그 배우자와의 이혼을 제기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이혼사건으로 수리한다.

## (나) 부부공동재산의 처리

중국의 혼인법은 ‘부부가 그 혼인관계의 존속기간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 소유로 하되, 쌍방이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부는 공동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균등한 처리권을 가진다(제13조)’고 규정함. 부부간에 ‘연합재산’만이 있고, ‘공유’재산은 없는 것임. 법정재산을 분할하는 때에는 처는 다만 고유재산만을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은 부의 재산권적 지위가 처보다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의 부부재산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적 해결방침은 세밀한 처리보다는 과거 수십년간의 재산변화상황과 권리의무 등 변동상황에 따라 이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대체적인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처리방식은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점 이외에 기본적으로 이질적인 법체계에서 살아온 양측의 주민들간에 상호교류를 통해 발생하는 재산분규의 해결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 라. 중국과 대만의 인적 교류

### (1) 대 만

- 대만정부는 1987년 10월 14일 일반민간인의 대륙친척방문을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적십자사를 통하여 「대륙친척방문」 수첩을 발행
- 1988년 7월부터 친척범위를 4촌으로 확대하고 1988년 11월에는 대륙에서 거행되는 국제적인 학술문화체육활동에 참가를 허용함
- 1989년 4월 기자·영화제작자들의 취재·촬영을 목적으로 한 방문과 문교기구 및 민간단체직원의 방문을 허용
- 1990년 하위직공무원, 각급민지기구대표, 고위공직자, 안보관련업무종사자를 제외한 전공무원의 방문 허용 및 국민당의 중앙상무위원을 제외한 전당원의 방문 허용
- 1991년 4월 대만은 대중국교류관련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1990. 11. 22) ‘해협교류기금회’의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함 : 이 기구는 중국에 관한 경제·무역정보의 수집 배포, 간접교육·투자 및 분쟁관련 사무처리, 양측간 문화교류, 문서·신분관계 검증, 소송문서 전달 및 범인인도, 기타 정부위탁사무를 담당. ‘해협교류기금회’ 대표단의 중국방문은 대만정부의 지원기구가 공식적으로 중국정부와 접촉을 하였다는 점에서 양측간 교류확대에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며, 교류에 따르는 정부차원의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 기구를 공식창구로 인정함으로써 상호교류를 심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중국은 1991년 12월 11일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와 유사한 성격의 대응기구로 ‘해협양안관계협회’를 설립하여 상호간 교류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접촉창구의 지위를 부여한 바 있음

- 1992년 8월 아시아청소년농구선수권대회에 국기 및 국가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국의 참가를 제의(91. 6. 8)
- 중국공산당중앙 및 공안사법기관의 고위층을 제외한 하위직(과장급 이하) 공산당원의 입국을 허용키로 잠정결정(91. 6. 12)

## (2) 중 국

- 1991년 1월 17일 「중국공민의 대만지구왕래관리辦法」을 제정하여 양측 주민을 모두 ‘중국공민’으로 규정하여 대만인을 대륙인으로 간주하고 있고 범죄자의 출입국금지와 대만인의 대륙거주지신고를 의무화함과 함께 대만인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종래의 3월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등 관련 사무를 간소화
- 중국과의 고위급 인사교류에 소극적이었던 대만이 보다 신속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상호방문인사의 지위가 점차 격상되고 교류분야도 종전의 친척방문, 경제 체육분야에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체육경기·국제회의·세미나참석을 위한 학생교류를 허용

# V

## 문화공동체의 확장: 한·몽법률문화교류



## 1. 한·몽 법제의 계보와 법률문화

### 가. 몽골 법제의 계보

동북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 이미 상당 부분 세계질서 속에 편입되어 있다. 전근대 시대에 아시아와 유럽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던 몽골국은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이후에 중앙아시아권의 국가들과 교류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북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필요성을 점차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현대법제에서, 헌법은 독일과 미국의 두 계보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과 사회법은 미국 쪽에 가깝다. 민법·민사소송법과 형법 그리고 회사법은 독일식이다. 해상·보험법은 다분히 영국식이다. 행정법은 독일식의 기반에 미국과 프랑스식이 가미되었다. 이러한 양태는 몽골 법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Dr. Jugnee Aarasanaa의 보고(2003)에 의하면, 1992년의 헌법 이후 몽골의 법제는 로마-독일 법제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나. 몽골의 법제와 법률문화

몽골국 법제의 발전과 법률문화에 관한 Dr. Jugnee Aarasanaa의 보고(2003)에 의하면, 1206년부터 1921년까지의 몽골제도는 종교법제에 속한다. 환언하면 전근대의 몽골 법제는 황제들의 칙령이나 관습, 종교 및 사원 등의 규칙으로부터 형성된 법률은 다양한 부문으로 세분되지 않고 무리로 된 체제였다. 1921년 이후에는 7~8년 동안 국가정책, 결정사항[법률·법령등] 그리고 원칙에서는 자본주의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으며, 1932년에 개최된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감시중앙위원회의 합동 제3차 특별총회와 제17차 국가소회의에서, 이러한 좌익의 일탈은 사회주의에 합치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동시에 내려졌다.

몽골국의 최초의 헌법초안을 기초할 때에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의 서구국가들의 헌법과 기타 법률들을 번역하여 연구하였던 경험이 있다. 극히 짧은 기간 동안에 몽골국은 대륙의 법률제도를 지향하고자 했던 시도가 있었다. 1924년부터 1930년대까지의 기간 동안 대륙의 법률개념·원칙·법률구조를 반영하고, 또한 그들의 전문술어·방법론 등을 일정하게 활용·입안하여 제정된 법률들을 기초로 몽골국의 최초의 성문법제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말엽부터의 귀중한 법률적 전통은 ‘잔인하다’거나 ‘미개하다’는 이유로 모두 폐기되고 1930년대부터 1990년까지 60여년 동안 몽골국의 법제는 소비에트의 사회주의 법제의 영향을 받았다. 몽골국의 법제가 소비에트 연방의 법제를 통하여 현대의 유럽 법률문화와 가까워졌음은 어느 일면으로는 진보였지만 다른 일면으로는 과오였다.

몽골국은 최근까지도 “자본주의의 단계를 건너 뛴 국가”라는 관점에서 사회주의를 선택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흥 독립 후진국들에게는 모범이 되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건너뛰기”는 스스로 원하지 아니하였던 것임을 “새로운 길”로 접어든 지난 10여년의 경험이 입증한다. 민주화된 몽골 사회, 정치조직의 기반, 사회에서의 시민의 지위, 국가기관들과 지방통치제도를 강화한 1992년에 제정된 헌법의 원칙은 새로운 법제의 근간이다. 특히 사유재산 및 공공재산의 여러 형태와 수많은 경제관행에 바탕을 둔 사회지향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며 지방자치제를 확립한다는 新憲法の 취지는 사회적 혹은 사회지향의 ‘人本國家’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은 몽골의 헌법과 법률이 로마-독일 법계를 기초로 함을 시사한다.

## 2. 한·몽 문화교류를 위한 법적 과제

### 가. 파트너십의 구축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동북아시아에 속하지만 몽골국은 중앙아시아에 속한다. 한·몽의 연대는 오래 전의 역사 속에 묻혀 있다. 그러나 인종과 언어 그리고 역사와 민속상의 동질성과 유사성은 양국간의 교류와 협력을 다시 이어줄 수 있는 교두보이다. 몽골국은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거점으로서 한국과의 파트너십(partnership)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몽의 문화적 교류와 협력은 이러한 파트너십의 초석이다. 아직은 요원하지만 한·몽 “문화적”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서는 물질 기반으로서의 정치경제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정신적 기반으로서의 사회문화적 장벽의 제거와 교류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한·몽 협력체계를 위한 법제적 노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경주되어야 한다.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한·몽 상호간 국제 실정법 시스템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양국 법률문화의 역사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요청된다. 아울러, 아시아권의 블록화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국가들의 “연합” 가능성에 관한 성찰이 요구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중국의 뿌리깊은 “중화사상” 그리고 일본의 “패권주의” 내지 아시아 침략 경험은 동북아 국가들의 연대 또는 연합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과 몽골국의 동북아 전략은 중심주의 내지 패권주의라는 이미지를 풍기지 않으면서 호혜와 동반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 나. 기본 시스템의 구축

한·몽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적 단계로서 양국의 법제의 동질적 요소와 이질적 요소들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공동의 모범

협약이나 계약을 마련하여 한·몽 교류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서는 먼저 경제·사회 분야의 법의식·관행 및 관습의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즉, 동화적 법률문화 형성의 기초로서 양국의 법현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양국의 법의식·관행 및 관습상 공통분모와 특수요소들을 분석하는 한편 시장경제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민사·상사 분야의 실태분석이 필요하다. 다음에, 민간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모범협약·계약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역내의 투자·무역·경제협력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확보하고 투자·무역·경제협력등의 규범·서식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경제교류에 기여할 모델 협약 내지 계약(Model Code)의 정형화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목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조사·연구의 범위·항목·실효성·방법 등을 기획·분석하고 관계 기관(또는 대학)등에 국가간 공동 조사·연구 시스템을 제안하며 해당 분야에 관한 양국의 조사·연구의 현황 및 사례 등을 수집·발표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다. 교류·협력 프로그램의 이행

한·몽의 교류와 협력은 제도적 기틀을 다지고 이를 운용할 인적자원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국내 인적자원을 먼저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간 인적자원의 상호교류를 추진하여 제도정비 및 운용의 근간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목표를 위한 구체적 사업내용으로서는 먼저, 관계 대학·연구기관 등의 국제교류 체계를 구축·활용하여야 한다. 학술진흥·공무원연수등 기존의 교류제도는 일방적 교류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쌍방교류 제도의 구축을 통하여 지속적인 인적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대학 또는 연구기관간의 협약·협정 등을 통한 교류·협력·지원 체계의 정착 및 확대는 현단계에서 유익한 수단이다. 다음에, 관련 전문가의 양성 및 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즉,

인력양성 국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호 인적자원을 유치하고 법제 분야에서 국제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적 지원제도를 모색하며, 공동 학점·교환학생·교환교수·교환연구원 등의 프로그램이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 VI

##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제적 접근



## 1. 현행법제의 분석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현행 법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문화공동체의 형성과 관련되었거나 그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현행법제는 크게 교육·학술 분야, 문화·예술분야, 문화산업분야, 청소년·체육분야, 관광·레저분야 및 국제·외무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어느 법제나 동북아 공동체를 상정하고 있는 분야는 없으며 따라서 현행법제는 동북아의 공간적 범위나 공동체의 성격 그리고 문화의 개념과 범주 등에 관하여 일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 가. 교육·학술분야

유럽연합은 교육영역에서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sup>89</sup> “교육정보 네트워크”(ERUDYCE: Education Information Network) 사업은 고등교육기관 차원에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이다. “소크라테스”(Socrates) 사업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국민들이 외국어 습득을 유도하고,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며, 그리고 유럽 차원의 협력을 제고하여 평생교육을 유도하고 지식 유럽의 창달을 촉진시킨다.

“템퍼스”(Tempus) 사업은 대학교육의 초 유럽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교육 강의계획서(syllabus)의 개발 및 개선, 고등교육기관의 개혁, 자격증 중심의 교육을 통한 산학협동 제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민주주의에 기여한다. “에라스무스”(Erasmus mundus) 사업은 유럽 이외 제3국기들의 고등교육기관들과 협력을 제고하여 유럽 고등교육기관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3국가 학생들로 하여금 유럽에서 교육의 기회를 찾도록 유도한다.

<sup>89</sup> 김명섭, “국가간 프로젝트로서의 국제적 문화공동체,” pp. 183-184.

유럽 공동의 고등교육기관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유럽대학연구소(EUI: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와 로버트 슈만 센터(Robert Schuman Center)가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유럽은 청소년활동 지원 프로그램(Youth Action Program 2000~2006)을 운영한다.<sup>1</sup>

교육·학술 분야에서 한국의 현행법령들은 각각의 조직법에서 해당 기구들의 사무분장을 규정하면서 국제교류 내지 국제협력을 대상 사무로 열거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제3조)은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술진흥법(제7조)은 학술교류협력계획에 인적자원의 국내외 교류와 기관 및 단체간 교류와 협력등을 규정한다.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조)은 아시아경기대회 입상자등에 대하여 자비유학자격을 부여하는 정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 (1) 국제교류

|                       |   |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제6조 (사업)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br>8. 교육 및 학술정보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제7조 (업무)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br>6. 교육관련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
| 교육인적자원부와 그소속기관직제      | 제13조 (인적자원개발국)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10. 평생교육관련 국제교류의 증진 및 대외개방에 관한 사항<br>제22조 (편사부)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6. 남북역사교류 및 국제교류의 추진                               |
| 교육인적자원부와 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 제7조 (인적자원개발국에 두는 과) ③평생학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13. 평생교육관련 국제교류의 증진 및 대외개방에 관한 사항<br>제10조 (편사부에 두는 실)<br>③편사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7. 국사관련 남북교류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 (2) 국제협력

|                         |  |
|-------------------------|--|
| <p>과학교육진흥법</p>          | <p>제6조 (과학교육연구기관의 지정)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학교육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과학교육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6. 과학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p> <p>제8조 (국제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과학교육·훈련기관, 과학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4. 그 밖에 과학교육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p> |
| <p>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시행령</p>   | <p>제17조의2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에 복무한 기간 및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정협력대상지역의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한 기간</p>                                    |
| <p>교육인적자원부와 그소속기관직제</p> | <p>제15조 (국제교육정보화국)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9. 교육정보화관련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p> <p>20. 교육인적자원개발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추진</p>   |
| <p>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p>    | <p>제3조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인적자원개발정책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p>   |

|                                      |  |
|--------------------------------------|--|
| <p>교육인적자원부와<br/>그소속기관직제<br/>시행규칙</p> | <p>제9조 (국제교육정보화국에 두는 과) ③교육정보화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6. 교육정보화관련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br/>⑤국제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3. 교육인적자원개발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추진</p>  |
| <p>학술진흥법</p>                         | <p>제7조 (학술교류협력계획)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br/>1. 교수 및 연구요원의 국내외교류에 관한 사항<br/>2. 국내외의 대학·학술연구기관 및 학술단체간의 학술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br/>3.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br/>4. 기타 학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br/>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교류협력계획에 학교·학술연구기관 및 기업이 연구인력·시설·기자재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br/>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교류협력계획에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학술단체와의 학술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때에는 이를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그 시행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br/>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교류 및 협력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p>특수교육진흥법<br/>시행령</p>               | <p>제2조 (특수교육 협의체의 구성·운영) 교육인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등 특수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상호 협력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p>   |
| <p>교육인적자원부와<br/>그소속기관직제</p>          | <p>제12조 (인적자원총괄국)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14. 남북한 교육인적자원의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br/>27.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을 위한 협력망의 구축</p>  |
| <p>교육인적자원부와<br/>그소속기관직제<br/>시행규칙</p> | <p>제6조 (인적자원총괄국에 두는 과) ③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6의2.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을 위한 협력망의 구축·운영<br/>④정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6. 남북한 교육인적자원의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p>  |

### (3) 아시아

|           |  |
|-----------|--|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 <p>제5조 (자비유학자격) ①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p> <p>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p> <p>사.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p> |
|-----------|--|

### 나. 문화예술분야

문화예술 분야의 현행법령들도 기본적으로는 다른 분야의 법령들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조직법에서 해당 기구들의 사무분장을 규정하면서 국제교류 내지 국제협력을 대상 사무로 열거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제16조)은 국제교류를 위한 자료의 제공을 규정한다.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16조)는 청소년 국제교류 영역에 남북한을 포함시키고 있다.

#### (1) 국제교류

|                  |  |
|------------------|--|
| 도서관및독서<br>진흥법    | <p>제16조 (업무) ①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p> <p>6. 외국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국제교류</p>  |
| 도서관및독서<br>진흥법시행령 | <p>제16조 (국내외 도서관과의 자료의 유통)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자료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p> <p>2. 자료목록의 국제교류</p> |

|                                   |  |
|-----------------------------------|--|
| <p>도서관및독서<br/>진흥법시행령</p>          | <p>제17조 (국제교류를 위한 자료의 제공)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제작한 자료중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제교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자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8조 (국립중앙도서관의 지도·지원) 법 제1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다른 도서관 및 문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지원할 수 있다.</p> <p>6. 자료의 국제교류</p> |
| <p>문화재청과<br/>그소속기관직제</p>          | <p>제7조 (문화재정책국)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8. 문화재 국제교류사업의 협력 및 조정</p>  |
| <p>문화재청과<br/>그소속기관직제<br/>시행규칙</p> | <p>제2조의2 (문화재정책국에 두는 과) ⑤문화재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8. 문화재 국제교류사업의 협력 및 조정</p> <p>제13조 (문화산업국)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7. 문화산업관련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p>  |
| <p>문화관광부와<br/>그소속기관직제</p>         | <p>제16조 (청소년국)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3. 청소년육성 및 선도, 청소년시설확충, 청소년국제교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p> <p>20.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국제행사에의 파견</p> <p>21. 청소년 국제교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p> <p>제39조 (지원연수부) ②지원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1. 도서관자료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p> <p>제50조 (직무)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p>                   |

|                               |  |
|-------------------------------|--|
| <p>문화관광부와그소속<br/>기관직제시행규칙</p> | <p>제6조 (문화정책국에 두는 과) ⑥저작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4. 저작권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p> <p>제7조 (예술국에 두는 과) ③예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7. 문학 및 조형예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br/>④공연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3. 공연예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br/>⑤전통지역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6. 전통문화예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p> <p>제8조 (문화산업국에 두는 과) ④출판신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7. 출판물 및 정기간행물 관련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p> <p>6. 방송영상·광고분야의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br/>⑥영상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7. 영상산업 관련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br/>⑦게임음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6. 게임물·음반산업의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br/>⑧문화콘텐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6.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문화상품 관련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p> <p>제11조 (청소년국에 두는 과) ④청소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청소년 선도 및 국제교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br/>9.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국제행사에의 파견<br/>10.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p> <p>제19조 (지원연수부에 두는 과·담당관) ④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3. 도서관자료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p> |
|-------------------------------|--|

## (2) 국제협력

|                   |   |
|-------------------|---|
| 문화관광부와그소속<br>기관직제 | 제11조 (문화정책국)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22. 저작권 관련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
|-------------------|---|

## (3) 교류 & 협력

|                       |   |
|-----------------------|---|
| 지방문화원진흥법              | 제12조 (연합회의 설립) ③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br>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등의 교류  |
| 박물관및<br>미술관진흥법        | 제4조 (사업) ①박물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br>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 및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
| 문화관광부와<br>그소속기관직제     | 제12조 (예술국)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17.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의 협력 및 조정<br>19.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br>20. 국내외 문화예술계의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br>제16조 (청소년국)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3. 청소년육성 및 선도, 청소년시설확충, 청소년국제교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br>19. 국제청소년 기구와의 협력<br>20.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국제행사에서의 파견<br>21. 청소년 국제교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 문화관광부와<br>그소속기관직제     | 24. 남북청소년교류에 관한 사항<br>25. 농어촌 청소년의 교류정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  |
| 문화관광부와그소속<br>기관직제시행규칙 | 제7조 (예술국에 두는 과) ①예술국에 예술진흥과·공연예술과·전통지역문화과 및 문화교류과를 둔다.<br>③예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7. 문학 및 조형예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br>④공연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3. 공연예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                               |  |
|-------------------------------|--|
| <p>문화관광부와그소속<br/>기관직제시행규칙</p> | <p>⑤전통지역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6. 전통문화예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p> <p>⑥문화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1.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의 협력 및 조정<br/>3.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br/>4. 국내외 문화예술계 인사의 교류에 관한 사항</p> <p>제10조 (체육국에 두는 과)<br/>⑥국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1.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br/>4. 국제 체육교류 협정체결 및 교류에 관한 사항<br/>5.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br/>7. 국제체육기구와의 협력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p> <p>제11조 (청소년국에 두는 과) ④청소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1. 청소년 선도 및 국제교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br/>8. 국제 청소년기구와의 협력<br/>9.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국제행사에의 파견<br/>10.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br/>13. 남북한 청소년교류에 관한 사항<br/>14. 농어촌 청소년의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제33조 (국립민속박물관에 두는 과) ④섭외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4.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교류(학술·연구교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협력</p> <p>⑥민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10. 국내·외 박물관과의 학술·연구 교류</p> |
|-------------------------------|--|

## 다. 문화산업분야

동북아 공동체를 구축하려면 경제나 정치상의 전략적 협력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문화산업이라는 차원에서 지식공동시장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지식·문화·가치체계는 충분히 강한 영향력을 갖추고 진정한 소프트 파워가 되려면 반드시 충분히 큰 공동시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반드시 창조적이고 생산력 있는 내재순환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아시아는 현재 이러한 지식공동시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시아가 상상이나 이념측면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며 심지어는 스스로의 사회와 생활에도 충분한 설계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다. 지식과 문화가 경제나 정치보다 더 장기적인 이익이므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식공동시장은 반드시 동북아 공동체의 기초이어야 한다.<sup>90</sup>

최근의 “한류” 현상을 감안할 때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에 있어 문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이러한 잠재적 영향력을 배경으로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영화진흥법, 출판및인쇄진흥법과 방송법등 관련 문화공동체의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률들이 많다. 물론 관계 법률들중에는 여전히 시책이나 계획의 수립등에 문화산업을 열거하는 정도의 수준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같이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제20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원부문을 명시하거나 영화진흥법(제35조)처럼 “금고”의 용도(제35조)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를 명시하는 예도 있다.

---

<sup>90</sup> 자오팅양, “‘거리’개념을 논하며,”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연구』, p. 206.

(1) 국제교류

|           |  |
|-----------|--|
| 영상진흥기본법   | 제14조 (국제교유 및 협력)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등과의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 영화진흥법     | 제3조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8. 영화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br>제14조 (위원회의 직무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br>9.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br>제35조 (금고의 용도) ①금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br>2.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
| 방송법       | 제54조 (업무)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br>9.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br>제97조 (방송의 국제협력) 정부 또는 방송위원회는 외국의 방송관련기관·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방송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방송기술의 공동개발 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제20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①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영상제·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유치, 수출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br>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 출판및인쇄진흥법  | 제4조 (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시책의 수립·시행) ②진흥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6.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시장확대의 지원   |
| 출판및인쇄진흥법  | 제6조 (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출판·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br>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 제3조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④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8.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 | 제4조 (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br>1. 국내의 출판 및 인쇄와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br>2. 출판 및 인쇄와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br>3. 간행물 및 인쇄물의 해외마케팅<br>4. 국내 간행물의 번역출판<br>5. 그 밖의 출판·인쇄 문화의 국제교류 증진<br>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 지원하게 할 수 있다.<br>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2) 국제협력

|           |  |
|-----------|--|
| 방송법       | 제97조 (방송의 국제협력) 정부 또는 방송위원회는 외국의 방송관련기관·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방송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방송기술의 공동개발 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제31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④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br>6.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마케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 방송법시행령    | 제20조 (방송기본계획의 합의 등) ①방송위원회는 법 제27조 단서 및 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br>3. 방송시장 개방 또는 국제협력증진 등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

## 라. 청소년·체육분야

현행법령중 청소년 관련 분야는 “교육”의 일환으로서 국제교류와 국제 협력에 관한 근거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제25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자연수 및 국제교류등”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도록 규정한 것이 그 예이다. 체육(스포츠)분야는 문화 산업 못지 아니하게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과 문화공동체의 연계 없이 대한체육회의 분장사무로서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제23조)를 규정한다.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도 아시아경기대회를 기념하는 우표와 엽서의 발행(제12조)에 그치고 있다.

### (1) 국제교류

|           |  |
|-----------|--|
| 국민체육진흥법   | 제23조 (대한체육회) ①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br>2.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
| 청소년기본법    | 제9조 (청소년교류의 진흥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청소년기구와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청소년의 국제교류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 청소년활동진흥법  | 제41조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설립) ①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수련원(이하 “한국수련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br>3. 청소년활동시설이 행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 제25조 (청소년단체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에 지원 및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br>6.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국제교류등에 관한 지원 및 보조 |

## (2) 국제협력

|               |  |
|---------------|--|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 제21조 (국제협력) 국가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이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정보 공유, 범죄조사연구, 국제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
|---------------|--|

## (3) 교류 & 협력

|          |   |
|----------|---|
| 청소년활동진흥법 | <p>제39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①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원 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li> <li>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권익증진 및 교류사업</li> </ol> |
|----------|---|

## (4) 아시아

|                 |   |
|-----------------|---|
|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1997년에 개최되는 제2회동아시아경기대회 및 2002년에 개최되는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이하 "아시아경기대회"라 한다)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
|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 <p>재단법인 제2회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재단법인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와 아시아경기대회 관련사업을 지원하여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위선양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 (기금의 설치등) ①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아시아경기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제12조 (기념우표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이 첨가된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p> |

## 마. 관광·레저분야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동북아 권역을 무대로 하는 레저·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산업 또는 스포츠외교에 이어 동북아 국가간의 문화공동체 형성에 활력소가 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예관한법률은 국제회의[컨벤션]을 새로운 산업으로 간주하고 이에 관한 사업들을 지원하고(제11조),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협력 책무를 부과하였다(제8조). 관광분야의 법률은 사업법[관광진흥법등]에 국제교류·협력의 구상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조직법[한국관광공사법]에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조항(제8조)만을 규정하고 있다.

### (1) 국제교류

|               |   |
|---------------|---|
| 국제회의산업육성예관한법률 | 제11조 (국제협력의 촉진) 문화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 국제회의산업육성예관한법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제회의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li> <li>2. 국제회의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li> <li>3. 외국의 국제회의관련 기관·단체의 국내유치</li> <li>4. 그 밖에 국제회의육성기반 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li> </ol> |

### (2) 국제협력

|         |   |
|---------|---|
| 한국관광공사법 | <p>제12조 (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제관광진흥사업</li> <li>다. 관광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li> </ol> |
|---------|---|

|                   |  |
|-------------------|--|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 제8조 (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br>3. 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6조 (국제협력의 촉진) 법 제11조제4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br>1. 국제회의의 관련 국제행사의 참가<br>2. 국외의 국제회의의 관련 기관·단체에의 인력파견 |

### (3) 교류 & 협력

|                  |  |
|------------------|--|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9조 (국제회의의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br>5.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및 상호협력 |
|------------------|--|

### 바. 국제·외무분야

일반적인 국제관련 업무나 외교사무 영역에서도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과 관련된 활동들이 가능하며 또 존재한다. 이 분야의 현행법제는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및 동시행규칙 그리고 한국국제교류재단법·한국국제협력단법과 같은 조직법에 치우쳐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은 국제교류기금의 설치(제13조)에 역점을 둔다. 한국국제협력단법이 규정하는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제7조)는 관련 단체와 기구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머물고 있다.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은 국제협력요원들의 자격과 감독에 비중을 둔다(제4조 내지 제14저). 동법(제2조)이 규정하는 “국제협력업무”(제3호)는 동어반복에 그치고 있다. 해외이주법[시행규칙]은 기술적인 법규에 한정하고 있다. 아시아 권역과 관련하여 운용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준비위원회규정 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

위원회규정은 법령의 지위와 성격상 기술적·절차적 조직규범으로만 기능한다.

### (1) 국제교류

|                       |   |
|-----------------------|---|
| <p>한국국제교류재단법</p>      | <p>제5조 (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br/>5. 국제교류기금에 관한 사항</p> <p>제6조 (사업) ①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br/>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br/>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br/>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친선의 증진</p> <p>제13조 (기금의 설치·운용) ①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제1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br/>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p> <p>제16조 (기금의 모금) ①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여권법의 규정에 의한 여권을 발급받는 자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p> |
| <p>외교통상부와 그소속기관직제</p> | <p>제20조 (문화외교국) ②문화외교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8.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지도·감독<br/>1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p>  |
| <p>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p>   | <p>제3조 (국제교류기금의 운용·관리) ③제2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별 계획<br/>2. 사업별·재원별 기금사용계획</p>  |

|                   |  |
|-------------------|--|
|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 <p>3.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p> <p>제5조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이 국제교류 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는 대상과 모금액은 별표와 같다.</p> <p>②외교통상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 기여금의 모금 및 적립상황을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한다.</p>               |
|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p>제12조 (문화외교국에 두는 과) ③문화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6.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및 동 재단의 사업 계획 수립·승인·시행관련업무 총괄</p> <p>④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9.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p>  |
| 유네스코활동에 관한법률      | <p>제3조 (유네스코활동의 목표)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유네스코활동은 국제연합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유네스코헌장과 유네스코총회의 결의에 따라 교육·과학 및 문화를 통하여 참신한 국제적지식과 공정한 국제적이해를 전 국민에게 보급시키는 동시에 활발한 국제적교류를 통하여 국가간의 이해 및 친선과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세계평화의 확립 및 인류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p> |

## (2) 국제협력

|          |   |
|----------|---|
| 한국국제협력단법 | <p>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 각종 협력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7조 (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p> <p>2.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의 사업</p> <p>가.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p> <p>나. 외국의 원조관련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p> <p>다. 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p> <p>라. 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
|----------|---|

|                   |   |
|-------------------|---|
| 국제협력요원에<br>관한법률   | 제3조 (국제협력요원대상자의 선발)<br>제4조 (공익근무요원 · 국제협력의사의 명단통보등)<br>제5조 (중사명령등)<br>제6조 (근무지의 변경)<br>제7조 (근무지이탈금지등)<br>제8조 (복무)   |
|                   | 제9조 (소환)<br>제10조 (의무불이행통보)<br>제11조 (중도귀국)<br>제12조 (보수등)<br>제13조 (복무종료통보)<br>제14조 (지휘 · 감독)  |
| 외교통상부와<br>그소속기관직제 | 제20조 (문화외교국) ②문화외교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3. 문화협정의 교섭 및 관련 국제협력업무<br>제25조 (국제경제국) ③국제경제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9.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지도 · 감독<br>13. 환경관계 국제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중<br>합 · 조정과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교섭에 관한 사항 |
| 외교통상부와<br>그소속기관직제 | 제43조 (정무과) 정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1. 정치사무에 관한 주재국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br>5. 국제문화교류<br>제44조 (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1. 경제사무에 관한 주재국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
| 한국국제협력단법<br>시행령   | 제5조 (직원의 파견) ①협력단은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br>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을 각급 행정기관 · 정<br>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등에 파견할 수 있다 .<br>②협력단은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br>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직원을 외국의<br>국제협력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다. |
| 여권법시행규칙           | 제3조 (병역관계 서류제출)   |
| 국제협력요원에<br>관한법률   |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국가에 국제협력요원을 파견하여<br>이들 지역의 경제 · 사회 · 문화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br>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과 이들 지역에서의 대한민국의<br>국익증진 및 재외국민의 후생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br>적으로 한다.  |

|                           |   |
|---------------------------|---|
| 국제협력요원<br>경비지급규칙          | 제1조 (목적)<br>제3조 (현지생활비)<br>제7조 (여비)<br>제8조 (국내근무자의 경비지급)  |
| 해외이주법<br>시행규칙             | 제5조 (해외이주결격사유대상 병역의무자 등)  |
| 국제협력요원에<br>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 (대상자 선발기준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력요원대상자의 선발은 공개모집에 의한다.<br>②국제협력요원대상자는 병역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선발한다.<br>1. 국제협력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br>2. 국제협력업무에 대한 신념·자질 및 적성을 가진 자<br>3. 여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발급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br>4.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br>③국제협력요원대상자의 선발전형은 서류전형·필기시험 및 면접에 의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형방법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br>④국제협력요원대상자의 선발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제협력의사의 선발규모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외교통상부와<br>그소속기관직제<br>시행규칙 | 제4조 (외교정책실에 두는 과) ④근축원자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5. 화학·생물무기·지뢰·재래식무기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br>제16조 (국제경제국에 두는 과) ④개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외교통상부와<br>그소속기관직제<br>시행규칙 | 5.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지도·감독<br>⑥환경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1. 환경관계 국제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

|                 |   |
|-----------------|---|
| 국제협력요원에<br>관한법률 |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제협력요원"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과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협력업무에의 종사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li> <li>2. "개발도상국가"라 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li> <li>3. "국제협력업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요원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가에서 행하는 업무 및 외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를 말한다.</li> </ol> <p>제2조의2 (국제협력의사) 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력의사는 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p> <p>②외무부장관은 매년 국제협력의사의 선발규모를 정할 때에는 미리 그 소요예산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
|-----------------|---|

### (3) 교류 & 협력

|               |  |
|---------------|--|
| 한국국제교류<br>재단법 | <p>제6조 (사업) ①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li> <li>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li> <li>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친선의 증진</li> </ol> |
|---------------|--|

### (4) 아시아

|                   |   |
|-------------------|---|
| 외교통상부와<br>그소속기관직제 | <p>제5조 (하부조직) ④외교통상부에 총무과·외교정책실·아시아태평양양국·북미국·중남미국·구주국·아중동국·조약국·문화외교국·재외국민영사국 및 통상교섭본부를 둔다.</p> <p>제12조 (외교정책실) ③외교정책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 아시아·유럽정상회의 및 지역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li> </ol> |
|-------------------|---|

|  |   |
|--|---|
| <p>외교통상부와<br/>그소속기관직제</p>                  | <p>제13조 (아시아태평양국) ①아시아태평양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인을 둔다.<br/>③아시아태평양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1. 나우루 · 네팔 · 뉴질랜드 · 대만 · 동티모르 · 라오스 · 마카오 · 말레이시아 · 몰디브 · 몽골 · 미얀마 · 바누아투 · 방글라데시 · 베트남 · 부탄 · 브루나이 · 사모아 · 솔로몬아일랜드 · 스리랑카 · 싱가포르 · 아프가니스탄 · 오스트레일리아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중국 · 캄보디아 · 키리바티 · 타이랜드 · 통가 · 투발루 · 파키스탄 · 파푸아뉴기니 · 필리핀 · 홍콩 및 휘지 기타 남태평양도서국가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및 동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총괄 · 조정</p> |
| <p>외교통상부와<br/>그소속기관직제</p>                  | <p>4.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협력증진 및 협의체운영 · 참가 등 관련업무의 기획 · 시행 및 총괄 · 조정<br/>④심의관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br/>제23조 (다자통상국) ②다자통상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10.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체를 포함한 지역경제 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총괄 · 조정<br/>11.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체를 포함한 지역 경제협력체와 관련한 다자통상협상 및 협상의 총괄 · 조정<br/>12. 아시아 · 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경제협력 업무와 통상협상 및 협상의 총괄 · 조정</p>                                      |
| <p>아시아 · 유럽정상<br/>회의준비위원회<br/>규정</p>       | <p>제1조 (목적) 2000년 제3차 아시아 · 유럽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의 성공적개최를 위한 주요 정부정책 및 사업계획등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아시아 · 유럽정상회의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br/>제2조 (기능) 위원회는 2000년 제3차회의 개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br/>1. 21세기 아시아 · 유럽 다자간 협력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전략을 수립<br/>제6조 (기획단) 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2000년 제3차 아시아 · 유럽정상회의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를 둔다.</p>  |
| <p>아시아 · 태평양경<br/>제협력체정상회의<br/>준비위원회규정</p> | <p>제1조 (목적) 이 영은 2005년 제13차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br/>제2조 (설치 및 기능) ①2005년 제13차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의 개최와 관련되는 정부정책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

|                                |  |
|--------------------------------|--|
| <p>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위원회규정</p> | <p>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br/> 1.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협력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 및 전략의 수립<br/> 제6조 (기획단) 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2005년 제1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p>   |
| <p>외교안보연구원 연구부의명칭및 기능에관한규칙</p> | <p>제2조 (명칭 및 구성) ①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실장밑에 안보통일연구부, 아시아·태평양연구부, 미주연구부, 구주·아프리카연구부 및 경제·통상연구부를 둔다.<br/> 제3조 (소관업무) ②아시아·태평양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 1. 동북아·동남아·서남아·중동 및 대양주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연구<br/> 2. 우리나라와 동북아·동남아·서남아·중동·대양주지역 국가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br/> 3. 기타 동북아·동남아·서남아·중동·대양주지역 국가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관련사항</p>  |
| <p>외교안보연구원 연구부의명칭및 기능에관한규칙</p> | <p>⑤서아시아아프리카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 1. 서남아·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연구<br/> 2. 우리나라와 서남아·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br/> 3. 기타 서남아·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 관련사항</p>   |
| <p>외교통상부와 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p>     | <p>제4조 (외교정책실에 두는 과) ⑦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 4.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br/> 제5조 (아시아태평양양국에 두는 과) ①아시아태평양양국에 동북아1과·동북아2과·동남아과 및 서남아대양주과를 둔다.<br/> ⑤동남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 4.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협력증진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협의체 운영·참가 등 관련업무의 기획·시행 및 총괄·조정<br/> 제14조 (다자통상국에 두는 과) ④자유무역협정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 2.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동남아지역·오세아니아지역·아중동지역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교섭 및 교섭의 총괄·조정</p> |

|                                    |  |
|------------------------------------|--|
| <p>외교통상부와<br/>그소속기관직제<br/>시행규칙</p> | <p>⑥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li> <li>2. 아시아·태평양지역 민간경제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업무</li> <li>3.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정책의 수립 및 시행</li> <li>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및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다자통상협상 및 협상의 총괄·조정</li> </ol> <p>제16조 (국제경제국에 두는 과) ⑥환경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환경협력 업무</li> </ol> |
| <p>외무공무원임용령<br/>시행규칙</p>           | <p>제9조 (전문분야 및 일반분야의 구분) ①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구분하되, 각 분야별 세부 업무분야(이하 "업무분야"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분야 : 북미분야, 아시아·태평양분야, 구주분야, 중남미분야, 아중동분야, 경제·통상분야, 국제기구분야 및 국제법분야</li> </ol>  |

## 2. 법제적 대응

### 가. 국제법적 접근

‘문화’라는 개념이 법률(문화) 자체를 포섭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은 그를 낳은 모태인 문화의 한 요소로서 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를 감쌀 수는 없다. 문화공동체의 형성은 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는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달성되기 어렵다.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에 있어 법과 제도는 간접적인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또한 법은 사회를 움직이는 시스템으로서 광의의 문화공동체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근거의 모색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문화공동체사업을 위한 법적 추진근거를 1993년 11월 1일에 체결된 마스트리트(Maastricht) 조약에서 찾는다. 이 조약은 모두 3개 조항에서 문화정책을 언급하고 있는데, 제3조에는 “회원국의 문화를 꽃피우는데 기여하기 위하여…(to contribute to the flowering of the cultures of the member states)”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조약 제151조에는 ‘문화 2000’(Culture 2000), ‘유럽문화도시’(ECC: European City of Culture), 유럽 문화의 달 활동(European Cultural Month Actions) 등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들을 집행할 수 있음이 명기되어 있다. 또한 제87조 3-d항에는 유럽공동체의 경쟁과 공정교역에 관한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회원국들이 문화 및 문화유적 보존에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자에는 원조를 지원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sup>91</sup>

동북아 국가들이 문화공동체의 형성에 관하여 인식을 같이 하더라도 이를 시스템화시킬 수 있는 법제적 접근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동북아 국가들 상호간에는 문화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는 약간의 국제규범들이

<sup>91</sup> 김명섭, “국가간 프로젝트로서의 국제적 문화공동체, p. 182.

존재한다. 조직규범으로서 아시아개발은행설립협정, 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현장, 아시아·태평양지역사회·문화센터설치협정 그리고 문화재의 불법적인반출입및소유권양도의금지외예방수단에관한협약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규범들은 그 적용범위가 동북아를 넘어선다.

물론 개별 국가들간의 쌍무협정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정부와중화민국정부간의문화협정이 그 예에 속한다. 한국과 일본간에는 산업 또는 경제에 관한 협약들만 다수 존재할 뿐 문화부문에 관한 공동의 규범은 없다. 동북아 국가간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직접 목적으로 삼는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이라도 우선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약등의 제정이 필요하다.

동북아 국가들간의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국제법적 접근은 쌍무협정에서부터 출발하겠지만 보다 진전된 형태로 ‘다자’간의 교류·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다자간의 시스템은 모든 문화영역을 동시에 아우르기보다는 부분적 문화영역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법적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공동체 실현이 가능한 영역은, 일단의 국제법학자들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가칭)특허공동체 형성이다. 지식재산권은 경제공동체론에서도 검토될 수 있으나 지식산업은 넓은 범주의 문화산업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문화공동체의 영역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 나. 국내법적 접근

법의 위계질서상 국내법은 국제법을 이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제법의 실효성은 이를 뒷받침하는 각국의 국내 법질서에 의하여 담보된다. 물론 우리 국내법은 동북아 권역내의 다른 나라에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법을 정비하더라도 상대방 국가들이 유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일방적인 노력에 그칠 수 밖에 없지만, 국제법상

의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국제규범이 정립되기 이전이라도 국내법의 정비는 의미있는 일이다.

현행 국내법 질서는 문화와 문화공동체 그리고 동북아 문화공동체와 친하지 아니다. 문화 내지 문화공동체와 관련이 많은 교육·학술, 문화·예술, 문화산업, 청소년·체육, 관광·레저 등의 분야에서 현행 법령들은 국제교류·국제협력 및 교류·협력 일반에 관하여 다수의 근거규정들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조항들이 조직법상의 사무분장에 치중하고 있을 뿐,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이념이나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규정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다.

문화산업 분야에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진출과 관련된 지원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영화진흥법은 금고의 용도에 “한국 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국제·외무 분야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은 국제교류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재정계획과 사업별 기금사용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들 기금이나 계획들이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와 문화공동체 그리고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서는 지도적인 이념과 각종 아이디어 그리고 실행방법 등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실정법 질서의 정비가 필요하다. 조직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인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수많은 계획과 재원들을 집중시키고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법이 필요하다. (가칭)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 지원법과 같은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전체의 철학과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것이다. 이 기본법은 추진 조직과 기금 그리고 계획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들과의 접점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국내법적 접근은 국제법적 접근과 병행함이 이상적이겠으나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과 방법들에 대한 각국들의 이해가 달라 두 법 영역간의 간극이 불가피하다. 국제법적 접근 이전이라도 국내법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접근과정에서 특

히 유의하여야 할 것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기능상의 차이이다. 국제법은 관계 국가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의 방법을 규정하고 공동체를 직접적으로 창설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국내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능적 차원에서 국내법은 공동체의 창설을 직접 규정하는 대신에 국제 교류와 협력에 종사하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NGO 등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의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국내법적 접근은 ‘문화의 매개자’들과 같은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양성하는 재단이나 기금을 조성하고 관계 프로그램들을 개발·운영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종래 여러 국내법령들에서 중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제교류 및 협력 관련 기금과 프로그램들을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쪽으로 집중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G. W. 길모어. 『서울풍물지(1892)』. 집문당, 1999.
- H. 하멜 外. 『서양인이 본 한국법속』. 교육과학사, 1989.
- W. E. 그린피스. 『은자의 나라 한국(1906)』. 집문당, 1999.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상거래』. 1994.
- 金日坤. 『유교문화권의 질서와 경제』. 한국경제신문사, 1985.
- 배용광·변시민. 『한국사회의 규범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范忠信·鄭定·답學農. 『中國法律文化探究』. 일조각, 1996.
- 石井三記 外. 『近代法の再定立』. 創文社, 2001.
- 沈相弼. 『유럽연합(EU): 제도와 경제』. 弘益大學校 出版部, 1996.
- 이종광. 『유럽통합의 이상과 현실』. 일신사, 1996.
- 장 흥.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이해』. 고원, 1998.
- 전재경 外. 『관습법조사연구 I』. 한국법제연구원, 1992.
- 전재경. 『어촌사회의 법의식』. 한국법제연구원, 1998.
- 朝鮮總督府. 『朝鮮部落調査報告』. 1912.
- 川島武宜. 『日本人の法意識』. 1967.

## 2. 논문

- 김세원 외. “EU의 발전과 유럽경제의 경쟁력.” 『EU학 연구』 제2권 제1호.  
특집: EU의 국가경쟁력. 1997.
- 김세원. “유럽 경제 통합의 발전과정과 과제: EU를 중심으로.” 『EU학 연구』 제4권 제1호. 1999.
- 김승렬. “유럽통합 초기(1945-1957)에 있어서 ‘기능주의(functionalism)’

- 에 대한 논쟁.” 『EU학 연구』 제5권 제1호. 2000.
- 박경석. “유럽공동체 확대의 무역효과.” 『EU학 연구』 제5권 제1호. 2000.
- 박경선. “유럽경제 통합에 비추어 본 동아시아 지역주의 형성 과정과 전망” 『EU학 연구』 제4권 제2호. 1999.
- 박명호. “EU 국가의 상호접속 및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현황과 발전 전망;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EU학 연구』 제4권 제1호, 1999.
- \_\_\_\_\_. “주요 EU 국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연구;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EU학 연구』 제4권 제2호. 1999.
- \_\_\_\_\_. “EU 국가의 상호접속 및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현황과 발전 전망;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EU학 연구』 제4권 제1호. 1999.
- 박성훈. “- 아시아-유럽의 장기적 경제협력 전망과 한국의 역할에 관한 연구.” 『EU학 연구』 제4권 제1호. 1999.
- 慎鏞大. “EU의 對아시아 重視政策의展開와 示唆點.” 산업연구원, 1996.
- 오승구. “EU의 확대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2.
- “유럽聯合(EU)의 統合體制.” 法務資料 제235집. 法務部, 2000.
- 李英峻 外.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의 주요용어 통일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국제법학회, 1995.
- 朴宰佑. 「유럽공동체의 정보통신정책 고찰 : 자유화정책과 경쟁도입을 중심으로」. 高麗大 國際大學院, 1998. 2.
- 朴玉勅. 「유럽연합(EU)의 정치적 통합에 관한 연구 : 정치통합과정과 장애요인을 중심으로」. 慶熙大 大學院, 1994. 8.
- 趙英濟. 「유럽공동체의 통화질서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延世大 大學院, 1994. 8.
- Behrens, Antje. Kultur in der Europäischen Union. 1999.
- Boldt, Hans. Die Europäische Union. Geschichte, Struktur, Politik.

- Mannheim u. a. 1995.
- Brock, Dietmar, Wirtschaft und Staat im Zeitalter der Globalisierung. Von nationalen volkswirtschaften Zur globalisierten Weltwirtschaft.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33-34. 1997.
- Brock, Lothar & Albert, Mathias, Entgrenzung der Staatenwelt. Zeitschrift für Internationale Beziehungen, 1995. 2.
- Bueckling, Adrian, Transnationales Satelliten-TV und nationale Kulturreserve in der EG, EuGRZ 1987.
- Calingaert, Michael, European Integration Revisited: Progress, Prospects and U.S. Interest Colorado: Westview Press, 1996.
- Cromme, Franz, Die Verfassungsvertrag der Gemeinschaft der Vereinigten Europäischen Staaten- Ein realistischer Entwurf. Delmenhorst, 1987.
- Eichhorst, Werner, Europäische Sozialpolitik zwischen nationaler Autonomie und Marktfreiheit. Frankfurt a. M.: Campus, 2000.
- Europäische Kommission (Hrsg.), Europe Info. Verzeichnis der Netzwerke und anderen Informationsquellen der Europäischen Union. Luxemburg, 1995.
- Foerster, R., Europa Geschichte einen politischen Idea. München, 1976.
- Friedrich Wilhelm Förster, Der Völkerbund als Kulturgemeinschaft, Stuttgart: Verl. "Friede durch Recht," 연도미상.
- Günter Hindrichs, Kultur-Gemeinschaft Europa, Köln: Europa Union Verl, 1968.
- Hailbronner, Kay/Weil, Patrick, Von Schengen nach Amsterdam, 1999.
- Hermann-Josef Blanke, Europa auf dem Weg zu einer Bildungs- und Kulturgemeinschaft, Köln [u.a.]: Heymann, 1994.

- Hilpert, Hans Günter, Wirtschaftliche Integration in Ostasien in räumwirtschaftlicher Analyse. Dissertation der Freien Universität zu Berlin, 1992.
- Immerfall, Stefan & Sobisch, Andreas, Europäische Integration und europäische Identität. Die Europäische Union im Bewußtsein ihrer Bürge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10, 1997.
- Jansen, Th, Europa von der Gemeinschaft zur Union: Strukturen, Schritte, Schwierigkeiten. Bonn, 1986.
- Karel Kuypers, Universalismus und Kulturgemeinschaft, Wiesbaden: Steiner, 1957.
- Klein, Jens, Europäische Koproduktion im Fernsehbereich, ZUM 1994.
- Lauer, Heinz/Fischer, Thomas, Förderalismus als Strukturprinzip für die Europäische Union. Gütersloh, 1996.
- Marks, Gary. "Politikmuster und Einflußlogik in der Strukturpolitik," Kohler-Koch, Jachtenfuchs (ed.). Europäische Integration. Opladen: Leske & Budrich. 1996.
- Mayer-Tasch, P. C: Die Verfassungen Europas, Stuttgart, 1966.
- Morrison, Charls E, "NAFTA and Northeast Asia, Accomodation or Conflict". Kee, Woo-sik & Hyun, In-Taek & Kim, Ki-Soo(ed.) *APEC and a New Pacific Community. Issues and Prospectives*. Seoul: Sejong Institute, 1995.
- Optiz, Peter J. Die asiatisch-pazifische Region im Umbruch.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27, 1992.
- Pfetsch, Frank R.: Die Europäische Union. Geschichte, Institutionen, Prozesse. München, 1997.
- Sarrazin, Thilo: Der EUPRO-Chance oder Abenteuer? Bonn, 1997.
- Boden, Martina, Europa von Rom nach Maastricht. Eine

- Geschichte in Karikaturen. München und Landsberg, 1997.
- Schwartz, Ivo E, Zur Zuständigkei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im Bereich des Rundfunks, Markenartikel 1986.
- Strohmeier, Rudolf(Hrsg.): Die Europäische Union: Ein Kompendium aus deutscher Sicht. Opladen, 1994.
- Thun-Hohenstein, Christoph: Die Angst des Bürgers vor Europa. Die EU als Herausforderung. Wien, 1996.
- Walter, Nobert, Ein Marshallplan für Asien. Internationale politik. 11. 1998.
- Weidenfeld, Werner, (Hrsg.), Die Identität Europas. München: Carl Hansew Verlag, 1985.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         |                                  |     |   |         |
|---------|----------------------------------|-----|---|---------|
| 2002-01 |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 전성훈 | 저 | 8,000원  |
| 2002-02 |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 손기웅 | 저 | 8,500원  |
| 2002-03 |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 이현경 | 외 | 9,000원  |
| 2002-04 |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연구          | 서재진 | 저 | 8,500원  |
| 2002-05 |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 이우영 | 저 | 5,500원  |
| 2002-06 | 북한인권과 유엔인권레짐                     | 최의철 | 저 | 6,000원  |
| 2002-07 | 김정일 정권의 외교 전략                    | 박영규 | 저 | 4,000원  |
| 2002-08 |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 전현준 | 저 | 4,000원  |
| 2002-09 |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 이교덕 | 저 | 4,000원  |
| 2002-10 | 김정일총서                            | 박형중 | 외 | 10,000원 |
| 2002-11 | “불량국가” 대응 전략                     | 박형중 | 저 | 4,500원  |
| 2002-12 | 파키스탄-인도-북의 核政策                   | 정영태 | 저 | 4,500원  |
| 2002-13 |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 김병로 | 저 | 6,000원  |
| 2002-14 |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 최진욱 | 저 | 4,000원  |
| 2002-15 |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 김규륜 | 저 | 3,000원  |
| 2002-16 |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 이론과 실제          | 김학성 | 저 | 5,500원  |
| 2002-17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 홍관희 | 저 | 5,000원  |
| 2002-18 |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 김영윤 | 저 | 7,000원  |
| 2002-19 |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 오승렬 | 저 | 4,500원  |
| 2002-20 |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 최수영 | 저 | 4,500원  |
| 2002-21 |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 박종철 | 저 | 4,000원  |
| 2002-22 |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 김학성 | 외 | 8,500원  |
| 2002-23 |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 박영호 | 저 | 5,000원  |
| 2002-24 |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 허문영 | 저 | 4,500원  |
| 2002-25 |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 미래상 연구               | 조민  | 저 | 4,500원  |
| 2002-26 |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 조한범 | 저 | 3,500원  |
| 2002-27 |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 임강택 | 저 | 5,000원  |
| 2002-29 |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이론적 모델)   | 박영호 | 저 | 4,500원  |
| 2002-30 |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점진적 시나리오) | 조한범 | 외 | 6,000원  |
| 2002-32 |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 이현경 | 저 | 6,000원  |
| 2002-33 |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추이              | 김영춘 | 저 | 4,500원  |
| 2002-34 |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 배정호 | 저 | 5,000원  |
| 2002-35 |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中國                  | 최춘흠 | 저 | 3,500원  |

|         |  |       |    |         |
|---------|--|-------|----|---------|
| 2002-36 |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교정책과 한반도                            | 여인곤   | 저  | 7,000원  |
| 2002-37 |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 김국신   | 저  | 4,000원  |
| 2003-01 |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 최의철   | 저  | 6,500원  |
| 2003-02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 이우영   | 저  | 5,000원  |
| 2003-03 | 「조선여성」 분석                                      | 임순희   | 저  | 6,000원  |
| 2003-04 |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br>평가연구               | 서재진   | 저  | 6,500원  |
| 2003-05 |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 여인곤 외 | 공저 | 8,500원  |
| 2003-06 |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 이헌경   | 저  | 5,000원  |
| 2003-07 |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 김영춘   | 저  | 4,000원  |
| 2003-08 |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 최춘흠   | 저  | 3,500원  |
| 2003-09 |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 박영호 외 | 공저 | 8,500원  |
| 2003-10 |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 박형중   | 저  | 7,000원  |
| 2003-11 |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 최진욱   | 저  | 5,000원  |
| 2003-12 | 북한의 후계자론                                       | 이교덕   | 저  | 4,500원  |
| 2003-13 |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 박영규   | 저  | 5,500원  |
| 2003-14 |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 전현준   | 저  | 4,000원  |
| 2003-15 |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br>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 박형중 외 | 공저 | 10,000원 |
| 2003-16 | 통일예측모형 연구                                      | 박영호 외 | 공저 | 8,000원  |
| 2003-17 |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 박종철 외 | 공저 | 10,000원 |
| 2003-18 |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 황병덕 외 | 공저 | 10,000원 |
| 2003-19 |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 임강택 외 | 공저 | 5,000원  |
| 2003-20 |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 최수영   | 저  | 3,500원  |
| 2003-21 |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 이금순   | 저  | 5,500원  |
| 2004-01 |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최의철   | 저  | 6,000원  |
| 2004-02 | A CRITICAL JUNCTURE                            | 최진욱   | 저  | 4,000원  |
| 2004-03 |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 임순희   | 저  | 5,000원  |
| 2004-04 |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 박종철 외 | 공저 | 10,000원 |
| 2004-05 |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 황병덕 외 | 공저 | 9,500원  |
| 2004-06 |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 김영춘   | 저  | 4,000원  |
| 2004-07 |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 홍관희   | 저  | 4,500원  |
| 2004-08 |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br>위한 정책과제          | 김영윤   | 저  | 7,500원  |
| 2004-09 |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 정영태   | 저  | 5,000원  |
| 2004-10 |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 김수암   | 저  | 6,000원  |
| 2004-11 |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 박형중 외 | 공저 | 10,000원 |
| 2004-12 |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 박영호   | 저  | 5,500원  |
| 2004-13 |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br>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 임강택 외 | 공저 | 6,000원  |
| 2004-14 |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br>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 서재진   | 저  | 7,500원  |

|         |  |       |    |        |
|---------|--|-------|----|--------|
| 2004-15 |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 손기웅   | 저  | 5,000원 |
| 2004-16 |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br>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 조한범   | 저  | 4,500원 |
| 2004-17 |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 여인곤 외 | 공저 | 9,000원 |
| 2004-18 |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 이금순   | 저  | 5,000원 |
| 2004-19 |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br>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 최수영   | 저  | 4,000원 |
| 2004-20 | 1994 ~ 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 이 석   | 저  | 9,000원 |

### 북한인권백서

|  |                  |         |
|--|------------------|---------|
| 북한인권백서 2002  | 서재진·최의철·김병로 외 공저 | 8,500원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2</i> |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 9,500원  |
| 북한인권백서 2003  |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 9,500원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 10,000원 |
| 북한인권백서 2004  | 이금순·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 10,000원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 이금순·최의철·서재진 외 공저 | 10,000원 |

### 연례정보고서

|      |                             |        |
|------|-----------------------------|--------|
| 2002 |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2002~2003    | 6,000원 |
| 2003 |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 6,000원 |

### 학술회의총서

|         |                         |         |
|---------|-------------------------|---------|
| 2002-01 |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황과 전망        | 4,500원  |
| 2002-02 | 북한 체제의 현주소              | 7,000원  |
| 2002-03 |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 6,500원  |
| 2002-04 |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 5,500원  |
| 2002-05 |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 6,500원  |
| 2003-01 |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 5,000원  |
| 2003-02 |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 5,500원  |
| 2004-01 | 김정일 장권 10년: 변화와 전망      | 10,000원 |
| 2004-02 | 한반도 안보정상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 10,000원 |
| 2004-03 |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 8,000원  |
| 2004-04 |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 7,500원  |
| 2004-05 |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 5,500원  |
| 2004-06 |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 6,500원  |
| 2004-07 |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 10,000원 |

## 논 총

|  |         |
|--|---------|
|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1 (2002) | 8,5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2 (2002)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 9,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 10,000원 |

## 영문초록

|                                    |         |
|------------------------------------|---------|
|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 10,000원 |
|------------------------------------|---------|

## 협동연구총서

|   |       |    |         |
|---|-------|----|---------|
| 2002-01 남북한 '실질적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       |    | 7,500원  |
| 2002-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       |    | 10,000원 |
| 2002-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 방안                | 김영운 외 | 공저 | 9,000원  |
| 2002-04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 박형중 외 | 공저 | 6,000원  |
| 2002-05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 배정호 외 | 공저 | 6,000원  |
| 2002-06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 박영호 외 | 공저 | 6,000원  |
| 2002-07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br>위상과 역할        | 허문영 외 | 공저 | 5,500원  |
| 2002-08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 김병로 외 | 공저 | 7,500원  |
| 2002-09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방안 연구             | 강일규 외 | 공저 | 8,500원  |
| 2002-10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 양현모 외 | 공저 | 7,000원  |
| 2002-11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 윤종혁 외 | 공저 | 6,000원  |
| 2002-12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 조은석 외 | 공저 | 10,000원 |
| 2002-1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br>제도화방안 연구 | 길은배 외 | 공저 | 9,000원  |
| 2002-14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 김제인 외 | 공저 | 10,000원 |
| 2002-15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br>공동 추진 계획    | 신동완 외 | 공저 | 10,000원 |
| 2002-16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br>통합방안      | 김동규 외 | 공저 | 8,000원  |

|         |   |       |    |         |
|---------|---|-------|----|---------|
| 2002-17 | 2002년 협동연구 요약집  |       |    | 10,000원 |
| 2003-01 |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       |    | 10,000원 |
| 2003-02 |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 허문영 외 | 공저 | 10,000원 |
| 2003-03 |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 최진욱 외 | 공저 | 10,000원 |
| 2003-04 |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 제성호 외 | 공저 | 10,000원 |
| 2003-05 |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 한만길 외 | 공저 | 10,000원 |
| 2003-06 |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    |         |
|         | 경제분야  | 이상만 외 | 공저 | 10,000원 |
| 2003-07 |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 이금순 외 | 공저 | 10,000원 |
| 2003-08 |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 박영규 외 | 공저 | 9,000원  |
| 2004-01 |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       |    | 10,000원 |
| 2004-02 |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 여인곤 외 | 공저 | 7,000원  |
| 2004-03 |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박종철 외 | 공저 | 10,000원 |
|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       |    |         |
| 2004-04 |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 제성호 외 | 공저 | 10,000원 |
| 2004-05 |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 고정식 외 | 공저 | 10,000원 |
| 2004-06 |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 양문수 외 | 공저 | 10,000원 |
| 2004-07 |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 이금순 외 | 공저 | 8,500원  |
| 2004-08 |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 김영춘 외 | 공저 | 5,500원  |
| 2004-09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       |    | 10,000원 |
| 2004-10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 오명석 외 | 공저 | 5,500원  |
| 2004-11 |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 김명섭 외 | 공저 | 5,000원  |
| 2004-12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 양영균 외 | 공저 | 10,000원 |
| 2004-13 |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 박경하 외 | 공저 | 10,000원 |
| 2004-14 |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 서중석 외 | 공저 | 10,000원 |
| 2004-15 |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 조한범 외 | 공저 | 9,500원  |
| 2004-16 |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 최진욱 외 | 공저 | 6,500원  |
| 2004-17 |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윤종철 외 | 공저 | 5,000원  |
| 2004-18 |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 강일규 외 | 공저 | 10,000원 |
| 2004-19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 전재경 외 | 공저 | 8,000원  |
| 2004-20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 이진국 외 | 공저 | 6,000원  |
| 2004-21 |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 김이선 외 | 공저 | 8,500원  |
| 2004-22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 윤철경 외 | 공저 | 10,000원 |

|         |  |       |    |         |
|---------|--|-------|----|---------|
| 2004-23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 한만길 외 | 공저 | 10,000원 |
| 2004-24 |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br>: 잠재력과 장애요인    | 박기홍 외 | 공저 | 6,000원  |
| 2004-25 |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 김광역 외 | 공저 | 4,000원  |
| 2004-26 |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 김광역 외 | 저  | 4,500원  |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         |  |                         |  |  |
|---------|--|-------------------------|--|--|
| 2002-01 |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 김국신, 이현경                |  |  |
| 2002-02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결과분석              | 최진욱, 임강택                |  |  |
| 2002-03 |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련 동향분석                     | 서재진, 김수암                |  |  |
| 2002-04 |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 최춘흠                     |  |  |
| 2002-05 |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 변화에 미칠 영향    | 서재진                     |  |  |
| 2002-06 |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 신상진                     |  |  |
| 2003-01 |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br>-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 신상진                     |  |  |
| 2003-02 |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 임강택                     |  |  |
| 2003-03 |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 최의철, 임순희                |  |  |
| 2003-04 |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 이현경, 박영호                |  |  |
| 2003-05 |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 배정호                     |  |  |
| 2003-06 |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 박형중, 정영태                |  |  |
| 2003-07 |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 박형중                     |  |  |
| 2004-01 |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  |  |
| 2004-02 |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 북한연구실                   |  |  |
| 2004-03 |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 조한범                     |  |  |
| 2004-04 |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 박형중                     |  |  |
| 2004-05 |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 최의철                     |  |  |
| 2004-06 |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 전성훈                     |  |  |
| 2004-07 |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 여인곤                     |  |  |
| 2004-08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 이석, 최진욱                 |  |  |
| 2004-09 |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 최의철, 임순희                |  |  |
| 2004-10 |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 이교덕, 신상진                |  |  |
| 2004-11 |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 김영춘                     |  |  |
| 2004-12 |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 전성훈                     |  |  |
| 2004-13 |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  |  |

|         |   |          |
|---------|---|----------|
| 2004-14 |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 김영춘      |
| 2004-15 |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 김영윤, 박정란 |
| 2004-16 |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 김수암, 이금순 |
| 2004-17 |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 I):<br>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 박영호, 김국신 |
| 2004-18 |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 김국신, 박영호 |
| 2004-19 |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 전병곤      |
| 2004-20 |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 김국신, 박영호 |
| 2004-21 |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 전병곤      |

#### Studies Series

|         |   |                                  |
|---------|---|----------------------------------|
| 2004-01 |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 Kyo Duk Lee                      |
| 2004-02 |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 Hyeong Jung Park                 |
| 2004-03 |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 Jae Jean Suh                     |
| 2004-04 |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br>North Korea  |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
| 2004-05 |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br>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 Hyun Joon Chon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 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